

社會保險 管理運營 評價指標

開發: 公的年金을 中心으로

尹炳植 元種旭

石才恩 尹錫垣 金文吉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우리 나라의 公的年金制度는 公的職域年金과 國民年金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에 도입된 公務員年金을 효시로 1963년에 軍人年金, 1975년에 私立學校教職員年金이 각각 도입됨으로써 3대 공적직역연금 제도가 갖추어졌다. 또한 일반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년에 도입된 이래 11년만인 1999년 4월에 도시지역자영자 및 영세사업장근로자, 일용직·시간제근로자에게 당연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한편 私的年金인 個人年金은 1994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개인연금 신탁, 개인연금보험, 공사채형 및 주식형 개인연금상품을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법정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향후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民營年金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공적연금과 민영연금 중 어느 연금제도가 관리효율성측면에서 우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管理運營組織의 효율성은 최소의 관리운영 비용으로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관리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인력 및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측정지표 등을 이용하여 量的 效率性을 분석하고 관리운영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質的 側面의 서비스만족도와 객관적 지표로 측

정한 효율성지표와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현황 및 資格管理, 徵收, 給與, 基金運用 등 관리운영의 업무프로세스를 개관하고 공적연금 관리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횡단면 자료와 함께 과거 10년간 橫斷面 및 時系列자료의 통합분석을 통하여 관리운영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점에서 고객반응을 파악하고 고객의 불만수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는 행정관리수단으로서 고객의 요구와 의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체계가 검토되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윤병식 연구위원의 총괄하에 원종욱 박사, 석재은 박사, 윤석원 주임연구원, 김문길 연구원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들은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본원의 백화종, 윤석명 박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9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5
I. 序 論	28
1. 研究의 背景	28
2. 管理運營의 效率性 概念 定立	32
3. 研究의 方法 및 構成	35
II. 公·私年金制度 沿革 및 現況	36
1. 公·私年金制度別 沿革	36
2. 管理運營 現況: 管理運營體系, 組織 및 人員, 管理運營費	54
III. 公的年金 管理運營 業務프로세스 分析	69
1. 國民年金	69
2. 特殊職域年金 管理運營 業務프로세스 分析	98
3. 個人年金 業務프로세스 分析	111
IV. 客觀的 指標에 의한 效率性 評價體系	113
1. 橫斷面 分析	114
2. 橫斷面·時系列資料의 統合 分析	118

V. 主觀的 指標: 顧客滿足度	139
1. 顧客滿足도의 概念	139
2. 顧客滿足도에 대한 既存研究 檢討	141
3. 顧客滿足도의 評價原則	143
4. 顧客滿足도의 評價指標 開發	145
5. 顧客滿足도의 評價指標別 說問	147
6. 顧客滿足도 評價指標의 妥當性 檢證을 위한 調查設計	150
VI. 綜合的 指標體系 開發	155
1. 綜合的 指標體系 構成을 위한 考慮事項	156
2. 管理運營 綜合的 指標體系的 構成	159
VII. 結 論	168
參考文獻	170
附 表	170

表 目 次

〈表 2- 1〉	加入者 現況	39
〈表 2- 2〉	現行 制度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40
〈表 2- 3〉	事業場 加入者 年金保險料率	41
〈表 2- 4〉	地域加入者 年金保險料率	41
〈表 2- 5〉	基金造成 運用現況	42
〈表 2- 6〉	公務員年金 給與의 支給要件과 支給額	43
〈表 2- 7〉	公的年金制度別 財政現況('98. 12)	45
〈表 2- 8〉	國民年金制度와 特殊職域年金制度 比較	47
〈表 2- 9〉	金融機關別 個人年金 比較	49
〈表 2-10〉	個人年金의 類型別 區分	51
〈表 2-11〉	個人年金과 既存 年金商品 比較	52
〈表 2-12〉	退職金制度 適用者 推移	53
〈表 2-13〉	年金保險의 運營現況	54
〈表 2-14〉	年金保險의 管理運營費 比率	55
〈表 2-15〉	外國의 社會保險 給與支出 對比 管理運營費	57
〈表 2-16〉	金融機關別 受信現況	59
〈表 2-17〉	銀行의 個人年金信託 比重	60
〈表 2-18〉	銀行圈의 個人年金 保有契約件數 推移	61
〈表 2-19〉	市中銀行 個人年金計座數 現況	62
〈表 2-20〉	銀行圈의 責任準備金 推移	63
〈表 2-21〉	銀行 個人年金信託 資產運用 現況	64
〈表 2-22〉	銀行 個人年金信託加入者의 年金選擇 現況('99.7~9)	64

〈表 2-23〉	生命保險社 受信現況	65
〈表 2-24〉	生命保險社 個人年金 保有契約件數	66
〈表 2-25〉	生命保險社 責任積立金 現況	66
〈表 2-26〉	生命保險社의 資産運營 內譯	67
〈表 2-27〉	生命保險社의 支給方法 및 支給件數 現況('99.6~9)	68
〈表 3- 1〉	國民年金의 種別 加入者 資格要件	71
〈表 3- 2〉	加入資格 取得 및 喪失時期	72
〈表 3- 3〉	事業場加入者에 대한 社會保險料 賦課基準1)	75
〈表 3- 4〉	地域加入者에 대한 保險料 算定原則	76
〈表 3- 5〉	國民年金 保險料賦課를 위한 地域加入者 分類와 對象者 分布	76
〈表 3- 6〉	國民年金 保險料賦課를 위한 地域加入者 分類와 賦課基準	77
〈表 3- 7〉	國民年金 保險料의 納付期限 및 保險料 督促·滯納處分	79
〈表 3- 8〉	老齡年金의 給與種類 및 給與水準	81
〈表 3- 9〉	遺族年金의 給與水準	81
〈表 3-10〉	障害年金의 給與水準	82
〈表 3-11〉	返還一時金の 給與水準	82
〈表 3-12〉	死亡一時金の 給與水準	83
〈表 3-13〉	加給年金 支給對象 要件內容	84
〈表 3-14〉	障害等級의 區分 基準	86
〈表 3-15〉	國民年金基金의 投資部門別 收益率 現況	92
〈表 3-16〉	國民年金基金의 運用節次	93
〈表 3-17〉	公務員年金 寄與金の 種類 및 金額	101
〈表 3-18〉	公務員年金 負擔金 種類 및 金額	101

〈表 3-19〉	私立學校教員年金 負擔金의 種類 및 內容	101
〈表 3-20〉	公務員年金 給與의 種類	103
〈表 3-21〉	公務員年金基金의 部門別 運用現況	108
〈表 3-22〉	公務員年金基金 運用收益率	108
〈表 3-23〉	金融資産 種目別 保有現況	111
〈表 3-24〉	金融資産 投資機關別 保有現況	111
〈表 4- 1〉	加入者, 受給者 1人當, 受給 1件當 管理運營費	114
〈表 4- 2〉	職員 1人當 受給者數, 受給件數	115
〈表 4- 3〉	給與再審 件數	116
〈表 4- 4〉	銀行圈의 個人年金信託 運營現況	117
〈表 4- 5〉	生命保險社의 個人年金保險 運營現況	117
〈表 4- 6〉	推定式 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	122
〈表 4- 7〉	推定式 I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保險料)	125
〈表 4- 8〉	推定式 II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給與費)	127
〈表 4- 9〉	推定式 IV (從屬變數: 管理運營費/保險料+給與費)	129
〈表 4- 9〉	推定式 V (從屬變數: 管理運營費/加入者數+需給者數)	132
〈表 4-11〉	推定式 V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加入者數)	134
〈表 4-12〉	推定式 VI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受給者數)	136
〈表 5- 1〉	顧客滿足度 評價指標 構成	146
〈表 6- 1〉	綜合的 評價指標	164

圖目次

[圖 3-1]	事業場 加入申告	74
[圖 3-2]	業務處理 흐름도	90
[圖 3-3]	國民年金管理公團 本部 組織圖	96
[圖 3-4]	國民年金管理公團 支社 組織圖	97
[圖 3-5]	運營主體	105
[圖 3-6]	公務員 年金事業體系	106
[圖 3-7]	私立學校教員年金 體系	107
[圖 3-8]	基金運用計劃 樹立	109
[圖 3-9]	基金決算	110

附表目次

<附表 1>	年間 管理運營費 推移	175
<附表 2>	保險料(負擔金)徵收額 推移	175
<附表 3>	給與費 推移	176
<附表 4>	基金積立金 推移	176
<附表 5>	異義申請 處理數 推移	177
<附表 6>	加入者數 推移	177

〈附表 7〉	事業場 加入者數 推移	178
〈附表 8〉	受給件數 推移	178
〈附表 9〉	受給件數 推移(細部)	179
〈附表 10〉	年金受給者數 推移(一時金 受給者に 除外)	179
〈附表 11〉	給與費 対比 管理運営費 推移	180
〈附表 12〉	保険料 対比 管理運営費 推移	180
〈附表 13〉	職員 1人當 管理運営費 推移	181
〈附表 14〉	職員數 推移	181
〈附表 15〉	推定式 1	182
〈附表 16〉	推定式 2	182
〈附表 17〉	推定式 3	183
〈附表 18〉	推定式 4	183
〈附表 19〉	推定式 5	184
〈附表 20〉	推定式 6	184
〈附表 21〉	推定式 7	185
〈附表 22〉	推定式 8	185
〈附表 23〉	推定式 9	186
〈附表 24〉	推定式 10	186
〈附表 25〉	推定式 11	187
〈附表 26〉	推定式 12	187
〈附表 27〉	推定式 13	188
〈附表 28〉	推定式 14	188
〈附表 29〉	推定式 15	189
〈附表 30〉	推定式 16	189
〈附表 31〉	推定式 17	190
〈附表 32〉	推定式 18	190

〈附表 33〉	推定式 19	191
〈附表 34〉	推定式 20	191
〈附表 35〉	推定式 21	192
〈附表 36〉	推定式 22	192
〈附表 37〉	推定式 23	193
〈附表 38〉	推定式 24	193
〈附表 39〉	推定式 25	194
〈附表 40〉	推定式 26	194
〈附表 41〉	推定式 27	195
〈附表 42〉	推定式 28	195
〈附表 43〉	推定式 29	196
〈附表 44〉	推定式 30	196
〈附表 45〉	推定式 31	197
〈附表 46〉	推定式 32	197
〈附表 47〉	推定式 33	198
〈附表 48〉	推定式 34	198
〈附表 49〉	推定式 35	199
〈附表 50〉	推定式 36	199
〈附表 51〉	推定式 37	200
〈附表 52〉	推定式 38	200
〈附表 53〉	推定式 39	201
〈附表 54〉	推定式 40	201
〈附表 55〉	推定式 41	202
〈附表 56〉	推定式 42	202
〈附表 57〉	推定式 43	203
〈附表 58〉	推定式 44	203

〈附表 59〉	推定式 45	204
〈附表 60〉	推定式 46	204
〈附表 61〉	推定式 47	205
〈附表 62〉	推定式 48	205
〈附表 63〉	推定式 49	206
〈附表 64〉	推定式 50	206
〈附表 65〉	推定式 51	207
〈附表 66〉	推定式 52	207
〈附表 67〉	推定式 53	208
〈附表 68〉	推定式 54	208
〈附表 69〉	推定式 55	209
〈附表 70〉	推定式 56	209
〈附表 71〉	推定式 57	210
〈附表 72〉	推定式 58	210
〈附表 73〉	推定式 59	211
〈附表 74〉	推定式 60	211
〈附表 75〉	推定式 61	212
〈附表 76〉	推定式 62	212
〈附表 77〉	推定式 63	213

要 約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 공적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노령연금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행 공적 은퇴노령연금제도 관리운영비 지출규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연금제도의 관리운영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비와 비교하는 실증 분석이 시도되고 있음.
- 관리운영조직은 보다 적은 관리운영비용으로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顧客의 滿足度を 제고시켜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적 위험분산에 의한 소득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인 개인연금간의 管理運營 效率性を 계량화가 가능한 客觀的 指標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관리운영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 서비스 만족도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효율성 지표와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함.

- 관리운영조직의 효율성은 특정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관리운영상의 효율성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특정 관리운영 조직에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중 公法人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민영연금의 취급기관인 은행, 보험사의 관리운영 종사 직원수, 일반관리비 등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와 산출량을 나타내는 징수, 급여, 자격관리, 기금운용 등의 관련지표를 지수화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2. 公·私年金制度의 沿革과 現況

- 1998년 말 현재, 가입자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이 658만명, 공무원연금이 95만 2천명, 사학연금이 20만 6천명임.
 - 1998년도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자수(일시금 수급자수는 제외)는 20만명이며,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급자는 8만 9천명, 사학연금이 6천 4백명임.
 - 또한 동 기간 중 연금수급건수(일시금지급포함)는 국민연금이 126만건, 공무원연금이 21만건, 사학연금이 4만건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3,982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21명,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이 305명의 직원이 연금관련 업무와 사업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管理運營費는 공단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을 포함하는 人件費와 복리후생비, 국내외 여비, 소모품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는 (一般)經費로 구성되어 있음.

- 1998년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는 1530억원(인건비 810억원, 경비 720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 및 기금업무와 후생복지업무의 관리운영비는 450억원(인건비 190억원, 경비 260억원), 그리고 사학연금의 관리운영비는 276억원(인건비 74억원, 경비 202억원)으로 나타났음.
 - 보험료징수액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1.94%, 공무원연금은 1.35%, 그리고 사학연금은 5.06%로 각각 나타났음.
 - 급여비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규모는 국민연금이 6.29%, 공무원연금이 0.89%, 그리고 사학연금이 4.95%로 나타났음.
- 1999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액은 6조 9895억원으로 전체 15조 9881억원의 4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신탁에 예치된 개인연금 금액이 전체 예치금 15조 9881억원 중 34.24%인 5조 4580억원으로 나타나 있음.
- 생명보험사와 은행신탁의 개인연금 수신액을 합하면 12조 4475억원으로 전체 15조 9881억원 중 78.09%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로 이 두 유형의 금융기관에 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우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은 지점창구를 통해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판매조직을 통해 유입된 보험액은 보험사나 은행의 특성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3. 公·私年金 管理運營 業務프로세스 分析

- 우리 나라 공·사연금제도의 업무프로세스를 자격관리, 징수, 급여, 기금운용, 공단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에서 適用이 가지는 의미의 특수성은 첫 번째로 強制性에 있음.
 - 즉, 사회보험 제도의 민영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 여부
에 있고, 이는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적용업무의 성격을 규정짓
게 됨.
 - 강제성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 확보를 위
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음. 강제가입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응하지 않는
가입자를 관리하는데는 비용이 다소 소요될 뿐임.

가. 國民年金

-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장해 및 유족연금의 경우도 일정가입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사업장 관리에서는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가지므로, 사업주는 사
회보험관리상 일정한 順應費用(compliance cost)을 부담함.
 - 이에 비하여 자영자는 본인이 가입 및 탈퇴신고를 하여야 함.
 - 국민연금 관리운영측면에서 자영자에 대한 관리비용이 사업장가
입자에 대한 관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됨. 자영자 1명도

한 단위이고, 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체도 한 단위이기 때문임.

-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가입자의 標準所得月額이며, 봉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소득에 의존하고 있는데, 도시자영자의 경우에는 농어촌지역가입자의 低申告所得의 시행착오를 경험삼아 국세청 과세자료 및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권장신고소득을 제시하여 실제소득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徵收節次는 각 공단의 지역전산센터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개인 혹은 세대)에게 통지하는데,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개인단위)를 각각 금융기관에 분리 납부함.
- 국민연금의 給與支給 節次는 受給權者가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부 또는 출장소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대한 본부로의 통보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진 뒤 지급결과를 통보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가 수령되는 과정을 거침.
-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개의 본부와 53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음.
 - 본부 조직은 7실, 국민연금센터, 1팀(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실은 기획조정실, 총무관리실, 가입자관리실, 연금급여실, 정보시스템실, 기금운용실,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 산하

에 기획예산팀 등 23개 팀별 운영체제가 있음.

나. 特殊職域年金

- 資格管理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는 달리 特殊職域年金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適用對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가입대상자 관리의 개념에 치중한 것임.
- 직역연금의 保險料 負擔은 각 가입대상자의 寄與金과 국가 또는 고용주채기관의 負擔金으로 구성됨.
 -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 제외)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공무원 각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인 부담금으로 구성됨.
 - 사립학교교원연금은 부담금으로써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됨.
- 직역연금의 徵收節次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一般寄與金, 遡及寄與金 및 합산반납금 모두 매월 보수 지급시에 각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되고, 합산반납금 일시 납부금에 대하여는 합산 승인 통보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부터 납부받아야 함.
 - 사립학교교원연금은 부담금 납부 명세서가 납부통지서와 함께 보수지급일 10~12일전에 학교기관으로 송부되어 각 학교기관의 장은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게 됨.

- 지역연금의 給與支給에 대한 업무는 각 연금 모두 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와 연금취급기관의 급여사유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단의 급여 결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지역연금의 管理運營機關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관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그 사업 집행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교육부 감독하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그 사업집행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며,
 - 주요업무로는 부담금 징수, 제급여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과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客觀的 指標에 의한 效率性 評價體系

-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성의 객관적 지표 개발을 위해 1998년도 자료를 이용한 橫斷面分析과 함께 1989년부터 1998년 기간의 10년간 투입·산출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횡단면 및 시계열자료의 Pooling 回歸分析을 통하여 관리운영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 제도별 고정효과(individual effect)와 기간별 고정효과(time effect) 및 확률효과(random effect)가 분석되었음.

가. 公的年金의 管理效率性 指標

□ 가입자 1인당 관리운영비

- 가입자 1인당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경비와 인건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2만 3천원(1인당 경비 1만 1천원, 1인당 인건비 1만 2천원), 공무원연금은 4만 7천원(1인당 경비 2만 7천원, 1인당 인건비 2만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13만 4천원(1인당 경비 9만 8천원, 1인당 인건비 3만 6천원)으로 나타났음.
- 수급자 1인당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은 76만 5천원(1인당 경비 36만 1천원, 1인당 인건비 40만 4천원), 공무원연금은 50만 3천원(1인당 경비 29만 2천원, 1인당 인건비 21만 1천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430만원(1인당 경비 310만원, 1인당 인건비 120만원)으로 나타났음.
- 수급 1건당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2만원(1건당 경비 6만원, 1건당 인건비 6만원), 공무원연금은 22만원(1건당 경비 13만원, 1건당 인건비 9만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71만원(1건당 경비 52만원, 1건당 인건비 19만원)으로 나타났음.

□ 직원 1인당 생산성

-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직원 1인이 담당하는 가입자, 수급자, 수급 건수로 나타낼 수 있음.
- 직원 1인당 가입자수는 국민연금은 1,653명, 공무원연금은 1,828명, 사학연금은 676명으로 나타났으며,
- 직원 1인당 연금수급자수(일시금 수급자수 제외)는 국민연금이 50명, 공무원연금이 171명 그리고 사학연금이 21명으로 나타났음.

- 직원 1인당 수급건수는 국민연금이 317건(연금수급건수 50건, 일시금수급건수 267건), 공무원연금이 396건(연금수급건수 171건, 일시금수급건수 225건) 그리고 사학연금이 128건(연금수급건수 21건, 일시금수급건수 107건)으로 나타났다.

□ 급여재심 건수

- 급여재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07건, 공무원연금은 267건, 그리고 사학연금은 437건으로 사학연금의 급여재심건수가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個人年金의 管理效率性 指標

□ 사업비

-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에 관한 사업비는 98년 현재 7조 587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의 총 사업비는 4조 9064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소요인력

- 은행의 임직원 수는 75,66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생명보험사의 모집인은 98년 현재 246,193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과 생명보험사 비교

- 은행의 경우, 사업비로 7조 5873억원을 지출하여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2조 6809억원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직원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사는 모집인의 존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약 3.7배가 많은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主觀的 指標: 顧客滿足度

-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점에서 고객반응을 파악하고 고객의 불만수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는 행정관리수단으로서 고객의 요구와 의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체계가 검토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顧客滿足도를 지수로 계량화하기 위하여 顧客滿足度 조사에 포함할 서비스 質의 다양한 次元들 (quality dimensions)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 각 서비스 질의 차원마다 몇 가지의 關聯質問들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었음.
- 고객만족도의 평가차원을 접근용이성, 편리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반응성, 형평성, 환류성 등 7차원으로 분류하였음.
- 接近容易性(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service)
 - 接近容易성은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나 불편이 없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임.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용이성, 이용용이성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物理的인 부분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는데 거리상으로, 분포상으로, 그리고 교통편의의 측면에서 물리적 접근에 장애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둘째, 制度的인 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요건이 까다로워 서비스 이용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 便利性(convenience)

- 便利性은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임.
- 예컨대, 구비서류의 간편성, 민원처리방법의 다양성 등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간편하며, 고객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迅速·正確性(speed and correctness)

- 迅速·正確性은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바가 정확히 반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임.
- 예컨대,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가 얼마나 능숙하고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것임.

□ 快適性(pleasantness)

- 快適性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결성, 휴식시설 및 주차공간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는 차원임.
- 고객이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건물 분위기를 평가하는 것임.

□ 對應性(responsiveness)

- 對應性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임.
- 예컨대, 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제기 혹은 요청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일을 처리해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衡平性(equity)

- 衡平性은 서비스를 받는 누구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평가하는 차원임.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공평한 규율에 의하여 일이 처리되고, 일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일관성이 확보되는 형평성을 평가하는 것임.

□ 還流性(feedback)

- 還流性은 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임.

6. 綜合的 指標體系 開發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목표로서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費用效率性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상의 효과적인 관리 및 受給者 慾求의 충족을 설정하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綜合的인 評價指標體系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용효율성을 주로 염두에 둔 客觀的 評價指標와 함께 수급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主觀的 評價指標를 같이 개발하였음.
- 管理運營 評價指標는 크게 공급자 측면에서 관리운영을 평가하는 것과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관계에서 관리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供給者 측면의 관리운영 평가지표는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 供給者와 受給者간의 關係 측면에서의 관리운영 평가지표는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통하여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지표로 구성되었음.
- 供給者 側面에서 관리효율성, 업무효과성(성과성), 업무체계성을 주요 평가범주로 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 受給者 側面에서는 접근성, 편의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반응성, 형평성, 환류성, 타기관과의 상대적 비교 등으로 주요 평가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I. 序論

1. 研究의 背景

社會保險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불가피하게 되는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強制保險方式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소득상실의 위험에 불가피하게 될 때, 국민들에게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 제도는 사회적 위험분산에 의한 소득보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公的年金制度는 전세계적으로 166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별로 공적연금이 운영되는 형태는 給與水準, 財政方式 및 所得再分配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공적연금제도가 공통적으로 연금재정의 불안정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정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제도 도입 초기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함에 따른 재정부담을 다음세대에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동기 및 저축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公的年金制度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國民年金制度와 公務員, 軍人 및 私立學校 教職員 등 3개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 구분된다. 특수직역연금은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시로 하여 군인연금제도는

1963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1975년에 각각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당시 군인을 포함하였으나 1963년에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분리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198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년 가입기간을 충족한 완전노령연금 급여지급이 2008년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어 급여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제도적용측면에서 보면, 3차의 단계별 확대를 거쳐 1999년 4월부터는 전국민을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제도인 個人年金制度가 1994년 6월부터 도입되어 은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및 우체국에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공사채형 및 주식형 개인연금신탁상품의 취급이 허용되었다. 또한 법정소득보장제도인 退職金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소득보장은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다.(The World Bank, 1999)

우리 나라의 경우도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모두가 도입 초기세대에 대한 급여부담을 다음세대에게 전가하는 所得의 世代間移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조이다. 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불안정과 함께 자영자 소득과악의 어려움에 따른 소득재분배기능의 왜곡, 기금운용의 투명성, 관리운영의 비효율성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적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적노령연금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199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多層所得保藏模型을 제시하고 있

다.(The World Bank, 1994) 그 골자는 부과방식에 의한 기초연금을 1층보장으로 하고 2층보장은 강제적용·개인별구좌에 의한 적립방식의 확정각출·소득비례형의 민영연금으로 하고, 개인의 자발적 저축에 의한 개인연금을 3층보장으로 하는 소득보장체계이다. 민영화의 논거로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른 경비절감 및 기금운용수익율의 개선효과, 자본시장의 발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담당하거나 관리공단과 같은 공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국가가 감독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민영화한 칠레에서는 민영연금의 관리주체인 관리기관(AFP)간의 경쟁으로 관리운영비가 공적연금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민영화에 의한 경비절감 및 효율성 개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Beattie, Roger and Warren McGillivray, 1995)

영국에서는 1978년부터 法定所得比例年金制度(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를 도입하면서 外部適用制度(contracting out)를 허용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에서 민영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고, 미국에서도 공적 연금제도의 민영화가능성 논의가 활발하다. 공적연금의 민영화 논의와 함께 현행 공적 은퇴노령연금제도 관리운영비 지출규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면서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민영연금제도의 관리운영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공적연금의 관리운영비와 비교하는 객관적 수량지표에 의한 실증분석이 시도되고 있다.(Estelle and Palacios, 1995; Mitchell, 1996등이 그 예임)

관리운영조직은 보다 적은 관리운영비용으로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객관적 수량지표에 의한 효율성분석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고객의 만족도라는 다른 한 면은 간과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계량화된 투입과 산출의 지표에 의한 효율성 분석은 관리운영의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고객의 만족도 평가는 관리운영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험관리운영기구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가 1984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93년 政府機關業績評價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이 제정되어 측정가능한 목표와 지표를 선정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의한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대한 업적평가를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수량지표에 의한 효율성분석과 주관적인 고객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체계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效率性 改善과 顧客満足度の 提高는 상충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운영되는 민영연금에서는 자격관리 및 보험료징수관리가 관리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광고선전비, 기금운용조직의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적연금에 비해 높은 관리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연금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연금상품의 제공, 고객에 대한 신속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상대적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민영연금의 가입은 가입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민영연금의 임의가입이 결과적으로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비중이 낮은 제도일수록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고객의 만족도가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社會保障制度로서 사회적 위험분산에 의한 소득보장

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제도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計量化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운영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서비스 만족도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효율성지표와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管理運營의 效率性 概念 定立

管理運營組織의 效率性은 특정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管理運營上의 效率性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특정 관리운영 조직에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에는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도 동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분석에는 投入物과 產出物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의 투입물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일시금 지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입자 자격관리비용, 보험료 징수비용, 급여자격 심사비용,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비용, 급여지급 비용, 보유 적립기금 및 자산의 운용비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출물에는 연금보험료의 징수건수, 징수율과 징수액, 보험료의 급여건수 및 급여액, 기금 및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및 수익률,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의신청 처리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운영의 질적 측면의 효율성을 구성하는 顧客滿足度를 지수로

계량화하기 위하여, 顧客満足度 조사에 포함할 서비스 質의 다양한 次元들 (quality dimensions)을 설정한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용이성, 서비스 이용 편리성, 행정서비스의 신속·정확성, 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결 정도 등 쾌적성,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반응성 및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각 서비스 질의 차원마다 關聯質問들을 개발하고 행정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공적연금은 관련법에 의한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되는 제도로써 관리운영기능만을 정부에서 설립한 管理工團에게 위탁하고 있다.¹⁾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민영부문에서 수행될 때 나타나는 효율성을 준거로 상호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발표되는 행정관리비용은 동일한 행정서비스가 민영부문에서 제공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과 차이가 있다.(Mitchell, Olivia. S., 1996) 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는 달리 가입자간 所得再分配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강제적용원칙에 따라 소득과악이 곤란한 자영자의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기도 해야 한다.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관리효율성 비교는 다음과 같은 공적연금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비용의 측정은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總資源費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와 같은 공적 서비스는 정부의 獨占의 生産物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비용으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공적서비스가 경쟁적인 시장에서 민영부문에 의해 생산될 경우에 결정되는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공공부문 관리운영의 효율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둘째, 공적연금제도 자체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컨

1) 군인연금의 관리운영은 국방부 연금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음.

대 職域年金은 급여를 一時金, 年金 또는 일시금과 연금의 조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시금 급여를 선택한 연금가입자의 지급업무는 한번의 급여지급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연금형태 또는 일시금과 연금의 조합을 선택한 연금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업무는 반복적으로 급여지급사유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이다. 연금의 형태로만 지급된다 하더라도 연간 지급횟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행정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

셋째, 제도의 特性 또는 成熟度에 따라 관리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리운영기구가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징수비용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급여건수도 증가하게 되고 급여비도 영향을 받게 된다.

넷째, 제도 가입이 任意的인가 혹은 強制的인가에 따라 효율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강제가입의 경우 공적서비스의 수요자가 개인의 기호, 기대수익률, 행정서비스의 편리성,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는 임의로 선택된 특정기간 또는 시점에서의 一過性 평가보다는 定例的인 평가를 제도화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계열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 결과의 시계열분석과 비교를 통해서 관리운영기구 효율성의 개선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3. 研究의 方法 및 構成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중 정부가 설립한 公法人인 公團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관리운영 종사 직원수, 일반관리비 등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와 산출량을 나타내는 징수, 급여, 자격관리, 기금운용 등의 관련지표를 指數化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우리 나라 公·私年金制度의 沿革, 제도의 目的, 現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 公·사연금제도의 업무프로세스를 자격관리, 징수, 급여, 기금운용, 공단운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1998년도 橫斷面資料 分析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과거 10년간의 투입·산출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橫斷面 및 時系列資料의 Pooling 回歸分析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s)을 시도함으로써 관리운영비의 결정 요인과 규모의 경제성, 제도별 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간효과(Time Effect)를 분석하였으며 덧붙여 확률효과(Random Effect)도 같이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접점에서 고객반응을 파악하고 고객의 불만수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는 행정관리수단으로서 고객의 요구와 의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체계가 검토되었다. 제6장에서는 效率性測定 客觀的 指標와 主觀的 指標에 의한 고객만족도 평가체계를 관심영역으로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운영 평가체계의 구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Ⅱ. 公·私年金制度 沿革 및 現況

1. 公·私年金制度別 沿革

가. 沿革 및 制度의 目的

1) 國民年金

國民年金制度의 沿革을 살펴보면,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민 및 기타자영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공적연금제도로써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 自營者에게 당연 적용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연금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및 財政再計算制度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자영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근로자에게 당연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2) 公務員年金

公務員年金制度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 출발하였으며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

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982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급여지급, 비용징수 등 연금업무를 정부로부터 인수받아 수행하고 있다.

3) 軍人年金

軍人年金制度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이 1960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군인의 신분과 복무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963년에 제도가 분리되었다.

4) 私學年金

私立學校敎員年金制度는 1973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된 국·공립학교교직원과 그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보험료부담방법을 제외한 제도내용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공적지역연금간에는 連繫制度가 마련되어 있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타 지역연금의 적용대상으로 임용될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법에 의해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5) 個人年金

個人年金은 1960년대 후반 생명보험회사를 기반으로 개인연금상품이 개발·판매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업계의 공동상품 또는 단독상품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으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8년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소비자의 소득증대, 인구고령화 현상 등의 주변여건의 변화를 통해 개인연금상품 개발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은행의 노후설계연금신탁과 생명보험사의 노후설계연금보험상품이 1989년에 개발되었으며, 1992년에는 노후복지 연금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6월부터 공적연금제도의 보완과 금융실명제에 따른 제도금융권의 자금이탈방지를 목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된 적격개인연금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6) 退職金制度

우리나라 退職金制度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28조 1항에서 2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년당 30일의 임금을,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당 60일분의 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적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정제도로 강제되었다. 그리고 적용사업 대상 사업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대되어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나. 制度別 現況

1) 國民年金

국민연금의 適用對象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勤勞者와 使用者이며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적용 받는 자는 제외),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써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단, 퇴직연금 수급권자, 별도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18세 이상 23세 미만의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은 제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현황은 <表 2-1> 과 같다.

<表 2-1> 加入者 現況(1999年 6月末 現在)

(단위: 천명)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등 가입자		
		소계	농어촌지역등	도시지역
16,235	5,044	11,191	2,244	8,947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表 2-2> 로 정리될 수 있다.

〈表 2-2〉 現行 制度의 給與種類別 受給要件과 給與水準

급여유형	수급요건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단 광부, 선원은 55세)	20년 이상, 60세 이상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단,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연령 60~64세	기본연금액의 50-90% (가급연금 해당없음)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자로 60세에 달한 때	가입기간 10~19년	기본연금액의 47.5-92.5% + 가급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연령 55~59세	기본연금액의 75 - 95% + 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장애등급 1~4급	1-3 급: 기본연금액의 100, 80, 60% + 가급연금 4급: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이었던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 40%(10년 미만), 50%(10년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 지급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註: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됨.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標準所得月額의 9%이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매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가입종별 보험료율은 〈表 2-3〉 및 〈表 2-4〉 와 같다.

〈表 2-3〉 事業場 加入者 年金保險料率

가 입 자	부담자	1988~92	1993~97	1998~99.3	1999.4~2009
	계	3%	6%	9%	9%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1.5%	2%	3%	4.5%
	사용자	1.5%	2%	3%	4.5%
	퇴직금전환금	-	2%	3%	-

〈表 2-4〉 地域加入者 年金保險料率

가입자	부담자	1995.7	1999.4	2000.7	2001.7	2002.7	2003.7	2004.7	2005.7
		~ 1999.3	~ 2000.6	~ 2001.6	~ 2002.6	~ 2003.6	~ 2004.6	~ 2005.6	~ 2009
군지역 및 농어민 ¹⁾	가입자	3%	3%	4%	5%	6%	7%	8%	9%
도시지역 가입자	본인	-							

註: 1) 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국민연금의 부과기준소득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所得月額(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을(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어업소득·임업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의 상하한을 두고 있는데, 근로자와 자영자가 동일하게 4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하한(1등급)은 22만원, 상한(45등급)은 36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基金運用現況을 살펴보면 '99년 7월말 현재 연금보험료로 38조 1060억원을 釀出하였으며 기금운용수익 14조 4450억원 등을 합하여 52조 55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9조 9914억원이 지출되었고 적립기금 42조 5596억원을 운용중이다. 한편 적립기금은 공공부문에 30조 2031억원(71.0%), 금융부문에 11조 2616

억원(26.4%), 복지부문에 1조 1261억원(2.6%)이 각각 운용되고 있다.

〈表 2-5〉 基金造成 運用現況(1999年 7月末 現在)

(단위: 억원)

조 성	지 출	운 용			
		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525,510	99,914	425,596	302,014	11,262	112,320
		(100.0)	(71.0)	(2.6)	(26.4)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 特殊職域年金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직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이며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 1960년 제도도입당시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수는 237.5천명이었으나 38년이 경과한 1998년말 현재 952.2천명이 적용을 받고 있어 시행당시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교직원을 대상으로 1998년말 현재 206천명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年金的 기능과 退職金的 기능 및 産災保險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의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表 2-6〉 과 같다.

〈表 2-6〉 公務員年金 給與의 支給要件과 支給額

종 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 급여 / 택1	퇴직연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지급 (보수연액×50/100)+(보수연액×20년초과재직연수×2/100)
	퇴직연금 일시금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재직연수×5년초과재직연수/100)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100)
	퇴직일시금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 5년미만 재직자: 퇴직월의 보수월액×재직연수 • 5년이상 20년미만재직자: 퇴직연금일시금 산출방법과동일
유족 급여 / 택1	유족연금	•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70/100
	유족연금 부가금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퇴직연금일시금액의 1/4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액×1/4×(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유족연금 일시금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요양 급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할 때 실제요양기간 2년의 범위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공무상 요양일시금	공무상요양기간 2년이 경과 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향후 1년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될 예정비용

〈表 2-6〉 계속

종 류		지급요건	지급액
장해 급여 / 택1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 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 퇴직후 3년이 경과되어 폐질상 태로 된 때에도 급여재심위원 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장해연 금 지급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 수연액의 80/100-15/100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같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액×5 *5년분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재 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 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 한 때	보수월액×36
부조 급여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비 속 등의 사망시 지급	본인사망: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직계존속사망: 보수월액 의 1배
	재해보조금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 재산의 손 실을 입은 경우 지급	주택 완파시: 보수월액의 6배 " 1/2파해시: " 4배 " 1/3파해시: " 2배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보수월액×재직년수×지급률 - 1년이상 5년미만: 10% - 5년이상 10년미만: 35% - 10년이상 15년미만: 45% - 15년이상 20년미만: 50% - 20년이상: 60%

공무원연금의 給與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년 현 재 공무원이 報酬月額의 7.5%를 壽與金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4.5%를 負擔金으로 부담하는 한편, 退職手當制度가 1991년에 연금 기금과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도입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연금재정 의 악화로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연금의 보험료부담은 교원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으로 보수월액의 7.5%, 학교경영기관인 법인의 부담금

4.5% 그리고 정부의 국가부담금 3.0%로 구성되고 있다. 한편 사무직원의 경우는 개인부담금 7.5%와 법인부담금 7.5%로 구성되어 있다.

부담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표준봉급월액 + 기말·정근·장기근속수당의 연 지급액을 12로 나눈 액수로 산정 된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은 1960년 제도도입이래 대체로 수지흑자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초로 1995년에 당해연도 재정적자 919억원이 발생하여 적립기금의 잠식이 있었으며 1998년도에는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증으로 1조 593억원의 당해연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의 1998년 12월말 현재 적립기금규모는 4조 7844억원으로 적립률은 0.98이다.

사학연금의 1998년말 현재 적립기금규모는 3조 4428억원이며, 적립률은 4.65로서 재정상태는 3개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장기 재정추계에 의하면 201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1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表 2-7〉 公的年金制度別 財政現況('98. 12)

(단위: 억원, 배)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액	적자보전	적립기금	적립률 ¹⁾
공적연금	165,047	81,265	83,782	-	463,008	5.70
국민연금	116,613	24,790	91,823	-	448,519	18.09
공무원연금	38,477	49,070	-10,593	-	47,844	0.98
군인연금	4,370	9,951	-5,581	5,581	4,266	0.43
사학연금	9,957	7,405	2,552	-	34,428	4.65

註: 1) 적립률=적립기금/총지출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결산보고서』, 『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연도, 국방부, 내부자료.

3) 國民年金과 特殊職域年金의 比較

국민연금 給與算式이 均等部分과 所得比例部分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均等部分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직역연금제도에서는 소득비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平均所得者가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연금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受給資格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하여야 발생한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며 20년간 가입시 퇴직직전 최종보수월액의 50%를 연금급여로 받게 되며, 최고 33년을 가입하면 최종보수월액의 76%를 연금으로 수급하게 된다.

年金給與算定의 基準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며 직역연금의 경우는 퇴직전 최종 보수월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제도간의 급여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급여는 국민연금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특수직역연금에서는 재직자 보수 변동률에 각각 연동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고 있고 급여개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返還一時金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노령으로 인한 소득 기회상실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기능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직역연금제도는 소득비례형 연금으로 1995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급여개시연령의 제한이 없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또한 일시금 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社會保險的 성

격이 강하다. 반면에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20년 미만 가입자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 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보장기능면에서 미흡하다.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산정의 기준을 全加入期間平均所得으로 함으로써 보험료납부액과 급여수준이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의 도입과 매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안정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직역연금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表 2-8〉 國民年金制度와 特殊職域年金制度 比較

	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역연금
시행연도	1988년	1960년(공무원연금), 1975년(사립학교교원)
적용대상	일반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보험료 부담	9%(가입자 4.5%, 사용자 4.5%)	15%(가입자 7.5%, 국가 및 사용자 7.5%)
소득상한선	360만원/월	없음
급여종류	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이상, 장애연금·유족연금-가입기간 1개월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 20~33년 재해 및 조기사망시 단기급여 지급
노령(퇴직)연금	$1.8 \times (A+B)(1+0.05n)$	$12 \times W \times [0.5+0.02n]$
급여산정기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 가입자 평균소득(B) 기준	최종소득(W) 기준
연금액 조정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연동	재직자 보수 기준 연동
지급개시연령	60세	퇴직직후
지급방식	연금	연금과 일시금 선택가능

4) 個人年金

個人年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所得控除와 시행규

칙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그리고 시행령 제 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에 의하여 법률로 정해져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1항에서는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 33조 1항 1과2에는 가입대상을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저축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積立式으로 불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 80조 1항 5는 연금개시연령은 55세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연금 取扱機關은 신탁업의 허가를 받은 은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체신관서나 농업·축산업·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 등으로 시행규칙 제 33조 1항에서 제한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1항은 소득공제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72만원 초과시에는 72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3항에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가입자가 5년안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해지추징액)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보험감독규정 제 77조 1항에서는 責任準備金은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책임준비금은 해약환급액에 대한 준비금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월 기준 1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적립 또는 정액 납입하는데,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1년 단위로 하고 수익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까지이며 연금지급기간은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상 1년 단위로 정한다.

商品別 收益率을 보면 1999년 1월중 주요 18개 예금은행의 개인연금신탁 평균 배당률은 연 11.8%이고 확정형의 이자율은 1999년 4월 1일 이전 가입기간은 7.5%, 이후 6.5%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10년 이상 가입시 연간적립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表 2-9〉 金融機關別 個人年金 比較

구분	은행(농,수,축협 포함)	투자신탁	생명보험	손해보험	농,수,축협 단위조합	우체국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적립방식	자유식	자유식	정액식	정액식	정액식	정액식
주요 서비스	담보 및 신용대출, 거래 실적대출	주식형과 공사채형 상호 전환	각종 생활 보장	교통사고 및 상해사 고 보상	각종 생활 보장	각종 생활 보장
연금지급 방식	확정형	확정형	확정 및 종신형	확정형	확정 및 종신형	확정 및 종신형
중도 해지시	원금 및 일정 이자지급	원금 및 일정 이자지급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원금 및 일정 이자지급
형태	신탁	신탁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예금보호 여부	보호	비보호 ¹⁾	보호	보호	비보호 ¹⁾	보호 ²⁾

註: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적립하여 보호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으로서 지급이 보증됨.

개인연금의 類型을 살펴보면, 개인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는 信託型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保險型으로 나눌 수 있다.

保險型은 생명 및 사망보험위험률을 사용함으로써 위험보장과 연금의 결부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험보장측면에서 연금지급개시 全 期間동안 사망, 재해, 입원 등 위험보장기능이 있고, 연금지급개시 이후 생존시에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시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명보험은 연금지급에 있어 종신지급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은 정기지급기능을 가지고 있다.

信託型은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에서 보험외의 금융상품을 변동금리로 원금과 적립하여 연금지급개시 이후 연금수급자의 생사와는 관계없이 일정기간 분할지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험형과는 달리 개인연금상품이 위험보장기증 및 종신보장이 없고, 상품의 다양성이 적은 반면 수익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 보험형과 신탁형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表 2-10>과 같다. 적용이율의 경우 보험형은 예정이율 7.5%에 配當金を 지급하고 있으나, 신탁형의 경우는 실적배당과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年金支給方法에서 보면, 보험형은 적립된 연금액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연금수급가능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내 생존한 가입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신탁형의 경우는 확정형만을 현재 운영 중이다.

年金設計側面에서 보험형 중 생명보험사는 개인형과 하나의 상품으로 부부의 노후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부부형 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상품종류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신탁형은 개인형 하나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

수익보장에서는 보험형은 신탁형에 비하여 위험이 낮은 대신에 수익률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表 2-10〉 個人年金의 類型別 區分

	보험형		신탁형 (보험외 금융권)
	생보	손보	
연금지급	확정형, 종신행	확정형	확정형
실운용액	(납입액-부가보험료)		(납입액)
적용이율	전통형: 예정이율 7.5%(6.5%)+배당(단독상품) 연동형: 정기예금금리×120%(업계공동상품)		실적배당(은행, 약 14%) (실세금리 반영)
연금설계	개인형, 부부형	개인형	개인형
위험보장	노후보장	종신연금으로 운영되어 사망시까지 노후보장	확정연금으로 운영되어 노후보장보다는 저축성격
	유족보장	계약자사망시 유족연금지급으로 유족보장	계약자사망시 적립금잔액만 지급
	사망, 질병, 재해	보장	보장 없음
수익보장	약함		강함
판매조직	모집인, 대리점		지점 창구

資料: 삼성금융연구소, 『개인연금 포지셔닝』, 1998.

개인연금과 기존의 민영 연금상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연금은 다음의 〈表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유리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加入對象이나 積立期間, 受託可能額, 支給方法 등에서 제약이 있으나, 세제혜택을 적립시와 인출시 모두 부여하고 있다.

〈表 2-11〉 個人年金과 既存 年金商品 比較

	개인연금	노후생활 연금신탁	연금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	만 18세 이상 개인	만 15세 이상 개인	만 18세 이상 60 세 미만 국내거 주
기금각출 방법	본인부담(자유)	본인부담(자유)	본인부담(자유)	본인/고용주
세제혜택	소득공제와 이자비과세	200만원 한도내에 서 이자소득세 5%	보험료중 연 50만 원 소득공제 1500 만원 한도 상속세 면제	비과세
적립기간	10년 이상 연단 위(예외있음)	5년 이상 연단위	5년 이상 연단위	20년 이상 (예외 있음)
타인신탁 가능여부	불가	불가	가능	불가
월간최고 수탁액	1인당 100만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법정
신탁기간	연금지급기간 15 년 이상 (예외있음)	5년 이상	5년 이상	20년 이상 (예외 있음)
지급방법	연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연금지급 기간	고객이 정하는 기간 혹은 종신	고객이 정하는 기 간	고객이 정하는 기 간	종신
취급기간	은행, 보험, 투 신, 우체국	은행, 투신	보험	국민연금 관리공단

5) 退職金制度

도입 초기에는 退職金制度가 강제 제도이면서 사실상 우리 경제의 장기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되어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80년대 이후 그 적용범위의 확대와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누진제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금 부담이 기업의 현안으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기업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表 2-12〉 退職金制度 適用者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대상자 수	취업자에 대한 비율
1970	945	9.7
1975	1,448	12.2
1980	2,841	20.7
1985	3,583	23.9
1990	5,366	29.8
1994	5,734	29.9
1998	5,786	29.0

資料: 노동부, 『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退職金の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1998년 현재 전 산업에서 578.6만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55.3%이며 전 사업장에 적용하자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직금 대상자의 증가와 퇴직 후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 퇴직금의 지급방법 및 전반적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퇴직보험제도의 도입, 퇴직금 중간청산제도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입되었다.

기업의 연령이 증대하여 감에 따라 장기근속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근속년수가 증가하고, 또한 累進制 요구가 실현될수록 퇴직금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2. 管理運營 現況: 管理運營體系, 組織 및 人員, 管理運營費

가. 公的年金 運營現況

1998년 말 현재, 가입자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이 658만명, 공무원연금이 95만 2천명, 사학연금이 20만 6천명이다.

1998년도 국민연금 또는 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자수는 43만명이며(연금수급자수는 20만명),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급자는 8만 9천명, 사학연금이 6,400명이다. 또한 동 기간 중 연금수급건수(일시금지급포함)는 국민연금이 126만건, 공무원연금이 21만건, 사학연금이 4만건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3,982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21명,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305명의 직원이 연금관련 업무와 사업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表 2-13〉 年金保險의 運營現況

(단위: 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	6,580,265	952,154	206,278
수급자	433,071	-	-
연금수급자	200,525	89,322	6,412
일시금수급자	232,546	-	-
수급건수	1,263,539	206,429	38,978
연금건수	197,868	89,322	6,412
일시금건수	1,065,725	117,107	32,566
직원수	3,982	521	305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각 공단 내부자료

공적연금보험의 관리운영비는 공단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국내외 여비, 소모품비,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경비로 구성된다. 1998년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는 1536억원(인건비 811억원, 경비 725억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 및 기금업무와 후생복지업무의 관리운영비는 449억원(인건비 188억원, 경비 261억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276억원(인건비 74억와 경비 202억원)에 달하고 있다.

〈表 2-14〉 年金保險의 管理運營費 比率

(단위: 백만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보험료(A)	7,922,543	3,316,353	544,672
급여비(B)	2,439,729	5,033,060	556,572
연금급여	302,927	1,109,427	95,381
일시금	2,136,801	3,923,633	461,191
관리운영비(C)	153,551	44,910	27,562
인건비	81,073	18,849	7,392
경비	72,478	26,061	20,170
C/A	1.94	1.35	5.06
인건비/A	1.02	0.56	1.36
경비/A	0.92	0.79	3.70
C/B	6.29	0.89	4.95
인건비/B	3.32	0.37	1.33
경비/B	2.97	0.52	3.62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각 공단 내부자료

공적연금제도간 관리운영비를 絶對額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관리운영비는 성숙도, 가입자 및 급여지급대상자수, 자격관리, 부과·징수, 급여 등 관리운영체계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대상집단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이 관리운영비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제도간 상호비교를 위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標準化(normalization)가 필요하다. 표준화 변수로는 제도가입자수, 보험료징수액 및 건수, 급여지급액 및 건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보험료징수액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1.94%, 공무원연금은 1.35%, 그리고 사학연금은 5.06%로 각각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자가 공무원이며 보험료의 징수도 전액 원천징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給與費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규모는 국민연금이 6.29%, 공무원연금이 0.89%, 그리고 사학연금이 4.95%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에 비해 제도의 미성숙으로 본격적인 老齡年金給與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 급여비가 관리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노령연금 수급요건 20년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2008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현재는 특례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연금급여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사학연금도 197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무원연금에 비해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급여비를 표준화변수로 사용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규모가 높게 나타난다.

급여대비 관리운영비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국가의 사회보장 급여지출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의 평균은 3.1%인 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군은 27.8%를 나타내고 있어 두 그룹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미성숙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表 2-15〉 外國의 社會保險 給與支出 對比 管理運營費

(단위: %)

OECD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국가	급여지출 대비 관리운영비	국가	급여지출 대비 관리운영비
오스트레일리아	1.22	아르헨티나	2.30
오스트리아	2.48	바하마스	30.75
벨기에	4.55	발바도스	5.56
캐나다	2.80	벨리즈	89.49
덴마크	2.98	볼리비아	21.39
핀란드	3.36	브라질	7.00
프랑스	4.18	칠레	8.00
독일	2.86	콜롬비아	81.80
그리스	6.72	코스타리카	4.75
아이슬란드	1.71	도미니카	46.97
아일랜드	4.88	도미니카공화국	31.72
이탈리아	2.20	에콰도르	13.55
일본	1.79	엘살바도르	33.40
룩셈부르크	2.74	그레나다	9.85
네덜란드	3.10	과테말라	12.72
뉴질랜드	2.42	구아나	22.66
노르웨이	1.00	온두라스	18.25
포르투갈	4.86	자마йка	6.40
스페인	2.81	멕시코	23.55
스웨덴	4.24	파나마	5.88
스위스	3.04	페루	130.98
터키	2.62	세인트 루시아	48.31
영국	3.10	트리니다드&토바고	15.29
미국	3.28	우루과이	6.51
		베네주엘라	17.46
평균	3.12	평균	22.78
표준편차	1.28	표준편차	31.26

資料: Mitchell, Olivia. S., "Administrative Costs in Public and Private Retirement Systems," *NBER Working Paper 5734*, 1996, p.52.

나. 個人年金 管理運營 現況

1) 受信現況

個人年金受信庫를 취급기관별로 살펴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액은 6조 9895억원으로 전체 15조 9881억원의 4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은행신탁에 예치된 개인연금 금액이 34.2%인 5조 4580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생명보험사와 은행신탁의 개인연금 수신액을 합하면 12조 4475억원으로 78.1%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로 이 두 유형의 금융기관에 연금을 가입하고 있다. 특히 1995년 3월말에는 은행신탁금액이 생명보험사금액보다 4631억원이 많았으나, 1996년 3월말에는 그 차가 3670억원으로 줄고, 1997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보험의 수신고가 은행신탁금액을 초과해서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연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별 受信現況을 알아보면 <表 2-16> 과 같다.

개인연금의 稅制惠澤은 두 가지 형태의 개인소득세 경감에 의하여 나타난다. 첫째는 개인연금상품구입에 따른 釀出金の 所得控除이며 둘째로 利子所得稅 減免이다. 문제는 저축자들이 이러한 상품을 추가적 저축으로 구입하기보다 기존의 저축을 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수단 전환에 따른 세금손실만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저축을 증대시키면서 연금성격의 저축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아울러 개인연금이 55세 이후에 수급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없이는 가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장기적 생애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제도의 유연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는 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表 2-16〉 金融機關別 受信現況

(단위: 억원, %)

구분	'95. 3.	'96. 3.	'97. 3.	'98. 3.말	'99. 3.말	'99. 6.말
생명보험	6,336	17,863 (181.9)	39,518 (121.2)	56,111 (42.0)	67,095 (196)	69,895 <43.9>
은행신탁 ¹⁾	10,967	21,433 (95.4)	33,764 (57.5)	4,5490 (34.7)	50,240 (10.4)	54,580 <34.2>
손해보험	2,503	6,991 (179.3)	13,086 (87.2)	17,511 (33.8)	20,447 (16.8)	21,520 <13.5>
투산 ²⁾	공사 채형	1,922 (525.3)	17,332 (44.2)	11,633 (△32.9)	9,340 (△19.7)	10,055 <6.3>
	주식형	3,753 (△8.8)	3,432 (0.3)	2,907 (△15.3)	2,673 (△8.0)	3,331 <2.1>
	소계	5,675 (172.2)	15,446 (34.4)	20,764 (△30.3)	14,540 (△17.4)	13,386 <8.4>
합 계	25,481 (142.3)	61,733 (73.5)	107,132 (73.5)	133,652 (24.8)	149,795 (12.1)	159,381 <100.0>

註: 1) 은행회계연도 기준(예: '95. 3.말은 '94.말 기준임)

2) 순매각잔고 기준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내는 전체 개인연금수신의 구성비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각연도.

2) 運營現況

일반적으로 保險會社의 경우 設計士나 代理店을 통해서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은 지점창구를 통해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판매조직을 통해 유입된 보험액은 보험사나 은행의 특성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판매조직을 통해서 개인연금상품의 각 금융기관별 가입현황을 알아보고, 신탁이나 보험을 통해 모인 자금의 운영현황

그리고 지급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銀行

은행의 총부채 중 금전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90.5%에서 1997년 90.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총부채 124조 7769억원 중 1.1%인 1조 4168억원에서 1997년에는 총부채 171조 3917억원 중 2.0%인 3조 432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점차 그 비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권의 부채계정 중 개인연금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 2-17〉 銀行의 個人年金信託 比重

(단위: 억원, %)

계정과목	1995		1996		1997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전신탁	1,129,064	90.5	1,342,188	91.1	1,556,415	90.8
(불특정금전신탁)	140,368	11.2	109,949	7.5	20,760	1.2
(적립목탁)	132,922	10.7	184,320	12.5	289,634	16.9
(가계금전신탁)	189,711	15.2	283,518	19.2	221,177	12.9
(개발신탁)	317,203	25.4	361,241	24.5	356,421	20.8
(특정금전신탁)	194,740	15.6	248,422	16.9	374,827	21.9
(노후금전신탁)	77,667	6.2	65,693	4.5	36,637	2.1
(기업금전신탁)	44,067	3.5	40,654	2.8	26,853	1.6
(국민주신탁)	806	0.1	719	-	670	-
(퇴직적립신탁)	17,412	1.4	15,738	1.1	2,410	0.1
(개인연금신탁)	14,168	1.1	22,537	1.5	34,328	2.0
(가계장기신탁)	-	-	9,397	0.6	58,373	3.4
기타	118,705	9.5	130,886	8.9	157,502	9.2
부채총계	1,247,769	100	1,473,074	100	1,713,917	100

資料: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9.

은행권의 개인연금 계약건수를 살펴보면, 1994년 299만 9천건의 개인연금 계약건수가 1998년에는 150만 1천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기관별 수신현황에서 생명보험사로 개인연금의 수신액은 증가하는 반면, 은행신탁 수신고는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은행의 개인연금은 신탁형이라 보험형에 비하여 안전성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의 개인연금 계약건수 추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 2-18〉 銀行圈의 個人年金 保有契約件數 推移

(단위: 천건)

연 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은행	2,999	2,389	2,154	1,851	1,501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7;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9;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위 〈表 2-18〉 과 같이 은행권의 보유계약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99년 9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연금 신탁계좌수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전체 103만2천76개 계좌 중 19.48%인 20만 천계좌로 가장 많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은행은 18만 5천 700계좌를 보유하여 전체의 17.99%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 은행 중 상위 50%의 은행이 보유한 개인연금계좌수가 전체의 74.21%인 76만5천885개를 차지하고 있다. 각 은행별 개인연금신탁의 각 시중은행별 계좌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2-19〉 市中銀行 個人年金計座數 現況

(단위: 계좌)

은행명	계좌수	은행명	계좌수
국민은행	201,000	제일은행	83,000
주택은행	185,700	서울은행	67,230
조흥은행	153,654	외환은행	48,231
한빛은행	140,808	한미은행	41,470
신한은행	84,723	하나은행	26,260
계	765,885	계	266,191
총계		1,032,076	

註: 1999년 9월말 현재 현황임.

資料: 각 은행 내부자료

은행권의 責任準備金の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1조 967억에서 차츰 증가하여 1998년에는 5억 240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20〉 銀行圈의 責任準備金 推移

(단위: 억원)

연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은행	10,967	21,433	33,764	45,490	50,240

資料: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9;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은행은 가입자를 통해 신탁된 개인연금의 이익을 매년 6월과 12월 4번째 일요일에 平均配當率로 단리계산하여 익영업일에 원가에 합한다. 만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은행의 경우는 해지 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와는 별도로 2년 미만인 경우는 해지액의 2%, 2년 이상 5년 미만은 해지액의 1%, 5년 이상인 가입자는 면제되고 있다. 또한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이익은 전액 과세처리 되고 있다. 단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처리하고 있다.(국민은행 신탁업무 내부자료) 평화은행의 경우는 2년 미만의 경우 해지액의 2%를 신탁이자에서 차감하고, 2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지액의 1%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의 총 신탁계정 197조 4969억원 중 個人年金信託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인 5조 32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조 3836억원은 대출금으로 사용되었고 3조 5216억원(66.2%)이 유가증권으로 운영되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가증권 중에서도 기업어음으로 1조 15억원(28.4%)이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수익증권이 25.3%인 8903억원이 투자되었다. 신탁계정에서는 유가증권에 71%인 140조 1983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5.9%인 36조 2922억원은 회사채로 기업어음으로는 35조 2481억원(25.1%)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신탁계정 전체적으로는 有價證券이 가장 많은 71%가 투자되었으며, 유가증권 중에서도 회사채, 기업어음, 수익증권 순으로 투자되었으나 개인연금신탁 부문에서는 기업어음, 수익증권, 기타 순으로 운용되어서 자금운영내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의 개인연금신탁의 운용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2-21〉 銀行 個人年金信託 資産運用 現況

(단위: 억원, %)

구분	개인연금신탁		신탁전체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대출금	13,836	26.0	384,418	19.5
유가증권	35,216	66.2	1,401,983	71.0
(기업어음)	10,015	<28.4>	352,481	<25.1>
(수익증권)	8,903	<25.3>	321,981	<23.0>
(회 사 채)	6,841	<19.4>	362,922	<25.9>
(보증어음)	1,550	<4.4>	39,618	<2.8>
(주 식)	-	-	18,950	<1.4>
(기 타)	7,907	<22.5>	306,031	<21.8>
기 타	4,183	7.8	188,568	9.5
합 계	53,235	100	1,974,969	100

註: < > 안은 유가증권 중 구성비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個人年金信託 가입자에 대한 은행의 연금지급은 1999년 6월부터 개시되었는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연금신탁을 지급기간을 갖고 지급 받는 가입자가 5만 732건으로 전체 7만 3,262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연금지급기간이 5년인 연금을 선택한 가입자가 5만 732건 중 92.9%인 4만 7,128건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6년 이상의 지급기간을 갖는 계약 건수는 7.1%인 3,604건에 머무르고 있다.

〈表 2-22〉 銀行 個人年金信託加入者の 年金選擇 現況('99. 7~9)

(단위: 건, %)

	연금선택(연금지급기간)			일시금 선택	계
	5 년	6년 이상	소 계		
은행	47128(92.9)	3604(7.1)	50732(69.2)	22530(30.8)	73262(100)

註: ()안은 연금선택(연금지급기간)의구성비임.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나) 生命保險社

일반은행과는 달리 생명보험사는 개인연금이 보험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수신현황,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자.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수신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 2-23〉 生命保險社 受信現況

(단위: 억원, %)

	1995		1996		1997		199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개인연금보험	197,825	74	177,416	68	238,284	71	215,410	70
(노후복지연금보험)	121,005	45	102,586	40	59,937	18	15,478	5
(새가정복지보험)	38,248	14	315,825	6	13,722	4	4,321	1
(개인연금보험)	26,617	10	32,910	13	33,843	10	25,438	8
(무배당보험)	11,955	4	17,592	7	60,451	18	69,256	23
(비과세가계장기저축)			8,503	3	23,485	14	16,184	28
(슈퍼재테크보험)					46,846	29	84,733	30
단체보험	70,431	26	82,276	32	96,875	29	92,169	30
합 계	268,256	100	259,692	100	335,159	100	307,579	100

資料: 생명보험협회 내부자료

각 생명보험사별로 현재 판매중인 個人年金保險商品을 합하여 개인연금보험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보험은 법인 등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말한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개인연금보험의 종류는 증가하였고, 비율은 1996년의 68%를 제외하고는 모두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개인연금상품 비중의 변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후복지연금보험의 경우 1995년도에는 총 26조 8256억원 중 45%인 12조 1005억원의 수신액을 보이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1조 5478억원으로 전체 30조 7579억원 중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24〉 生命保險社 個人年金 保有契約件數

(단위: 천건)

	1994	1995	1996	1997	1998
생명보험사	1,688	2,275	2,728	2,403	1,896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7,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개인연금보험 보유계약건수가 168만 8천 건에서 272만 8천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에는 24만 3천건으로 약 30만건이 감소하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189만 6천건으로 감소하였다.

〈表 2-25〉 生命保險社 責任積立金 現況

(단위: 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생명보험사	6,336	17,863	39,518	56,111	67,095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7;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9;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責任準備金은 해약환급액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각 은행이 비치해야만 하는 금액으로써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보험감독규정 제77조).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책임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의 책임적립금도 1994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는 매년 약 1조 1천억원 이상이 증가하였고, 1997년에는 약 1조 6천억원

이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에도 1조원 이상이 책임적립금으로 생명보험사에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과 책임준비금 절대액수를 비교해 보면 1994년과 1995년에는 은행이 생명보험사보다 각각 4631억원과 3570억이 많았으나 1996년 이후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적립금액이 더 많아져서 1998년에는 1조 6855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2-26〉 生命保險社の 資産運營 內譯

(단위: 십억원)

	1993	1994	1995	1996	1997
현금과 예금	4,979	5,161	9,586	13,117	13,584
유가증권	13,550	15,935	19,202	21,387	23,480
대출금	24,451	24,480	31,581	38,228	41,770
부동산	3,782	4,340	5,116	6,007	7,348
총계	46,762	49,916	65,485	78,739	86,182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97.

생명보험사의 금융상품 중 하나인 개인연금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전체적인 자산운영 내역을 조사하였다. 이 금액에 개인연금보험액도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貸出금이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총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에도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6년과 1997년에는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유가증권 투자비율은 29%에 이르고 있다. 결국 1996년과 1997년의 경우 대출금과 유가증권에 투자

된 비율이 각각 76%와 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지급 방법 및 건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 2-27〉 生命保險社의 支給方法 및 支給件數 現況('99. 6~9)
(단위: 건, %)

	연금선택(연금지급기간)			일시금 선택	계
	5 년	6년 이상	소 계		
생명보험사	180<36.2>	317<63.8>	497(35.9)	886(64.1)	1,383(100)

註: < >안은 연금선택(연금지급기간)의 구성비임.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생명보험사가 지급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6월부터 연금보험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생명보험사에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계약 건수를 보면 총 1,383건 중 연금지급기간을 갖는 연금지급방법을 통한 계약이 35.9%인 497건으로 조사되었다. 497건 중 6년 이상이 63.8%인 317건으로 나타났으며 5년은 180건(36.2%)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의 경우는 연금선택에서 5년이 92.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연금의 성격인 신탁형과 보험형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은행과는 달리 일시금선택이 매우 높은 64.1%인 88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일시금선택이 30.8%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公的年金 管理運營 業務프로세스 分析

1. 國民年金

가. 資格管理

1) 資格管理의 特殊性: 強制性和 申告制

民營保險과 달리 公적연금의 적용상의 특징은 強制性에 있다. 원칙적으로 社會보험제도의 적용대상자는 당연히 強제가입대상자이다.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민영보험에서는 적용이라는 의미가 필요하지 않고, 소극적 의미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하여져 있을 뿐이다.

즉, 社會보험 제도가 민영보험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強制性 여부에 있고, 이는 社會보험제도에서의 적용업무의 성격을 규정짓는다. 強제적용으로 인하여 公적연금에서는 보험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強제가입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응하지 않는 가입자를 관리하는데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뿐이다.

두 번째 특징은 申告制이다. 社會보험 적용의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民年金은 가입자의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가 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하여진 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고제는 강제성을 전제로 한 가입방법이지만, 연금보험 관리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할 필요는 없다.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자가 가입신고

를 스스로 해야한다는 논리이지만, 신고제는 행정상 편의성의 산물이다. 강제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고제로 한다는 것은 가입자에게 가입의 강제성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연금보험에 대한 불성실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適用 現況

국민연금은 1999년 4월부터 도지지역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게 당연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업주부, 학생, 의무병역 군인 등은 적용제외하고 있다.

3) 適用基準

국민연금은 연령, 별도 소득유무, 세대주 여부, 피보험자 자격상의 차이(공무원 등 특수직역,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사업주, 불완전 취업자, 외국인) 등에 따른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4) 國民年金의 適用上의 特徵과 意味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강제가입 대상자인 당연가입자 이외에 任意加入者 制度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장해 및 유족연금의 경우도 일정가입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事業場 관리에서는 사업주가 申告 義務를 가진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회보험관리상 일정한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지불한다. 이에 비하여 자영자는 본인이 가입 및 탈퇴신고를 하여야 한다.

〈表 3-1〉 國民年金的 種別 加入者 資格要件

가입자 종별		자 격 요 건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특례적용 지역가입자	○ '95. 7. 1.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어민 ※ '95. 12. 31까지 본인이 신청한 경우 70세까지 가입가능 ○ '99. 4. 1.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 2000. 3. 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사업장가 입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임의적용 사업장가 입자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임의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가 60세에 달하였으나 희망에 의해 계속 가입한 자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 원 및 그 배우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 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 거택보호자와 그 배 우자 및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가입을 희망하 지 않는 자와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국민연금 관리운영측면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이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사업장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의 차이는 규모의 경제성, 지역가입자에 대한 제도 운용비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資格管理 業務 프로세스

事業場加入者の 경우 가입자 資格取得 및 喪失 신고의무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되며,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가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으로 정해져 있으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의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자격상실 및 취득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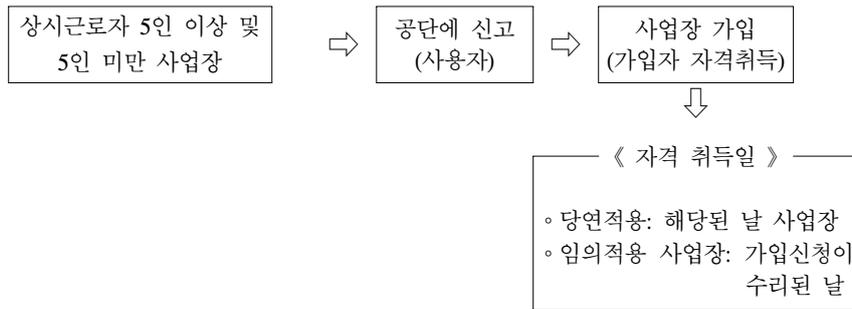
〈表 3-2〉 加入資格 取得 및 喪失時期

가입자종별	자격취득시기	자격상실시기
사업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날 ○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 당면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로 된 날 ○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18세에 도달한 날 ○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18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 일용직, 기한부 등의 근로자가 3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날의 다음날에 자격상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임의적용사업장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5. 60세에 달한 때

〈表 3-2〉 加入資格 取得 및 喪失時期(계속)

가입자종별	자격취득시기	자격상실시기
지역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타공적연금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날 ○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타 적용제외대상(시설·거택 및 자활보호 등)에서 해제된 날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날의 다음날에 자격상실함. 다만, “4”의 경우 해당한 날에 자격상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한 날 2.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날 3.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4.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5. 타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소득이 없게 된 날 6. 18세 이상 23세 미만인자로서 학생이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도달한 날
임의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날의 다음날에 자격상실. 다만, “3”의 경우는 그 해당일, “4”의 경우는 연금보험료 납부 최종월 말일의 다음날 상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가입자 상실시기 1~2호 및 7호 2.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3. 타공적연금가입자 또는 다른 종별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4. 3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임의계속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 이내에 가입신청서가 수리된 날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날의 다음날에 자격상실. 다만, “4”의 경우는 그 해당일, “5”의 경우는 연금보험료 납부 최종월 말일의 다음날 상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가입자 상실시기 1~2호 2.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3. 65세에 도달한 날 4. 3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圖 3-1] 事業場 加入申告



나. 保險料 賦課 및 徵收

1) 事業場加入者(勤勞者)에 대한 保險料賦課基準

여기서 ‘勤勞者’란 엄밀하게 말하면 ‘事業場加入者’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통상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 등은 사업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保險料의 算定基準은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이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과 유사하다. 주로 봉급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소득월액은 前年度 소득총액을 월수로 나누어 결정하며,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보험료의 分擔은 가입자 3%, 사용자 3%, 퇴직금전환금 3%로 구성되었으나, 1999년 1월부터는 가입자 4.5%, 사용자 4.5%로 개정되었다.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기준은 <表 3-3> 과 같다.

〈表 3-3〉 事業場加入者에 대한 社會保險料 賦課基準¹⁾

구분	내용
소득범위	봉급+수당+상여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상하한	○ 상한: 360만원 ○ 하한: 22만원 (45등급 분류)
부과소득결정	○ 前年度소득기준으로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재결정 - 적용기간 : 당해년도 4월~익년도 3월
보험료율	9% (노사 각 4.5%, '99. 1월부터) * 지역가입자 3%

註: 부과기준소득에는 봉급 및 20여 종의 수당이 있으며, 각 제도별로 수당을 포함하는 정도가 다름. 또한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사이에 차이 있음.

2) 地域加入者에 대한 保險料賦課基準

地域加入者란 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의미한다. 즉 지역가입자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농어민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원칙은 〈表 3-4〉와 같다.

〈表 3-4〉 地域加入者에 대한 保險料 算定原則

○ 個人단위로 산정
○ ‘業種別 基準所得’을 추정하되,
○ 개인별 보유자료에 따른 부과기준 다양화
- 국세청 과세자료
- 과세대상근로소득
- 지역의료보험 능력비례보험료자료
- 정액보험료 (중위소득기준)
○ 표준소득월액의 등급과 상하한 : 45등급 (22만원~360만원)
* 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에 대해 최저등급보험료의 1/3(월 2,200원)

국민연금 보험료부과를 위하여 지역가입자를 부과자료의 보유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료부과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表 3-5〉 國民年金 保險料賦課를 위한 地域加入者 分類와 對象者 分布

대상자 분류	대상자 분포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	
사업자등록 자영자	
사업소득자료 보유자	153만 9천명 (17.3%)
사업소득자료 미보유자	54만 5천명 (6.1%)
근로소득세납부 근로자	131만 6천명 (14.8%)
국세청 과세자료 미보유자	
지역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 ¹⁾	317만명 (35.6%)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234만 5천명 (26.2%)
계	891만 6천명 (100%)

註: 1) 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는 총 보유자 537만 8,842건 중에서 국세청 자료 보유자 220만 8,484명을 제외한 수치임.

〈表 3-6〉 國民年金 保險料賦課를 위한 地域加入者 分類와 賦課基準

대상자 분류	부과기준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	
사업자등록 자영자	
사업소득자료 보유자	업종별 기준소득×조정계수 ¹⁾
사업소득자료 미보유자	업종별 기준소득
근로소득세납부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국세청 과세자료 미보유자	
지역의료보험 부과자료 보유자	거주지역(洞)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 조정계수 ²⁾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중위소득(99만원)

註: 1) 조정계수 = 개인 사업소득/해당업종 평균사업소득

2) 조정계수 = 대상자의 능력비례보험료/거주지역 평균능력비례보험료

국세청 과세자료 보유자에 대해서,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自營者의 경우 사업소득자료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345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업종별 기준소득표』에 의한 기준소득액에 개인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조정계수를 곱하여 권장소득(최고 345만원, 최저 기준소득의 70% 이상)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권장소득은 업종별 기준소득에 조정계수를 곱하며, 조정계수는 개인별 사업소득금액이 개인이 속하는 해당업종의 평균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비중으로 계산된다.²⁾ 후자의 경우 『업종별 기준소득표』에 의한 기준소득액을 권장소득으로 제시한다.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 납부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서 勸獎所得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세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과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계층이다. 전자의 경우 상대적인 보험료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의료보험의 능력 비례보험료 부분을 활용한다. 생활정도가 유사한 지역(洞單位)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전국 평균 160만원, '98. 4)을 곱하여 권장소득으로 제시하고,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동단위)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자의 능력비례 보험료가 평균 능력비례보험료(동단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³⁾ 여기에서 자영자가 거주하는 동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근로자평균임금을 보험료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접근방안이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이 차별화

2) 이 경우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자영사업자에게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업종별 소득과악 정도에 따라 공평과세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개정되어 왔다. 비록 과세자료 자체가 공평하다는 확증은 없지만 상대적인 부담능력의 비교지표로서는 이 외의 적절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3) 신고권장소득의 하한선은 거주지역의 사업장 평균소득의 70% 이상으로 하여 소득 신고의 하향화를 방지하고 소득관련자료가 전혀 없는 계층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실제로 보험료부과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農漁民의 경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보건복지부의 소득신고기준 적용)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주로 가입자의申告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표’를 만들어 신고권장소득으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徵收管理

徵收節次와 관련하여 징수는 보험료부과기준에 따른 징수 문제뿐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기한내 징수와 납부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表 3-7참조).

〈表 3-7〉 國民年金 保險料의 納付期限 및 保險料 督促·滯納處分

보험료 납부기한	익월 말일
보험료 독촉·체납처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독촉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각 공단의 지역전산센터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개인 혹은 세대)에게 통지하는데,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각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개인단위)를 각각 금융기관에 분리 납부한다. 보다 구체적인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국 33개 금융기관을 4개의 통합기관으로 분할하여 상호 전산망을

VAN으로 연결하고 공단본부와 통합기관간은 온라인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독자적 통합 위탁수납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절차는 공단 본부에서 변동사항을 전산처리 → 6개 지역전산센터에서 납입고지 파일을 수신하고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처에 발송 → 사업장(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지역자영자 → 금융기관에 입금하게 된다.

다. 給與

1) 國民年金 給與의 特徵

가) 所得再分配 機能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되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저소득 계층일수록 최종보수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을 높여 소득계층간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나) 年金額의 實質價値 保障

年金額의 최초 결정시는 가입기간중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實質價値를 항상 유지한다.

다) 稅制上的 特典

연금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주민세, 상속세가 면제된다.

2) 給與의 種類 및 水準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장해 일시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가) 老齡年金的 給與種類 및 給與水準

〈表 3-8〉 老齡年金的 給與種類 및 給與水準

구분	수급요건	가입기간, 연령 등	급여수준
완전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단, 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에 도달한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도달한 자	가입기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기본연금액72.5%+가급연금액 " 77.5%+ " " 77.5%+ " " 77.5%+ " " 77.5%+ "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은퇴하여 60세 도달전에 연금수급을 원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수급개시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기본연금액75% +가급연금액 " 80% + " " 85% + " " 90% + " " 95% + "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단, 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에 도달한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기본연금액50%(가급연금액은 해당 없음) " 60% " 70% " 80% " 90%

나) 遺族年金的 給與水準

〈表 3-9〉 遺族年金的 給與水準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1.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가,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2.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의 질병·부상으로 가입 중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사망당시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가급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가급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다) 障害年金的 給與水準

〈表 3-10〉 障害年金的 給與水準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단, 질병의 경우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1급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
	3급	" 60% + "
	4급	기본연금액 150%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障害年金的 경우 연금액의 변경은 두 가지 사유에 의하여 행해진다. 첫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둘째, 장애연금 수급

권자의 장애가 악화되어 이를 청구하면 심사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장애(전발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후발장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라) 返還一時金の 給與水準

〈表 3-11〉 返還一時金の 給與水準

수급요건	급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로 - 60세 도달, 국적상실, 국외이주 자 ◦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연금보험료 + 계속가입기간의 이자 (기여금 및 퇴직전환금: 3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부담금: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각각 적용) + 자격상실 후 청구시 까지의 가산금(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마) 障害一時補償金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과 동일하며 다만 4급 장애를 입었을 때 기본 연금액의 150%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바) 死亡一時金 給與水準

〈表 3-12〉 死亡一時金の 給與水準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 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이었던 자)와 사망당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최우선 순위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 모순)	가입자 또는 가입 자이었던 자의 반 환일시금 상당액

3) 給與의 支給基準

국민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의 기본은 기본연금액이나 여기에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가급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text{연금급여액} = \text{기본연금액} + \text{가급연금액}$
--

가) 基本年金額

基本年金額은 均等부분, 소득비례부분 및 가입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均等부분은 개개인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며,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산정된다.

기본연금액 = $2.4(A + 0.75B) \times (1 + 0.05n)$: 1998년 이전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 $1.8(A + B) \times (1 + 0.05n)$: 1999년 이후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가입기간 20년(240개월)일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A=B 일 때 연금월액은 최종월 소득의 35% 수준) ◦ 1.8: 가입기간 20년(240개월)일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A=B 일 때 연금월액은 최종월 소득의 30% 수준) ◦ A(均等부분): 연금수급전년도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소득 재분배 기능) ◦ B(소득비례부분):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0.75: 'B'를 조정하는 상수 ◦ n: 20년 초과 가입년수(예: 가입기간이 25년일 때 n=5임) ◦ 0.05: 가입기간 20년 초과 매 1년에 대한 연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나) 加給年金額

加給年金額은 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주는 일종의 가족수당성격의 부가급여이다.

〈表 3-13〉 加給年金 支給對象 要件內容

지급대상	요건
배우자	(사실혼 포함)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2인이내)
부모 (배우자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다) 年金額의 調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다. 이때 기본연금액 산식 중의 'A', 'B'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한다.

適用期間은 당해년도 4월부터 다시 조정하게 되는 연도의 3월까지 적용한다.

4) 給與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가) 支給期間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나) 支給時期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및 12월에 각각 그 달까지의 금액을 해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한편, 최초 청구시 소급지급분은 상기일정에 관계없이 수시 지급하며 반환일시금의 경우 청구 즉시 지급한다.

5) 障害給與時 障害等級 및 基準

障害年金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다. 급여의 수준은 1급, 2급, 3급, 4급 등 4등급으로 구분된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장애 1~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의 60~100%까지와 가급연금액을 받고 장애 4급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150%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때 疾病의 경우에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질병 또는 負傷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表 3-14〉 障害等級의 區分 基準

등급	번호	장애의 상태
1급	1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1 내지 5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시 감시 또는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2급	1	두 눈의 시력이 0.04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에 현저한 변형이나 고도의 운동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1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가 남은 자
	12	정신에 노동불능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 또는 정신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表 3-14〉 계속

등급	번호	장애의 상태
3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상실한 자이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1내지 10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4급	1	두 눈의 시력이 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증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1내지 8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1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6) 給與審査, 審議 및 異議申請 組織

가) 國民年金 給與間 併給調整

給與(年金 또는 返還一時金)의 수급권이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를 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다면 2개의 급여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유리한 급여 이외의 급여의 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된다.

나) 産災給與와 併給調整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해당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해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다) 異議申請 對象

다음 사항(① 가입자의 자격, ② 표준소득월액, ③ 연금보험료, ④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 ⑤ 급여)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異議申請期間

이의신청 대상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마) 異議申請 事項 審議

연금관리공단에 설치된 給與等級審議委員會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재적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정, 증거제출,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바)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결정권자는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고, 異議申請이 부적법한 것일 때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기각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인용(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사) 審査請求

이의신청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審査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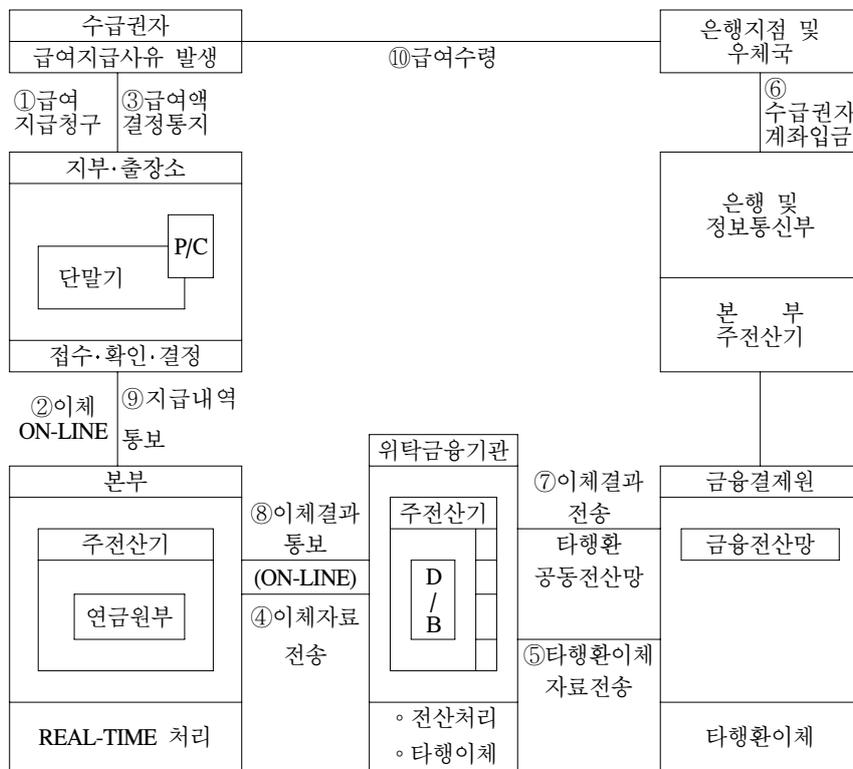
7) 給與支給 組織 및 業務의 흐름

가) 給與請求 業務處理흐름도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給與請求를 둘러싼 전체업무처리 흐름도를 보면 [圖 3-2]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수급권자가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부 또는 출장소를 상대로 지급을 청

구하면 이에 대한 본부로의 통보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진 뒤 지급결과를 통보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급여가 수령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잘 알 수 있다.

[圖 3-2] 業務處理 흐름도



나) 給與請求 管轄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부·출장소이며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의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지부·출장소가 된다.

라. 國民年金 基金 概要

1) 國民年金基金의 性格

國民年金事業에 필요한 財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充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국민연금법 제82조 제1항)인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 結算상잉여금으로 積립되며, 積립된 기금은 연금급여의 지급,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그 대부분이 가입자와 그 가입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各출금으로 組成되므로 일종의 가입자 新탁재산으로 볼 수 있다.

2) 國民年金基金運用 現況

국민연금은 1999년 7월말 현재 연금보험료로 38조 1060억원을 각출 하였으며 기금운용수익 14조 4450억원 등을 합하여 52조 55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9조 9914억원이 지출되었고 積립기금 42조 5596억원을 운용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유가증권 등을 매입함으로써 이식사업에 투자되는 금융부문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되어 정부재정으로 사용되는 공공부문, 노인복지시설이나 탁아소 건립 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에 사용되는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積립기금은 공공부문에 30조 2031억원(71.0%), 금융부문에 11조 2616억원(26.4%), 복지부문에 1조 1261억원(2.6%)이 각각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에 운용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

상이어야 한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결과를 매년 서울에 본사를 둔 경제분야일간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表 3-15〉 國民年金基金의 投資部門別 收益率 現況

(단위: %)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공공부문	11.00	11.00	11.00	11.00	11.00	9.67	10.25	11.64	10.30	10.33	13.02
복지부문	-	-	-	11.00	11.00	11.00	10.94	10.68	9.69	5.56	8.93
금융부문	12.95	14.35	13.83	14.04	14.07	13.87	13.91	13.11	11.86	8.67	18.37
총 계	11.98	12.79	12.55	12.76	12.68	11.99	12.10	12.11	10.75	8.84	14.41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3) 國民年金基金의 運用節次

국민연금기금 運用計劃은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및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연금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로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3-16〉 國民年金基金的 運用節次

업무흐름	주관	업무수행
1.기금운용계획작성 기준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월말까지 통보
2. 기금운용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 4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 ○ 운용위원회에서 5월말까지 심의·의결
3.기금운용계획협의	재정경제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6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말까지 동계획에 대한 협의 완료
4. 기금운용계획	보건복지부	○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5.연간자금운용지침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침 시달 - 동 지침에 의거 연간 자금운용계획작성, 복지부 보고
6. 월자금운용계획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승인
7. 일(日)자금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 매일의 조성자금을 월자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

4) 政府의 支援內容

연금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연금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74조). 또한 지역가입자 중 농어민에 한해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00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다. 농어민 국고보조 재원은『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다.

마. 公團運營

1) 本部 組織 및 業務 分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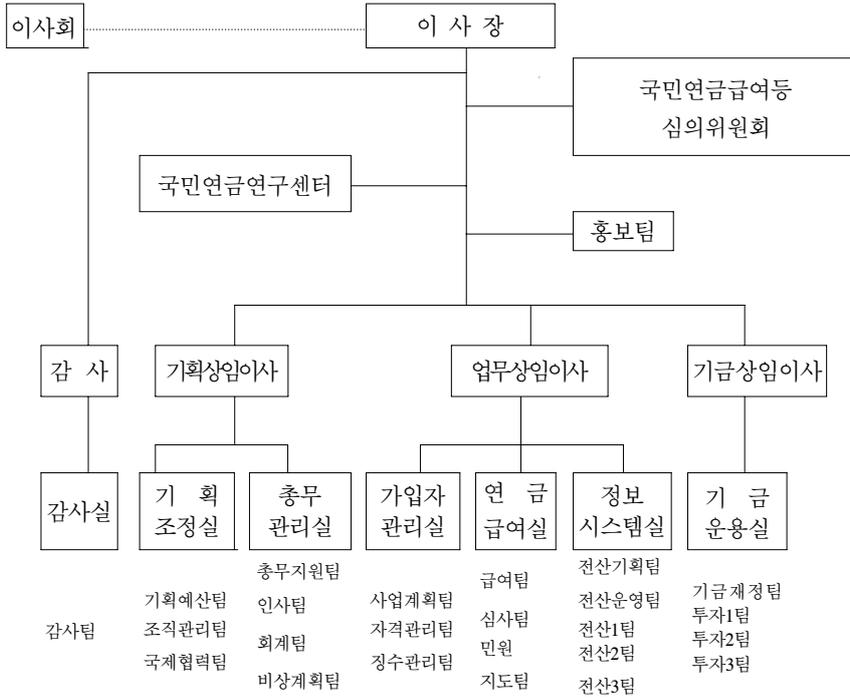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개의 본부와 53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조직은 7실, 국민연금센터, 1팀(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실은 기획조정실, 총무관리실, 가입자관리실, 연금급여실, 정보시스템실, 기금운용실,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 산하에 기획예산팀 등 23개 팀별 운영체제가 있다. 또한 7개 실 외에 국민연금제도 연구, 재정추계 및 기금투자방안 등을 연구하는 국민연금연구센터와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구성의 현황은 [圖 3-3] 과 같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7개실 및 국민연금연구센터, 홍보팀의 주요 업무 분장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수립·조정, 예산편성, 행정관리, 국제협력, 이사회 운영

- 총무관리실: 총무지원, 인사·회계관리, 임직원 임금·후생, 연금회관사업, 비상계획
- 가입자관리실: 자격관리 기준 관리, 징수관리, 소득과약 기준·절차 개발
- 연금급여실: 급여관련 기준 관리, 급여지급 및 정산, 급여심사, 민원지도
- 정보시스템실: 전산계획 수립·유지관리, 연금 원부 DB 관리, 전산운영
- 기금운용실: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증식 및 투자관리, 기금회계관리, 자금대여관리
-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금제도·정책 연구 지원, 연금통계자료 분석 관리, 재정추계 및 연금수리모형개발, 투자정보 및 투자결과 평가분석, 관련 간행물 발간
- 홍보팀: 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圖 3-3] 國民年金管理公團 本部 組織圖



2) 支社 組織 및 業務 分掌

國民年金管理公團은 1998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3개의 지사가 있으며(70개 지사로 확대 예정), 각 지사의 하부조직은 [圖 3-4] 와 같다. 각 지사조직 중 국민연금종합민원센터, 가입자관리1부, 가입자관리 2부 등 3개 부서는 모든 지사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연금업무를 관리하며, 행정지원부와 전산지원센터는 특급지 등 지사의 등급에 따라 설치된다. 지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급지, 1급지, 2급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강남, 대전 등 5개 특급지는 5개 부서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종로, 중구, 수원, 부산 등 26개 1급지는 전산지

원센터를 제외한 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송파, 부천, 구미 등 27개 2급지는 전산지원센터와 행정지원부를 제외한 3개 부서만 설치되어 연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圖 3-4] 國民年金管理公團 支社 組織圖



註: 굵은 선은 전 지사에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부서, 실선은 1급지에 추가 설치되는 부서, 점선은 5개 특급지에만 설치되는 부서를 의미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설치된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행정지원부: 서무, 인사, 회계 등 기관 운영, 연금회관 임대·유지 관리
- 국민연금종합민원센터: 가입이력 안내, 연금원부 조회의뢰, 급여 지급 결정, 민원처리
- 가입자관리 1부: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징수, 자격변동 관리
- 가입자관리 2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 자격변동 관리
- 전산지원센터: 전산망의 관리, 타 전산망 연계, 본부·지사간 통신망 연계

2. 特殊職域年金 管理運營 業務프로세스 分析

가. 資格管理

資格管理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는 달리 公的 職域年金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용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가입대상자 관리의 개념에 치중한 것이다.⁴⁾(윤병식 외, 1998) 즉, 이들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민영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는 强制性을 원칙으로 한다.

公務員年金은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私立學校教員年金은 사립학교법 제54조와 제7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임시직이나 조건부로 임명된 자와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연적용 대상학교와 임의적용 대상학교를 구분하는데,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과 교육법 제81조 제6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은 당연적용 대상, 기타 사립학교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학교경영기관 및 연구기관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각 해당 연금법이 지정하는 대상자에게 적용하지만 사립학교교원연금은 事務職員의 경우

4) 적용과 자격관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적용은 가입대상자 관리의 개념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자격관리는 가입대상자 관리의 개념에 덧붙여 급여지급대상 자격을 가린다는 의미도 함유하고 있어 적용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관상 직급별 정원 범위내에서만 법직용이 되므로 신규 또는 승진 임용발령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상위 직급에 있던 자가 전입되었더라도 전입하는 기관의 정관상 정원에 여유 인원이 없으면 임용발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연금에서는 가입기간에 대한 개념으로 각 해당연금법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재직기간 관리로써 양 연금법 모두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 기간에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임용전 병역 복무기간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총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 및 승인절차는 양 연금 모두 거의 비슷하며, 申請(재직기간합산승인신청서)→確認·移送→承認與否 決定·通報의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고 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나. 保險料 賦課 및 徵收

각 직역연금의 保險料 負擔방법에는 각 가입대상자의 寄與金과 국가 또는 고용주채기관의 負擔金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 제외)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財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공무원 각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인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사립학교교원연금은 부담금으로써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단, 퇴직수당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토록 한다.

공무원연금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공무원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999년 현재 공무원이 보수월액의 7.5%를 寄興金으로 납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7.5%를 負擔金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7.5%를 부담하고, 학교 경영기관인 법인의 부담이 4.5%, 국가 부담액이 3.0%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개인부담 7.5%와 법인에서 7.5%를 부담한다.

그리고 소급통산분에 대하여는 前職에 대한 소급통산을 승인받아 납부하는 기여금으로 공무원연금에서는 보수월액의 7.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경우 동일법인 계속 근무시 소급통산분에 대하여는 개인과 법인이 부담금을 부담하며 각각 7.5%, 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통산분은 개인이 부담금을 전액인 15%를 부담한다.

각 직역연금법 공히 부담금에 대한 납부 명세서 송부와 함께 부담분을 징수하게 되는데, 각 연금법 모두 징수 의무자가 개인 부담금을 의무자의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및 합산반납금 모두 매월 보수 지급시에 각 공무원의 보수에서 원천 징수되고, 합산반납금 일시 납부금에 대하여는 합산 승인 통보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교원연금은 부담금 납부 명세서가 납부통지서와 함께 보수지급일 10~12일전에 학교기관으로 송부되어 각 학교기관의 장은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게 된다.

〈表 3-17〉 公務員年金 寄與金の 種類 및 金額

종류	내용	기여금액
기여금 (일반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보수월액의 75/1,000
소급기여금	○소급통산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기여금 ·48.8~59.12 사이의 공무원·군인 경력 ·75.1~80.6사이의 잡급직원 경력 (지방잡급은 76.1~80.6) ·73.11~80.6사이의 전문직원 경력 ○공무원 임용전의 현역병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기여금 ○병역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기여금	보수월액의 75/1,000
합산반납금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과거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아 납부하는 반납금	퇴직당시의 기여액+이자

資料: 『공무원연금실무요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表 3-18〉 公務員年金 負擔金 種類 및 金額

종류	내용	부담금액
연금부담금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 제외)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보수월액의 75/1,000
퇴직수당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연도 지급액 전액
재해보상부담금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혜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연도 지급액 전액
대여장학금부담금	공무원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연도 장학금 대여에 소요될 금액 전액

資料: 『공무원연금실무요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또한 연금급여에 지출되는 비용 외에 退職手當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의 부조급여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表 3-19〉 私立學校敎員年金 負擔金의 種類 및 內容

부담금의 종류		부담자 (납부자)	부담률		비고	
			교원	사무직원		
개 인 부 담 금	당 월 분	교 직 원	보수월액의 75/1,000	보수월액의 75/1,000	월 납	
	소 급 분	동일법인소급분 타법인소급분 군 소 급 분	해당교직 원	보수월액의 75/1,000		보수월액의 75/1,000
				보수월액의 150/1,000		보수월액의 150/1,000
			보수월액의 75/1,000	보수월액의 75/1,000		
법 인 부 담 금		학교(법인)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75	개인부담금과 동액	월 납	
국 가 부 담 금		국 가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0/75	-	분기납	
재해보상부담금		학교(법인)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55		월 납	
퇴직수당 부담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	-		-	
	국가부담금	국 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분기납	
	공단부담금	공 단	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		연 납	

資料: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연금실무요령』, 1997.

다. 給與管理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의 給與水準은 同一하며, 이는 공무원연금 적용대상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처우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써 양 연금제도에서 급여체계는 단기급여 4종, 장기급여 1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給與支給要件에 대해서는 공무상(직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직무상)요양 일시금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수가를 적용하여 前者는 2년간의 실제요양비와 後者는 2년간 요양 종료후 1년분의 추가소요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모든 급여액은 모든 직역연금 공히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表 3-20〉 公務員年金 給與의 種類

단기급여		장기급여			
부조급여	공무상요양급여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
재해부조급 사망조위급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급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포함) 퇴직연금일시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급 퇴직일시급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급 유족일시급 유족보상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註: 장해보상급여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급, 유족보상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실무요령』, 1998.

이들 급여는 給與請求書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하여 급여를 청구하며 청구서를 확인한 후 공단으로 이송, 각 공단에서는 급여지급을 결정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각 급여에 대한 청구, 지급, 수령 등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다.

각 연금급여지급에 대한 업무는 각 연금 모두 給與受給權者의 급여청구와 연금취급기관의 급여사유의 확인과정을 거쳐 공단의 급여결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조급여인 재해부조와 사망조위, 재해보상 등에 관한 급여는 공단에서 결정내용을 통보하면 國家職 공무원들은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그 재원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또한 地方職 공무원들은 공단에서 그 내역을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정한 급여지급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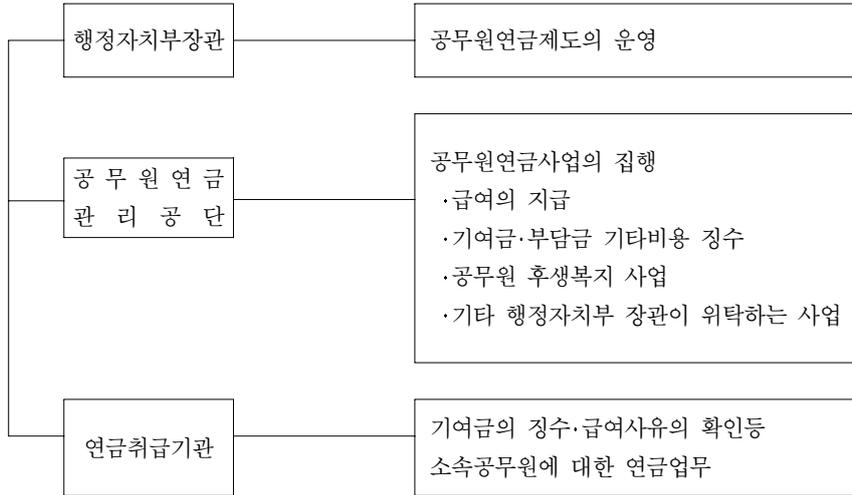
退職給與와 遺族給與는 청구인의 급여지급청구와 연금취급기관의 확인·이송의 과정을 거쳐 급여지급결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災害補償給與에 대해서는 각 연금 모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각 고용주채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각 공단으로 이송하면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고용주채부담원칙으로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인 경우 행정자치부 소관 일반회계 및 통신, 철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 制度의 管理運營體系

우리 나라의 공무원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그 사업 집행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과, 연금관련법령의 입안 및 해석, 기금운용 등 중요정책사항에 관한 결정과 공단의 관리감독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산하에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와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에의 해당여부 및 폐질등급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여부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公務員年金給與審議會를 두고 있다.

[圖 3-5] 運營主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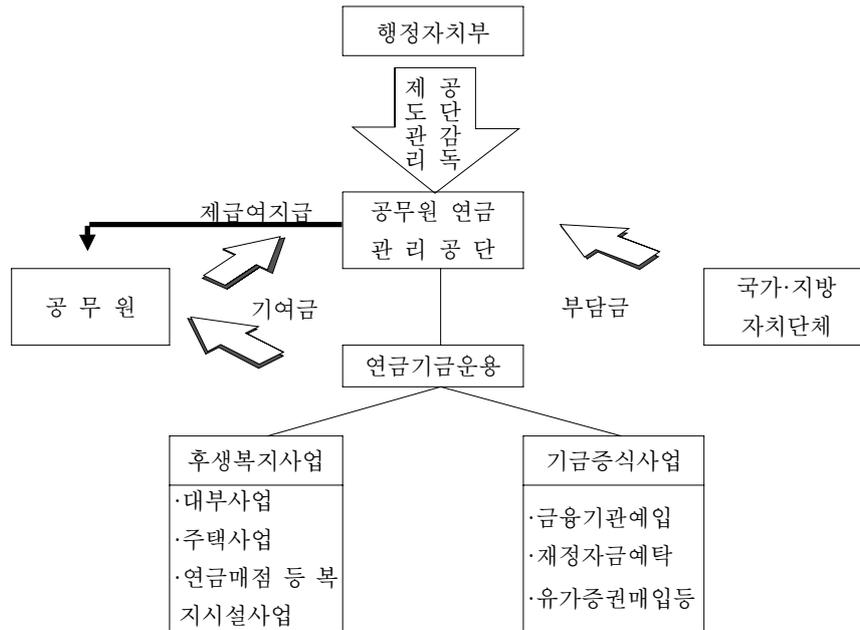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실무요령』, 1998.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 관리·감독하에 연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구로서 연금급여의 지급, 기여금·징수금·기타 비용징수, 기금증식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등 年金事業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實務機能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각급기관을 年金取扱機關으로 지정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수납업무, 급여의 지급업무와 기타 업무의 일부를 遞信官署·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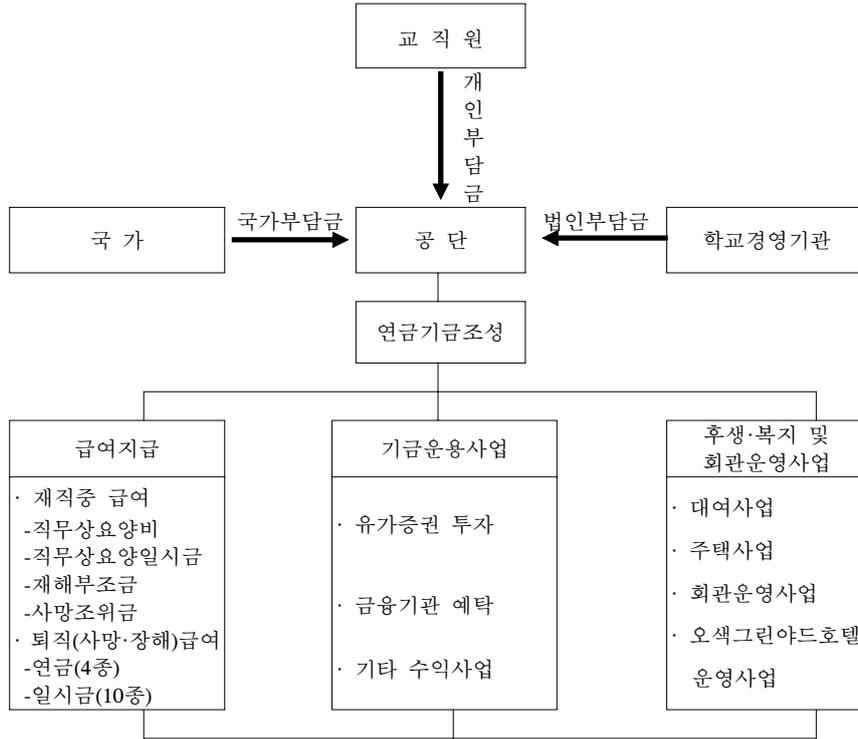
[圖 3-6] 公務員 年金事業體系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실무요령』,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교육부 감독하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그 사업집행을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며, 주요업무로는 부담금 징수와 제공여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과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업무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업무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圖 3-7] 私立學校教員年金 體系



資料: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연금업무실무요령』, 1997.

마. 基金管理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근거를 두어 공무원연금제도운영에 있어서의 年金給與에 대한 財源을 조달하게 되는데, 적립방식에 기초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제2항에서는 “기금은 매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라고 기금의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年金基金은 공무원 본인으로부터 釀出한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徵收한 부담금에서 퇴직급여 등 지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잉여금(연금회계에서 구분경리) 즉, 연금회계전입금과 기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기금운용수익(기금회계에서 구분경리)으로 조성되며, 이같이 조성된 연금기금은 장래의 급여준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表 3-21〉 公務員年金基金의 部門別 運用現況

(단위: 억원)

운용분야	연도별			비고
	82.2	97.12	98.12	
기금규모	5,491	62,015	51,422	
공공금융	927	16,179	7,429	재정예탁·국민투자기금·국민주택기금
(%)	(16.9)	(26.1)	(14.5)	
후생복지	876	8,776	7,881	대부·주택·후생복지·시설사업
(%)	(16.0)	(14.2)	(15.3)	
민간금융	3,148	27,870	24,848	유가증권투자
(%)	(57.3)	(44.9)	(48.3)	
지불준비금등	540	9,190	11,264	급여지급 대기성자금, 선급법인세등
(%)	(9.8)	(14.8)	(21.9)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실무요령』, 1998.

〈表 3-22〉 公務員年金基金 運用收益率

(단위: 억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연도말연금기금	49,003	52,414	51,495	56,805	62,015	51,422
당해연도운용이익	4,150	5,242	5,466	4,871	5,974	5,800
기금운용이익률	9.2%	10.7%	10.4%	9.5%	10.5%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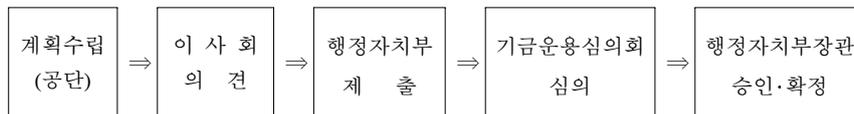
資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실무요령』, 1998.

이러한 年金基金은 제도의 초창기에는 연금수입이 연금지출을 초과하게 되어 발생한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기금규모가 계속하여 늘어나지만, 제도가 성숙되어 점점 급여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기금증가율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으로서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금융기관에의 예입,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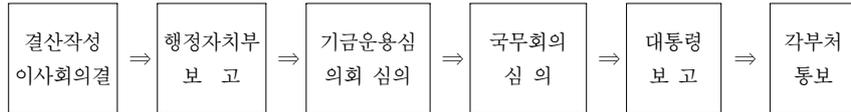
이러한 年金基金運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승인과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승인 등으로 감독하게 되며,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금기금 운용상의 法的 制限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내로 제한하며, 각종 대부이율은 연 3%이상으로 하되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 또한 부동산의 임대료율은 재산가격의 2%이상으로 하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圖 3-8] 基金運用計劃 樹立



〔圖 3-9〕 基金決算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연금법 제24조, 25조에 규정한대로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예산(사업계획)을 편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결산내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관련 法的 規制 내용으로는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 등에 자산운용 대상 및 범위가 명기되어 있는데, 사학연금공단의 자산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유가증권 매입, 그리고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資産運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증권금융회사, 채신관서와 상호신용금고에 위탁토록 한다.

사학연금공단의 연금기금에 대한 基金運用組織으로 현재 1부 3팀으로 구성 (주식운용팀, 채권운용팀, 투자분석팀)되어 있으며, 기금투자의 구성과 수익률을 투자기관과 금융상품별로 구성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表 3-23〉 金融資産 種目別 保有現況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 액	운용수익률	구성비	비고
채 권	1,115,883	15.1	44.9	
신 탁 자 산	681,131	5.8	27.4	
주 식	95,205	-50.7	3.8	
단 기 자 금	37,811	14.1	1.1	
공 공 자 금	565,000	13.0	22.7	
계	2,485,030	8.1	100.0	

註: 98년도 결산시 주식 및 주식형신탁 시가평가 시행
 資料: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1999.

〈表 3-24〉 金融資産 投資機關別 保有現況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융상품명	금 액	운용수익률	구성비
은 행	정기예금 등	461,501	10.7	18.6
투신 및 증권사	공사채 등	615,966	8.7	24.8
종 금 사	단기자금	17,660	15.1	0.7
채 권 등	회사채 등	824,903	3.1	33.2
기 타	공공자금	565,000	13.0	22.7
계		2,485,030	8.1	100.0

註: 채권등에는 회사채, 전환사채, 주식, 특수채 등이 포함됨.
 資料: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3. 個人年金 業務프로세스 分析

個人年金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銀行과 保險會社로 구분된

다. 금융기관의 경우 개인연금의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나 홍보활동은 없으며 고객이 은행창구를 통하여 가입하게 되며 가입과 동시에 전산에 입력되어 상품별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가입후 고객은 불입금납부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

반면에 보험회사의 경우 保險募集人들이 적극적인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개인연금에 가입이 되면 전산에 입력되어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契約解止를 하지 않는 한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어진다.

IV. 客觀的 指標에 의한 效率性 評價體系

公的年金 또는 社會保險의 管理運營 效率性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비를 관리운영체계에 부하되는 업무량 및 제도의 규모를 나타내는 代變數, 즉 운영자산규모, 징수액, 급여액, 가입자 및 수급자수 등을 이용하여 標準化(normalization)한 후, 이를 객관적 지표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運營 資產規模를 기준으로 표준화할 경우, 특수지역연금과 같이 운영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제도는 관리운영비용지표가 過大評價될 위험이 있다. 둘째, 관리운영비의 國際比較에서, 일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고소득 국가의 관리운영이 비용효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셋째, 制度別로 보험료 징수, 급여, 자격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 및 표준화변수한 단위당 실질적으로 부하되는 업무의 양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지표로 비교하게 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관리운영비를 급여액으로 표준화할 경우, 年金(annuity)으로 지급하는 비중이 높은 제도가 一時金(lump-sum) 지급 비중이 높은 제도보다 관리비용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연금급여액 또는 연금수급자수로 표준화할 경우에도 제도가 성숙되어 있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수로 관리운영비를 표준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표준화변수의 선택과 관련한 왜곡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선행연구로는 김용하·석재은·윤석원(1996) 및 Mitchell(1996) 등이 있음.

1. 橫斷面 分析

가. 公的年金保險 管理效率性 指標

1) 加入者(受給者, 受給件數) 1人當 管理運營費

가입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를 經費와 人件費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2만 3천원(1인당 경비 1만 1천원, 1인당 인건비 1만 2천원), 공무원연금은 4만 7천원(1인당 경비 2만 7천원, 1인당 인건비 2만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13만 4천원(1인당 경비 9만 8천원, 1인당 인건비 3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表 4-1〉 加入者, 受給者 1人當, 受給 1件當 管理運營費

(단위: 명, 건, 천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1인당 관리운영비	23	47	134
가입자1인당 경비	11	27	98
가입자1인당 인건비	12	20	36
수급자1인당 관리운영비	765	503	4,298
수급자1인당 경비	361	292	3,146
수급자1인당 인건비	404	211	1,153
수급1건당 관리운영비	121	217	707
수급1건당 경비	57	126	517
수급1건당 인건비	64	91	190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각 공단 내부자료

수급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은 76만 5천원(1인당 경비 36만 1천원, 1인당 인건비 40만 4천원), 공무원연금은 50만 3천원(1인당 경비 29만 2천원, 1인당 인건비 21만 1천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430만원(1인당 경비 310만원, 1인당 인건비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 1건당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2만원(1건당 경비 6만원, 1건당 인건비 6만원), 공무원연금은 22만원(1건당 경비 13만원, 1건당 인건비 9만원), 그리고 사학연금은 71만원(1건당 경비 52만원, 1건당 인건비 19만원)으로 나타났다.

2) 職員 1人當 生産性: 加入者數(受給者數, 受給件數)/職員數

직원 1인당 生産性은 직원 1인이 담당하는 가입자, 수급자, 수급건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원 1인당 가입자수는 국민연금은 1,653명, 공무원연금은 1,828명, 사학연금은 676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1인당 연금수급자수는 국민연금이 50명, 공무원연금이 171명 그리고 사학연금이 2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1인당 수급건수는 국민연금이 317건(연금수급건수 50건, 일시금수급건수 267건), 공무원연금이 396건(연금수급건수 171건, 일시금수급건수 225건) 그리고 사학연금이 128건(연금수급건수 21건, 일시금수급건수 107건)으로 나타났다.

〈表 4-2〉 職員 1人當 受給者數, 受給件數

(단위: 명,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직원1인당 가입자수	1,653	1,828	676
직원1인당 연금수급자수	50	171	21
직원1인당 수급건수	317	396	128
직원1인당 연금수급건수	50	171	21
직원1인당 일시금수급건수	267	225	107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각 공단 내부자료

3) 給與再審 件數

給與再審 件數는 급여지급 서비스의 질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성의 지표도 될 수 있다. 급여재심의 건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급여재심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07건, 공무원연금은 267건, 그리고 사학연금은 437건으로 사학연금이 급여재심건수가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 給與再審 件數

(단위: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급여재심 건수	107	267	437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각 공단 내부자료

나. 個人年金保險의 管理效率性 指標

個人年金信託에 관한 사업비는 1998년 현재 7조 587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개인연금신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전신탁을 관리하는 任職員들이 개인연금신탁을 함께 관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임직원 수는 75,667명으로 조사되었다.

은행과 달리 생명보험사는 設計士 등의 募集人을 통해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집인이 '98년 현재 246,193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는 4조 964억

〈表 4-4〉 銀行圈의 個人年金信託 運營現況

(단위: 억원, 천건, 명)

구 분	사업비			책임 준비금	계약건수	직원수		
	인건비	경비	계			임직원	모집인	계
은행	55,960	19,913	75,873	50,240	1,501	75,667	-	75,667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1998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비 및 모집인은 단순히 개인연금보험만을 취급하는 인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개인연금보험을 많은 보험상품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4-5〉 生命保險社의 個人年金保險 運營現況

(단위: 억원, 천건, 명)

	사업비			책임 준비금	계약건수	직원수		
	인건비	경비	계			임직원	모집인	계
생명보험사	10,367	38,897	49,064	67,095	1,896	38,726	246,193	284,919

資料: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1998.

은행의 事業費와 비교해 보면 은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로 7조 5873 억원을 지출하여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2조 6809억원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職員數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사는 모집인의 존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약 3.7배가 많은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橫斷面·時系列資料의 統合 分析

1989년부터 1998년 기간 중 연도별 공적연금의 제도별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投入·產出量을 나타낼 수 있는 橫斷面 및 時系列 資料를 이용하여 pooling 回歸分析을 시도하였다.

그룹·시간의 固定效果 分析模型(Two Factor Fixed Effects Models)을 이용하여 관리운영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規模의 經濟性, 制度別 固定效果(fixed effect) 및 제도별 成熟度가 관리운영비용 및 효율성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제도별효과와 시간효과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설명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確率效果(random effect) 모형 분석을 통해서 개별설명변수의 관리운영비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가. 資料 및 模型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등 우리 나라 3개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수, 적립금액, 수급자수, 수급건수, 심의건수, 급여비 등 투입·산출량을 나타내는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代數線形函數(log linear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3개 공적연금공단의 통계연보, 예·결산자료, 내부자료 등에서 구득한 연간 관리운영비, 급여비 등의 횡단면 자료를 1989~1998년 기간 중 연도별 자료를 pooling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 가능한 연간자료의 축적이 10년여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회귀분석을 시도할 경우, 自由度(degrees of freedom)의 제약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공

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횡단면·시계열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pooling 回歸分析(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pooling regression)을 시도하였다. 물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1988년 이전의 자료求得이 가능하나 균형패널데이터(balanced panel data)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자료 구득이 가능한 기간에 맞추어 분석기간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의 추정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ln Y_{it} = \alpha_0 + \alpha_i + \gamma_t + \beta' \ln X_{it} + \varepsilon_{it}$$

Y_{it} : 행정관리비용

X_{it} : 제도 가입자수, 수급자수, 수급건수, 보험료, 급여비, 제도적용 사업장수, 지역가입자수, 기금적립금규모, 종사직원수 등

α_i : 제도별 비용효과

γ_t : 시간경과에 따른 비용효과

위의 추정구조식에 의한 제도별 효과와 기간별 효과의 추정이 가능하다. 제도별 효과와 기간별 효과의 추정은 그룹 假變數(group dummy variable)와 시간 假變數(time dummy variable)를 추정구조식에 포함함으로써 가능하다.

確率效果 모형은 패널자료의 횡단면 자료 부분의 관측치가 아주 클 경우 고정효과 모형보다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제도별 효과와 기간별 효과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로 인해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의 설명능력이 상당부분 잠식되는데 반해 확률효과 모형은 제도별 효과와 기간별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보다 더 적절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확률효과는 교란항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즉, 교란항과 설명변수간의 直交(orthogonality)관계를 가정함으로써 교란항과 설명변수가 선형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보다 유의한 모형을 선택하는 데는 Hausman 통계량이 이용된다. 개별 교란항과 설명변수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함으로써 유의성 검정을 할 수 있다.

나. 分析結果

制度別 規模差異가 관리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 추정구조식에 의한 회귀분석에서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標準化한 관리운영비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추정된 종속변수로는 관리운영비, 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보험료와 급여비의 합 대비 관리운영비, 가입자수와 수급자수의 합 대비 관리운영비, 가입자수 대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수급자수 대비 관리운영비 등 총 7개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각각 9가지 조합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총 63개의 회귀식을 추정해 보았다. 이들 추정식 중에서 有意性檢定 統計量과 適合度檢定 統計量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추정식을 각 종속변수별로 3개씩 추출해서 정리하였다.

1) 推定式 I

먼저 표준화하지 않은 관리운영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회귀식은 아래의 <表 4-6> 과 같다. 추정식1을 살펴보면 설명변수별 유의성 검정 통계량에 의하면 연금수급건수, 급여비, 기금적립금, 직원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 전체의 적합도검정 통계량은

0.9930으로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도별 효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1.65, 공무원연금은 0.85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요인을 통제할 때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관리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개 공적연금제도 모두 관리운영비가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추정식2는 연금급여 지급방식의 차이가 관리운영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금수급건수와 일시금수급건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연금 수급에 따른 관리비용이 일시금수급에 드는 관리비용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하의 다른 추정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변수들의 유의성 검정통계량을 보면 연금수급건수와 일시금수급건수가 모두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 전체의 설명능력도 적합도 검정 통계량이 0.9687로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효과를 보면, 국민연금제도의 회귀계수 값이 여타 제도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비해 연금수급건수 대비 일시금수급건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⁶⁾ 시간효과를 보면 추정식1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값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식3은 연금수급건수 대신 전체수급건수를, 급여비 대신 연금급여비를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명변수의 설명능력은 직원수가 5% 오차범위 내에서 유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타 설명변수의 설명능력은 유의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제도별효과

6) 연금수급건수 대비 일시금수급건수는 '89년 국민연금 32, 공무원연금 2.5, 사학연금 16.6, '98년 국민연금 5.39, 공무원연금 1.31, 사학연금 5.08이다.(〈附表 9〉 참고)

〈表 4-6〉 推定式 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3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1.0919	1.7070			0.5294	0.6390
사업장가입자수						
지역가입자수						
수급자수	-0.1716	-0.7670			-0.1884	-0.7320
수급건수					0.3490	1.2030
연금수급건수	-0.9530	-2.3420**	0.6926	2.9180*		
일시금수급건수			-0.5083	-2.3650**		
보험료	0.3235	1.3180			0.1986	0.7290
급여비	0.2881	1.7470***				
연금급여비					-0.6647	-1.3400
일시금급여비						
기금적립금	0.8360	2.2560**			0.9374	1.6760
채심건수	-0.0028	-0.0190			-0.1725	-0.9110
직원수	0.3322	1.7840***			0.4491	2.1370**
사업장수						
상수	-20.3714	-1.9950	14.6229	12.0740	-7.5179	-0.7440
R-square	0.9930		0.9687		0.9908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1.6535	-1.1402	0.9016	6.0234	-2.8789	-1.6074
공무원연금	0.8510	2.8902	-0.4769	-2.1768	1.5381	1.4990
사학연금	0.8025	0.5194	-0.4247	-4.4555	1.3408	0.8096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5025	-1.8243	-0.2904	-1.3005	-0.9875	-1.7937
1990	-0.4085	-1.9483	-0.2826	-1.5739	-0.6858	-1.8806
1991	-0.3285	-1.8465	-0.2535	-1.7118	-0.4869	-1.8838
1992	-0.2067	-1.6256	-0.1373	-1.0704	-0.2579	-1.6001
1993	-0.0929	-0.9297	-0.1389	-1.1877	-0.0718	-0.6675
1994	0.0246	0.2346	-0.0492	-0.4043	0.0884	0.7036
1995	0.1657	0.9622	0.1478	1.1027	0.3086	1.1397
1996	0.2745	1.6050	0.1825	1.1443	0.5190	1.8008
1997	0.3932	2.1060	0.2760	1.5190	0.6312	1.9154
1998	0.6810	3.0803	0.5456	3.2194	0.9425	2.6856

<表 4-6> 계속

<확률효과>						
설명변수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0.8669	2.0230**			0.9961	1.6040
사업장가입자수						
지역가입자수						
수급자수	-0.2090	-0.9880			-0.3689	-1.5890
수급건수					-0.0047	-0.0190
연금수급건수	-1.0558	-2.7020*	-0.5902	-3.0600*		
일시금수급건수			0.8418	4.3150*		
보험료	0.6113	3.0030*			0.2424	0.9620
급여비	0.3533	2.2270**				
연금급여비					0.0866	0.2390
일시금급여비						
기금적립금	0.8547	2.7070*			0.2664	0.6230
재심건수	0.0054	0.0380			-0.0417	-0.2390
직원수	0.3311	1.8480***			0.4282	2.0840**
사업장수						
상수	-23.6425	-2.7880	13.5571	12.2420	-8.2183	-1.0330
R-square	0.9480		0.8682		0.9594	
하우스만 통계량	9.23		3.88		6.54	

註: * |p| < 0.01, ** |p| < 0.5, *** |p| < 0.1

와 시간효과는 추정식 I 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98년도의 시간효과가 타 연도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확대적용이 당초 1998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직원수가 증가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정식1의 경우 하우스만 통계량이 9.23으로 자유도 8에서의 임계치 15.51(5%), 20.09(1%)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다. 즉, 교란항과 설명변수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고정효과보다 확률효과가 보다 유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확률효과와 고정효과와 설명변수들보다 종속 변수에 대한 개별 설명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확률효과 모

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고정효과 추정결과에 비해 유의성검정 통계량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적합도검정 통계량은 일정정도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는 설명변수의 수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推定式 II

이번에는 종속변수를 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로 표준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를 살펴본다. 역시 총 9개의 회귀식을 추정·분석한 결과 유의성과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정결과는 〈表 4-7〉에 정리해 보았다.

먼저 추정식4를 보면 보험료와 직원수가 각각 0.01, 0.0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 전체의 종속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는 적합도 검정 통계량이 0.9758로 나타났다. 계수값들을 살펴보면 기금적립금, 가입자수, 직원수 등의 순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도별 효과는 국민연금만이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효과를 살펴보면 이상의 추정식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감에 따라 회귀계수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93년, '95년, '98년도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아 역시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의 확대시행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식5는 수급건수 대신 연금수급건수를, 연금급여비 대신 전체급여비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해 본 결과이다. 여기서도 직원수(0.01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외의 설명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은 추정식4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적합도검정 통계량은

0.9719이다. 제도별 효과 및 시간효과도 추정식4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정식6은 사업장가입자수, 지역가입자수, 사업장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수는 0.1, 지역가입자수는 0.5 그리고 사업장수는 0.01의 신뢰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表 4-7> 推定式 II(從屬變數: 管理運營費/保險料)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4		추정식5		추정식6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수	0.5296	0.6400	0.9668	0.9820	2.2209	1.9580***
지역가입자수					0.1655	2.3270**
수급자수						
수급건수	-0.1884	-0.7320	-0.3394	-1.3030		
연금수급건수						
일시금수급건수	0.3490	1.2030				
보험료						
급여비	-0.8014	-2.9420*	-0.8348	-2.8060**		
연금급여비						
일시금급여비	-0.6647	-1.3400				
기금적립금						
기금적립금	0.9374	1.6760	0.4127	0.9400		
재심건수	-0.1725	-0.9110	-0.1280	-0.4590		
직원수						
직원수	0.4491	2.1360**	0.4498	2.0020***		
사업장수						
사업장수	309917	0.3950	3.1907	0.2820	-1.6208	-3.2150*
상수					-8.7423	-0.6050
R-square	0.9758		0.9719		0.9081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2.8792	-1.6075	-2.3966	-1.4980	-1.1100	-0.6546
공무원연금	1.5381	1.4989	0.7662	1.1130	-1.8451	4.1976
사학연금	1.3411	0.8097	1.6304	1.0749	2.9551	1.7636

〈表 4-7〉 계속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9874	-1.7936	-0.5619	-1.8775	0.2238	1.3068
1990	-0.6858	-1.8804	-0.4258	-1.8537	0.1308	0.8979
1991	-0.4868	-1.8837	-0.3317	-1.7247	0.0676	0.5531
1992	-0.2579	-1.6001	-0.1963	-1.2327	0.1269	1.2016
1993	-0.0717	-0.6674	-0.0886	-0.8408	-0.1052	1.0236
1994	0.0884	0.7036	0.0285	0.2522	-0.0730	-0.6794
1995	0.3086	1.1395	0.1193	0.6637	-0.1313	1.0787
1996	0.5190	1.8008	0.3260	1.6640	-0.1931	1.4051
1997	0.6312	1.9153	0.4140	1.8137	-0.0889	-0.6033
1998	0.9425	2.6854	0.7163	2.8320	0.0424	0.3630

註: * $|p| < 0.01$, ** $|p| < 0.05$, *** $|p| < 0.1$

3) 推定式 III

이번에는 급여비로 표준화한 관리운영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분석해 보았다.

추정식7은 가입자수, 수급자수, 연금수급건수, 보험료, 급여비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개별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은 연금수급건수, 급여비, 기금적립금, 직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적합도 검정 통계량은 0.9969으로써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가입자수, 기금적립금, 직원수, 보험료 등의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도별 효과와 시간 효과는 앞의 추정식들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추정식8은 추정식7의 설명변수 중 급여비를 일시금급여비로 대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개별 설명변수들의 설명능력을 살펴보면 가입자수, 일시금급여비, 직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적합도 검정 통계량은 0.9952로써 설명변수 전체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능력은 양호하다. 제도별 효과로는 사학연금만이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효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추정식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귀계수값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국민연금의 적용확대 시기인 '95년, '98년에 회귀계수값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추정식9는 연금수급건수와 일시금수급건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식2 즉, 관리운영비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개별 설명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능력은 연금수급건수와 일시금수급건수 모두 0.01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효과도 추정식2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表 4-8〉 推定式 III(從屬變數: 管理運營費/給與費)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7		추정식8		추정식9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수	1.0919	1.7070	1.4344	1.7310***		
지역가입자수						
수급자수						
수급건수	-0.1716	-0.7670	-0.3474	-1.3210		
연금수급건수					0.6926	2.9180*
일시금수급건수	-0.9530	-2.3420**	0.0192	0.0370	-1.5083	-7.0160*
보험료						
급여비	0.3235	1.3180	0.1386	0.4720		
연금급여비	-0.7119	-4.3160*				
일시금급여비			-0.8942	-2.6530*		
기금적립금	0.8360	2.2560**	0.1435	0.3690		
재심건수	-0.0028	-0.0190	-0.0082	-0.0350		
직원수	0.3322	1.7840***	0.4821	2.0620***		
사업장수						
상수	-8.8585	-0.8670	0.4079	0.0370	26.1358	21.5800
R-square	0.9969		0.9952		0.9863	

〈表 4-8〉 계속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1.6535	-1.1402	-2.3824	-1.3392	0.9016	6.0234
공무원연금	0.8510	2.8902	0.3466	0.7042	-0.4769	-2.1769
사학연금	0.8025	0.5194	2.0368	1.2753	-0.4247	-4.4554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5025	-1.8244	-0.4008	-1.4560	-0.2904	-1.3005
1990	-0.4085	-1.9484	-0.3194	-1.4980	-0.2826	-1.5739
1991	-0.3285	-1.8466	-0.2604	-1.4268	-0.2535	-1.7118
1992	-0.2067	-1.6257	-0.1349	-1.0075	-0.1373	-1.0703
1993	-0.0929	-0.9298	-0.0847	-0.8125	-0.1389	-1.1877
1994	0.0246	0.2346	0.0200	0.1766	-0.0492	-0.4043
1995	0.1657	0.9633	0.0656	0.3835	0.1478	1.1027
1996	0.2745	1.6050	0.2197	1.2619	0.1825	1.1443
1997	0.3932	2.1061	0.2727	1.4367	0.2760	1.5190
1998	0.6810	3.0803	0.6223	2.7146	0.5456	3.2194

註: * $|p| < 0.01$, ** $|p| < 0.5$, *** $|p| < 0.1$

4) 推定式 IV

이번에는 보험료와 급여비의 합으로 표준화한 관리운영비를 종속변수로 pooling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表 4-9〉와 같다. 먼저 추정식10은 추정식7과 동일한 설명변수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개별 설명변수들의 설명력은 추정식7보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와 직원수가 각각 0.05와 0.01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검정 통계량은 0.9776으로 추정식7보다 다소 낮다. 제도별 효과도 역시 추정식7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간효과 또한 앞의 추정식과 비슷한 양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식11은 추정식10의 설명변수중 급여비를 연금급여비로 대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추정식에서는 보험료와 연금급여비, 기금적립

금, 직원수의 설명력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검정 통계량은 0.9776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별 효과와 시간효과 역시 앞의 추정식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

추정식12는 추정식6과 동일한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적합도검정 통계량이 0.9134로써 다른 추정식에 비해 비교적 낮다. 개별설명변수의 설명능력은 지역가입자수가 0.01, 사업장수가 0.5의 신뢰수준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효과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시간효과는 다른 추정식들과는 달리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表 4-9〉 推定式 IV(從屬變數: 管理運營費/保險料+給與費)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10		추정식11		추정식12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수	0.5805	0.6550	0.2483	0.3000	2.2964	2.0040***
지역가입자수					0.1588	2.2110**
수급자수	-0.3201	-1.2230	-0.1993	-0.7750		
수급건수	0.5107	0.9230	0.3460	1.1920		
연금수급건수						
일시금수급건수						
보험료						
급여비	-0.7732	-2.6460**	-0.7141	-2.6210**		
연금급여비	-0.4116	-1.0460	-0.8690	-1.7510***		
일시금급여비						
기금적립금	0.6590	1.5420	1.2025	2.1500**		
재심건수	-0.1678	-0.6760	-0.1471	-0.7770		
직원수	0.4139	1.7940***	0.3825	1.8190***		
사업장수					-1.6352	-3.2100*
상수	-0.4308	-0.0380	-0.7485	-0.0740	-14.7013	-1.0070
R-square	0.9953		0.9776		0.9134	

〈表 4-9〉 계속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2.1808	-1.2766	-2.3722	-1.4313	-0.8210	-0.4699
공무원연금	0.7682	1.3164	1.5638	1.6469	-2.1340	-4.7118
사학연금	1.4127	0.9316	0.8084	0.5275	2.9550	1.7116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5279	-1.8942	-1.0465	-2.0542	0.3218	1.8238
1990	-0.3898	-1.8166	-0.6999	-2.0740	0.2024	1.3488
1991	-0.2888	-1.6041	-0.4770	-1.9944	0.1180	0.9368
1992	-0.1685	-1.2515	-0.2391	-1.6026	0.1545	1.4203
1993	-0.0641	-0.6396	-0.0493	-0.4958	-0.0796	-0.7519
1994	-0.0209	-0.1947	0.0616	0.5299	-0.1186	-1.0707
1995	0.0951	0.5565	0.3062	1.2217	-0.1933	-1.5409
1996	0.3482	1.9748	0.5841	2.1900	-0.1858	-1.3124
1997	0.4065	2.1201	0.6909	2.2657	-0.1066	-0.7019
1998	0.6102	2.6406	0.8690	2.6757	-0.1129	-0.9379

註: * $|p| < 0.01$, ** $|p| < 0.5$, *** $|p| < 0.1$

5) 推定式 V

지금까지는 관리운영비를 보험료, 급여비 등으로 표준화하여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하에서는 가입자수, 수급자수 그리고 가입자수와 수급자수의 합으로 관리운영비를 표준화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입자수와 수급자수의 합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규모를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한 추정식 중 유의성과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정식 세 개를 선정하여 〈表 4-10〉의 추정식13~15로 정리하였다.

먼저 추정식13은 가입자수, 수급자수, 연금수급건수, 보험료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개별 설명변수들의 설명능력은 연금수급건수, 기금적립금, 직원수가 각각 0.05, 0.05, 0.01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가입자수와 재심건수의 영

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은 0.9964로써 적합도는 양호하다. 제도별 효과는 이 추정식에서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정식14는 가입자수, 보험료, 재심건수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개별 설명변수의 설명능력은 직원수가 0.01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여타 설명변수의 개별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검정 통계량은 0.9928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개별적 설명능력은 떨어지는데 반해 설명변수 전체의 설명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별 효과는 사학연금이 가장 큰 정의 효과를 갖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그리 높지 않다. 역시 국민연금은 부의 효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효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정식15는 연금수급건수와 일시금수급건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연금수급건수와 일시금수급건수가 각각 갖는 설명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적합도검정 통계량도 0.9872로써 설명변수 전체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도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제도별 효과를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만이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추정식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4-10〉 推定式 V (從屬變數: 管理運營費/加入者數+受給者數)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13		추정식14		추정식15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수	0.1132	0.1760	0.1634	0.2360		
지역가입자수						
수급자수						
수급건수	-0.1853	-0.8250				
연금수급건수					0.4868	2.2730**
일시금수급건수	-0.9358	-2.2900**			-0.3887	-2.0030**
보험료						*
급여비	0.2963	1.2010	-0.0632	-0.2410		
연금급여비	0.2769	1.6710				
일시금급여비						
기금적립금	0.8569	2.3020**	-0.0284	-0.1010		
재심건수	0.0065	0.0450	-0.0478	-0.2670		
직원수	0.3258	1.7420***	0.6086	3.0820*		
사업장수						
상수	-20.4018	-1.9890	-0.8573	-0.1070	2.1471	1.9640
R-square	0.9964		0.9928		0.9872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1.6551	-1.1613	-2.1404	-1.6137	-0.9832	-7.1610
공무원연금	0.8392	2.9002	0.3198	1.8717	-0.2315	-1.1519
사학연금	0.8158	0.5373	1.8206	1.3484	1.2147	13.8934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5002	-1.8477	-0.5530	-2.3311	-0.3158	-1.5418
1990	-0.4059	-1.9699	-0.4268	-2.1575	-0.2788	-1.6924
1991	-0.3247	-1.8573	-0.3428	-1.9952	-0.2368	-1.7428
1992	-0.2007	-1.6062	-0.1721	-1.3618	-0.1212	-1.0296
1993	-0.0876	-0.8930	-0.0912	-0.8911	-0.0972	-0.9065
1994	0.0260	0.2522	0.0301	0.2829	-0.0069	-0.0620
1995	0.1658	0.9799	0.1861	1.4456	0.1138	0.9254
1996	0.2715	1.6157	0.3283	1.9776	0.1499	1.0244
1997	0.3853	2.0999	0.3744	2.0444	0.2502	1.5014
1998	0.6704	3.0855	0.6670	3.1991	0.5427	3.4912

註: * |p| < 0.01, ** |p| < 0.5, *** |p| < 0.1

6) 推定式 VI

이번에는 종속변수를 가입자수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규모로 하여 추정된 방정식 중 설명변수의 유의성과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가지 추정식을 〈表 4-11〉에 정리하였다.

먼저 추정식16은 가입자수, 수급자수, 수급건수, 보험료, 연금급여비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식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수가 많은 탓에 각 설명변수들의 유의성은 떨어지나 설명변수 전체의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적합도 검정 통계량은 0.9955로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직원수만이 0.0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효과는 국민연금이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효과를 살펴보면 역시 시간경과에 따라 점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998년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추정식17은 일시금수급건수와 연금수급건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연금수급건수는 0.0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일시금수급건수는 0.01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도 0.9875로써 적합도도 비교적 양호하다. 제도별효과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효과는 여타의 추정식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시 1998년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추정식18은 가입자수, 수급자수, 연금수급건수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이다.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연금수급건수는 0.05, 급여비는 0.1, 기금적립금은 0.05, 직원수는 0.1의 신뢰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검정 통계량도 0.9965로 설명변수전체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4-11> 推定式 VI (從屬變數: 管理運營費/加入者數)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16		추정식17		추정식18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0.0919	0.1440
사업장가입자수	-0.4706	-0.5680				
지역가입자수						
수급자수					-0.1716	-0.7670
수급건수	-0.1884	-0.7320				
연금수급건수	0.3490	1.2030				
일시금수급건수			0.4602	2.1610**	-0.9530	-2.3420**
보험료			-0.3682	-1.9090***		
급여비	0.1986	0.7290			0.3235	1.3180
연금급여비					0.2881	1.7470***
일시금급여비	-0.6647	-1.3400				
기금적립금	0.9374	1.6760			0.8360	2.2560**
채심건수	-0.1725	-0.9110			-0.0028	-0.0190
직원수	0.4491	2.1370			0.3322	1.7840***
사업장수			2.2463	2.0670		
상수	-7.5179	-0.7440			-20.3714	-1.9950
R-square	0.9955		0.9875		0.9965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2.8789	-1.6074	-1.0128	-7.1532	-1.6535	-1.1402
공무원연금	1.5382	1.4990	-0.1854	-0.8945	0.8510	2.8902
사학연금	1.3408	0.8096	1.1982	13.2895	0.8025	0.5194

〈表 4-11〉 계속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9875	-1.7937	-0.3478	-1.6467	-0.5025	-1.8243
1990	-0.6858	-1.8806	-0.3046	-1.7932	-0.4085	-1.9483
1991	-0.4869	-1.8838	-0.2562	-1.8285	-0.3285	-1.8465
1992	-0.2579	-1.6001	-0.1345	-1.1087	-0.2067	-1.6256
1993	-0.0718	-0.6675	-0.1006	-0.9091	-0.0929	-0.9297
1994	0.0884	0.7036	-0.0031	-0.0273	0.0246	0.2346
1995	0.3086	1.1397	0.1209	0.9535	0.1657	0.9622
1996	0.5190	1.8008	0.1694	1.1228	0.2745	1.6050
1997	0.6312	1.9155	0.2784	1.1601	0.3932	2.1060
1998	0.9425	2.6856	0.5781	3.6057	0.6810	3.0802

註: * |p| < 0.01, ** |p| < 0.5, *** |p| < 0.1

7) 推定式 VII

수급자수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상대적 규모를 종속변수로 한 추정식중 3개의 추정식을 선정하여 〈表 4-12〉에 정리하였다.

먼저 추정식19는 가입자수, 수급자수, 수급건수, 보험료 등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여타 추정식과 마찬가지로 설명변수 전체의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적합도 검정통계량이 0.9634로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식20은 추정식19의 수급건수를 연금수급건수로 대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식19와 달리 이 방정식에서는 연금수급건수, 급여비, 기금적립금, 직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검정 통계량도 0.9962로 양호하다.

추정식21은 가입자수, 보험료, 기금적립금, 재심건수, 직원수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포함된 설명변수 중 기금적립금과 직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검정 통계량도 0.9634로 설명변수 전체의 설명능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직원수, 가입자수의 순으로 수급자대비 관리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별 효과와 시간효과는 타 추정식들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表 4-12〉 推定式 VII(從屬變數: 管理運營費/受給者數)

구분 설명변수	추정식19		추정식20		추정식21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가입자수	1.1277	1.2740	1.0919	1.7070	1.0985	0.7350
사업장가입자수						
지역가입자수						
수급자수	-1.3468	-5.1490*	-1.1716	-5.2400*		
수급건수	0.1404	0.2540				
연금수급건수			-0.9530	-2.3420**		
일시금수급건수						
보험료	0.1412	0.4840	0.3235	1.3180	-0.4865	-0.8610
급여비	-0.0558	-0.1420	0.2881	1.7470***		
연금급여비						
일시금급여비						
기금적립금	0.3588	0.8400	0.8360	2.2560**	-1.1835	-1.9480***
재심건수	-0.0768	-0.3100	-0.0028	-0.0190	-0.1126	-0.2920
직원수	0.4506	1.9540***	0.3322	1.7840***	1.1732	2.7530**
사업장수						
상수	-9.1821	-0.8190	-20.3714	-1.9950	21.4635	1.2400
R-square	0.9946		0.9962		0.9634	
제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국민연금	-2.3786	-1.3193	-1.6535	-1.1402	-2.3200	-0.8168
공무원연금	0.6512	1.0574	0.8510	2.8902	-0.3090	-0.8445
사학연금	1.7274	1.0794	0.8025	0.5194	2.6290	0.9093

〈表 4-12〉 계속

기간별효과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1989	-0.5395	-1.8346	-0.5025	-1.8244	-0.5612	-1.1048
1990	-0.4097	-1.8091	-0.4085	-1.9484	-0.4762	-1.1241
1991	-0.3185	-1.6764	-0.3285	-1.8466	-0.4172	-1.1339
1992	-0.1743	-1.2264	-0.2067	-1.6257	-0.2099	-0.7756
1993	-0.0826	-0.7813	-0.0929	-0.9298	-0.1353	-0.6172
1994	0.0342	0.3012	0.0246	0.2346	-0.0072	-0.0313
1995	0.1110	0.6151	0.1657	0.9622	0.3759	1.3634
1996	0.3059	1.6435	0.2745	1.6050	0.4115	1.1576
1997	0.3805	1.8805	0.3932	2.1060	0.3874	0.9880
1998	0.6932	2.8424	0.6810	3.0803	0.6321	1.4157

註: * |p| < 0.01, ** |p| < 0.5, *** |p| < 0.1

다. 橫斷面·時系列 資料 統合分析의 含意

3개 공적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관련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통합자료는 制度·時間別 固定效果 分析模型(Two Factor Fixed Effects Model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관리운영비와 보험료, 급여비, 가입자, 수급자수를 이용한 표준화한 관리운영비가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制度·時間別 固定效果가 추정식에 설명변수로 포함됨에 따라 여타 설명변수인 보험료, 급여비, 가입자·수급자수의 통계적인 설명력의 유의성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추정식에서 통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관리운영비의 표준화변수로는 가입자수, 가입자와 수급자수의 합 또는 보험료와 급여비의 합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별 효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순으로 추정계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운영상 규모의 경제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추정식에서 시간효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은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이 5~9인 사업장, 농어민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규로 제도에 편입된 가입자의 일인당 소요되는 자격관리, 부과·징수비용이 기존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V. 主觀的 指標: 顧客滿足度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비하여, 主觀的 指標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사람이 느끼는 主觀的 滿足度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公的年金과 個人年金 이용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顧客滿足度의 概念

顧客滿足度가 관리운영에서 중요한 고려범주로 인정되게 된 것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관리운영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리운영이 공급자·제공자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관리운영은 需要者 중심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산력 중심에서 顧客滿足 중심으로, 양 (Quantity)중심에서 質 (Quality)중심으로, 기능조직 중심에서 節次組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박중훈·김관석, 1996; 게리 헤일, 톰 파커, 릭 테이트 저, 1996; 윤상근·구자룡·최천규, 1996). 따라서 이러한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리운영의 이념과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객만족⁷⁾은 고객의 事前期待와 實際滿足度간의 차이에서 오는 느낌의 정도를 의미한다. 고객의 영어표현은 ‘customer’이지만, 이 구체적인 의미는 ‘end-user’,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

7) 고객만족의 영어 표현은 Customer Satisfaction (CS)이다.

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에서 end-user란 어떤 특정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기대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므로 end-user가 顧客満足度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박중훈·김판석, 1996; 武田哲男, 1992; 윤상근·구자룡·최천규, 1996).

顧客志向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고객만족이라는 의미를 서비스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多様化 (variety), 即時化 (instant), 安定化 (peace)라는 VIP식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실제로 고객이 VIP처럼 대접받아야 함을 의미한다(정진호외, 1996: 62).

즉, 첫째, 서비스의 多様化란 서비스 제공의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으로서 고객이 불편해하지 않는 형식과 절차 및 시·공간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即時化는 마치 경영분야의 JIT(just-in-time)나 QRP(Quick Response Program)처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기비용을 절감 하자는 것이다.

셋째, 安定化는 고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 및 신뢰감을 높이자는 의미로서 고객들이 항상 안정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만족의 接點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윤상근·구자룡·최천규, 1996: 21~22). 첫째, 사람에 의한 接點으로, 고객과 접하는 일선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는 크게 좌우된다. 고객접점 현장에서 만족도는 고객과 직원들의 판단력과 행동양상에 따라 많이 달라지므로 고객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적인 정신이 몸에 배어야 하며,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고객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다.

둘째, 施設과 設備에 의한 接點으로, 이는 고객이 직접 보고, 접촉

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무실, 건물, 각종 시설 (휴게실이나 안내소 등 포함) 등과 관련된 체험 등이다.

셋째, 情報에 의한 接點으로, 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전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홍보·광고매체, 팜플렛, 안내판, 출판물 등의 정보요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볼 때, 顧客志向的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객만족을 좌우하는 要因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과 고객만족 實態를 직접 파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顧客滿足度를 평가지표로 개발하기 위하여 顧客滿足度 조사에 포함할 서비스 質의 다양한 次元들 (quality dimensions)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각 서비스 질의 차원마다 몇 가지의 關聯 質問들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등을 다룰 것이다.

2. 顧客滿足度에 대한 既存研究 檢討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맨(Tom Peters & Robert Waterman),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 등 많은 경영학자들은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 가까이 가기를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기관에도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行政部門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고객만족이 행정관리전략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미국의 경우 1987년 상무장관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ge)를 기념하여 만든 국가고객만족관리 대상(MBNQA: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의 제정이 시초였다. 最近에는 美國을 비롯하여 日本, 英國 등 여러 나라에서 고객만족을 행정관리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행정기관에 대한 顧客滿足度 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김판석, 박중훈, 1996).

오스본과 게이블러(David Osborne & Ted Gaebler)는 현재의 정부를 일은 더 잘하되 비용은 덜 쓰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를 기업 조직처럼 운영하고 국민을 소비자로 이해함으로써 공무원이 지닌 나태함을 기업이 정신의 도입으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데이비드 오스본, 테드 게이블러 저, 1994) 이와 같은 개혁정신을 수용한 클린턴 정부는 1993년 출범직후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고어 부통령을 행정개혁 기관인 국가성과심의회 (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국가행정평가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온 고어보고서(1993)에서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관료체제를 과감히 재구축하고 모든 업무수행절차도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384가지 개혁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뒤이어 고객서비스 기준제정 (Setting Customer Service Standards) 이라는 제목의 미국행정부 대통령령 12862호가 발표되었는데, 거기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는 고객지향적이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박중훈·김판석, 1996).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행정효율화의 흐름속에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특히 고객지향적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안팎에서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방안 연구와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다(박명호, 1994;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96; 이종범, 1996; 박세정·박통희·유홍림, 1996; 박중훈·김판석, 1996). 특히 박중훈·김판석(1996)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

8)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미국정부의 행정개혁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불필요한 레드테이프 감축 (Cutting Red Tape), 둘째, 고객제일주의의 실현(Putting Customers First), 셋째, 공무원에게 결과를 높일 수 있는 권능부여 (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마지막으로 넷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혁 (Cutting Back to the Basics)이다.

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김진무(1998)는 박중훈·김판석(1996)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국민연금 관리공단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박중훈·김판석(1996)과 김진부(1998) 연구를 기반으로 고객만족도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3. 顧客滿足度の 評價原則

기관의 서비스의 質次元 (quality dimensions)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⁹⁾

- ①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service)
- ② 편리성(convenience)
- ③ 신속·정확성(speed and correctness)
- ④ 쾌적성(pleasantness)
- ⑤ 대응성(responsiveness)
- ⑥ 형평성(equity)
- ⑦ 환류성(feedback)

가. 接近容易性(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service)

接近容易性은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나 불편이 없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용이성, 이용용이성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제도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物理的인 부분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

9) 본 연구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개발은 박중훈·김판석(1996) 및 김진무(1998) 연구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는데 거리상으로, 분포상으로, 그리고 교통편의의 측면에서 물리적 접근에 장애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制度的인 부분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요건이 까다로워 서비스 이용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 便利性(convenience)

便利性은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예컨대, 구비서류의 간편성, 민원처리방법의 다양성 등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얼마나 간편하며, 고객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 迅速·正確性(speed and correctness)

迅速·正確性은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바가 정확히 반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예컨대,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가 얼마나 능숙하고 정확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 快適性(pleasantness)

快適性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청결성, 휴식시설 및 주차공간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는 차원이다. 고객이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건물 분위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마. 對應性(responsiveness)

對應性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예컨대, 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제기 혹은 요청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일을 처리해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바. 衡平性(equity)

衡平性은 서비스를 받는 누구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평가하는 차원이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공평한 규율에 의하여 일이 처리되고, 일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일관성이 확보되는 형평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 還流性(feedback)

還流性은 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처리과정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

4. 顧客滿足度の 評價指標 開發

고객만족도의 평가차원에 따른 평가지표는 다음 <表 5-1> 과 같이 구성하였다.

〈表 5-1〉 顧客満足度 評價指標 構成

차원	세부질문항목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 절차에 대한 안내 ②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③ 해당사무실 혹은 창구에 대한 안내 ④ 민원인을 대하는 담당직원의 안내태도 ⑤ 전화문의시 담당직원의 태도 ⑥ 전화문의시 담당직원과의 통화 편의성
편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비스 신청시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② 업무처리과정상 관련 창구 및 부서의 수 ③ 구비해야 할 서류의 수량 ④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횟수 ⑤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⑥ 담당직원의 민원처리 지연성
신속·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② 민원처리의 정확성 ③ 담당직원의 일처리 능숙도 ④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내 혹은 근처에 위치한 주차공간 ② 휴식공간(실외 포함) ③ 편의시설 ④ 외부와의 연락시설 ⑤ 공간의 청결도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원처리 시간통보 및 준수여부 ② 요구에 대한 대응태도 ③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 ④ 착오시 시정 혹은 해명 여부 및 신속성 ⑤ 정보의 공개 여부
형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공정성 ② 업무처리의 공정성 ③ 담당직원의 부정행위

〈表 5-1〉 계속

차원	세부질문항목
환류성	① 예상결과와 예측가능성 ② 예상결과와 실제결과와의 비교 ③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④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상대적비교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와의 비교 ② 민간기업의 서비스와의 비교 ③ 다른 유사기관과의 비교 ④ 민원인이 투자한 노력과비용에 따른 만족도

5. 顧客滿足度の 評價指標別 說問

가. 接近容易性

- ① 서비스의 절차에 대한 민원안내책자나 안내전화번호, 정보서비스 등 서비스 안내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었습니까?
- ②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신청 및 처리 절차와 내용이 쉽게 이해되었습니까?
- ③ 서비스를 받을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까?
- ④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나 문의했을 때, 담당 직원의 안내태도가 공손하고 친절하게 보였습니까?
- ⑤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 친절하게 응답하였습니까?
- ⑥ 기관에 전화하여 해당분야 담당직원을 찾아 통화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용이하였습니까?

나. 便利性

- ① 서비스를 신청할 때 사용한 서식과 신청절차는 간편하였습니까?
- ②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창구나 부서를 찾아 다녔습니까?
- ③ 서비스를 위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의 수량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④ 특정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기관을 방문한 횟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⑤ 직접 방문외에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 ⑥ 담당 직원이 점심시간중이나 퇴근시간 압박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미루거나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다. 迅速·正確性

- ① 여러분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직원들이 처음부터 신속하게 응하였습니까?
- ② 여러분 자신이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 ③ 담당 직원이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 ④ 여러분이 요구한 서비스의 전체 처리시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라. 快適性

- ① 기관내 혹은 근처에 위치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 ② 서비스를 받기위해 기다릴 수 있는 휴식공간 (실외 포함)이 있었습니까?
- ③ 자판기나 앉아서 설만한 의자 등이 있었습니까?
- ④ 공중전화 및 음료수(물) 시설은 잘 되어 있었습니까?
- ⑤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까?

마. 對應性

- ① 민원처리 규정에 명시된 시간/기일을 알려주고, 그 기간내에 요청한 서비스를 처리해 주었습니까?
- ② 여러분의 요구가 정당할 때 담당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까?
- ③ 여러분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직원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 ④ 서비스 제공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 혹은 해명을 하였습니까?
- ⑤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때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 衡平性

- ①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직원들이 자의적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 ② 서비스를 요청할 때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처리했습니까?
- ③ 민원처리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금전요구, 식사대접, 사례기대 등 부정적 사례는 없었습니까?

사. 還流性

- ① 서비스를 요청할 때 예상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까?
- ② 서비스에 대한 예상결과와 서비스를 받고 난 후의 실제결과를 비교할 때 만족하십니까?
- ③ 즉시 처리되는 민원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했을때, 담당 직원이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 ④ 요구한 민원업무가 예상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을 때 그 처리결과를 일찍 통보하여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 相對的 比較

- ①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개인연금 취급기관(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비해 어떠하였습니까?
- ②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비해 어떠하였습니까?
- ③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다른 민간기관에 비해 어떠하였습니까?
- ④ 해당 기관의 서비스가 여러분이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 어떠하였습니까?

6. 顧客滿足度 評價指標의 妥當性 檢證을 위한 調查設計

가. 調查對象

1) 母集團의 設定

본 연구에서 母集團은 국민연금관리공단(혹은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업무상의 이유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관고객과 일반고객을 포함한다. 機關顧客은 민간단체 또는 협회 등의 실무자로서 업무상 접촉(관련)이 있는 이용자이며, 一般顧客은 기관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이 개인적인 용무로 국민연금관리공단(혹은 개인연금 취급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사람을 지칭한다.

2) 標本抽出

標本抽出은 고객을 end-user의 관점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선 민원접수대장에 등재된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다. 모집단에서 體系的 標本抽出 (Systematic Sampling)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體系的 標本抽出(Systematic Sampling)은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민원접수대장이나 기관별 고객대장을 활용할 때 체계적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표본추출기법은 처음에 무작위로 출발하여 틀(frame)내에 있는 모든 k번째(kth) 대상을 추출하여 표본에 포함하는 방법임. 즉 다음 식은 표본추출간격 (sampling interval)이라는 k의 값을 의미한다.

$$k = \frac{N}{n}$$

- n: 체계적 표본수
- N: 모집단의 수
- k: 표본추출간격

체계적 표본추출방법은 하나의 체계적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며, 난수(random number)가 이끄는 대로 조작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요소들의 중복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simple random sampling)기법보다 실용적이므로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체계적 표본추출방법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매우 근접한 대안임으로 층별표본추출을 할 때 각 층내에서 원소들을 선정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본추출을 위해 완전한 표본추출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표본추출틀 (frame) 속에 주기성 (periodicity)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소영일, 1995).

나. 調査方法

조사방법은 電話面接方法 혹은 郵便調査方法을 사용한다.

다. 分析方法

1) 要因分析方法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기법은 顧客満足度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공통 요인을 발견하는 분석기법이다.

要因分析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비슷한 인자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복잡한 실상을 보다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룹화된 하나의 요인 (factor)에 존재하는 세분화된 요인들을 관찰함으로써 요인 (factor)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물이나 현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즉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顧客満足度の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顧客満足度を 단순화시켜 설명하고, 다시 그룹화된 요인내의 세부적인 요인들을 관찰함으로써 고객만족 실천적 전략수립에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허영만, 1994: 434)

要因分析 (factor analysis)의 기초는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상황이 비슷하면 반응도 비슷하다는 데 있다. 즉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이 답할 경우 그 답변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통계인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통요인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요인검출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는 상관계수에서부터 출발한다. 문항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인계수를 계산하는데, 이를 매트릭스화 할 때 공통성(communality)을 가진 요인이 있다. 여기서 계산된 요인을 로테이션 (rotation) 단계와

상관계수 역추적을 통하여 나온 상관계수와 원래의 상관계수의 차인 요인분석의 잔차 (residual)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면 요인분석이 완료된다(채서일 외, 1995: 193)

2) 顧客滿足度の 加重値 産出方法

7점 척도의 단순집계 혹은 7점 척도의 단순집계 후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법보다는 종합만족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加重値를 산출하여 종합만족도 점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법상으로는 중요도를 활용하는 방법, 상대적평가치를 활용하는 방법,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회귀계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박중훈·김판석, 1996).

상대적 평가치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구성하는 차원을 중심으로 상대적 평가를 유도해 낸 후 상대평가의 점수의 합을 1.00으로 환산하여 중요도를 산출한다.

또한 문항별 중요도는 각 차원의 만족도와 문항별 만족도의 상관계수 (r)의 값을 1.00으로 각 문항별 상대적인 값을 구하여 활용한다. 차원별 중요도와 顧客滿足度 指數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W_i = \frac{I_i}{\sum_{i=1}^n I_i}$$

$$CSI = \sum_{i=1}^n (W_i \cdot S_i)$$

- Ii: i 차원 상대적 중요도 점수
- Wi: i 차원별 중요도
- Si: i 차원의 만족도
- CSI: 고객만족도

가중치에 의한 顧客満足度 조사는 중요한 요소에 가중치를 두어 개선점을 찾아내기 쉽고, 중요도가 높은 것이 고객이 중시하는 사항으로 顧客満足度を 설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실제 중요하지 않은 요소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顧客満足度指數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박중훈·김판석, 1996).

VI. 綜合的 指標體系 開發

저성장 시대에 인구고령화를 배경으로 급속한 社會福祉 慾求의 증대를 겪고 있는 우리 나라는 制限된 資源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두 가지의 모순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費用效率性과 함께 社會福祉慾求의 효과적인 충족은 그 어떤 것도 양보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용효율성을 염두에 둔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추구하고 사회보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및 수급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는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목표로서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費用效率性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상의 효과적인 관리 및 受給者 慾求의 충족을 설정하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綜合的인 評價指標體系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용효율성을 주로 염두에 둔 客觀的 評價指標와 함께 수급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하는 主觀的 評價指標를 같이 개발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인 지표는 이 두 가지의 다소 상이한 성격의 평가지표를 아우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개발한 사회보험 관리운영 평가를 위한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표를 정리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供給者 側面에서 관리효율성, 업무효과성(성과성), 업무체계성을 주요 평가범주로 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受給者 側面에서는 접근성, 편의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반응성, 형평성, 환류성, 타기관과의 상대적

비교 등으로 주요 평가범주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 綜合的 指標體系 構成을 위한 考慮事項

관리운영 평가지표 개발은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총합하여 객관적 혹은 주관적, 규범적인 측면을 明示的인 指標體系로 전환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리운영 평가관련 지표개발 관련 연구는 그 수도 작지만, 관리효율성에만 주요 초점을 두거나, 혹은 수급자 만족도에만 초점을 둔 연구로 양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하나의 지표로 관리운영의 대표지표로 제시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際比較 연구에서는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를 그 대표변수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給與費 對比 管理運營費 지표로 한 국가의 관리운영을 평가한다는 것은 해석상의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 예컨대, 제도의 성숙도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는 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아 급여비가 낮은 국가의 관리운영 평가지표가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과 관련된 객관적 변수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하여 多變數分析方法을 통해 관리운영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식되는 변수를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주관적 속성을 포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소위 교란항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지표에 동일한 加重值를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각 가중치는 研究者 恣意에 의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즉, 각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거나 연구자의恣意대로 가중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통계분석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것은 평가지표체계의 중요한 한계이기도 하였다.

가중치선정의 恣意性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자료의 특성으로부터 가중치를 구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가지로 행해져 왔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두 방법이 代變數方法과 主成分分析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代變數方法은 어떤 변수가 관리운영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依存變數로 나머지 변수에 대해 回歸하여 얻은 推定值를 加重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Slottje et al., 1991, 윤병식 외, 1996).

만일 관리운영 평가를 대표하는 변수가 한 개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각각의 경우를 回歸하여 國際 順位를 구하고 이를 算術平均하여 綜合 順位로 구분한다(Slottje, et al., 1991). 이 방법은 비교적 많은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代變數로 한 변수만을 선택하여 관리운영 평가를 도출할 경우 순위는 초기 변수의 순위와 說明力(또는 R-square)만큼의 相關關係를 가질 것이므로 이 방법을 굳이 사용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여러 변수를 代變數로 사용하여 각각의 순위를 구하여 이를 평균하면 결국 또다시 ‘同一 加重值’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중치를 보다 자료에 의존하여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主成分分析方法이라 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방법은 될 수 있는 한 정보의 손실없이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 또는 소수개의 총합적 지표로 대표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회지표를 총합한 지역간 또는 국가간의 삶의 질 비교 (Slotje et al., 1991), 몇 개의 시험성적을 요약한 총합적 성적, 여러 가지의 증상으로부터의 총합적인 질병 중증도, 각종의 재무지표에 의거한 기업 평

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처리방법이다(Dillon and Goldstein, 1984).

주성분 분석방법을 관리운영 평가모형에 적용할 때에는 제1주성분을 관리운영 평가지표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여러 개 주성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지표를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제1주성분만을 채택할 경우 그 주성분의 기여율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귀중한 정보를 잃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주성분을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지표를 구성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예, 서로 독립 관계에 있는 주성분의 통합)을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다(윤병식 외, 1996).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이미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와 관리운영과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변수들은 서로 단위, 분포 및 상관이 다르므로, 단순히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표를 만든다면 변수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綜合指標가 관심변수들을 “잘 대표한다”는 의미를, 綜合指標가 관심변수들과 상관성이 높다는 것으로 파악하여, 표준화된 관심변수와 상관관계를 최대로 하는 새로운 변수 즉, 제1주성분을 구하기 위해 최대화 문제를 풀어 표준화된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제1주성분 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관리운영을 대표하는 綜合指標로 정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가중치 적용은 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지표체계의 구성항목 개발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 管理運營 綜合的 指標體系의 構成

管理運營 評價指標은 크게 공급자 측면에서 관리운영을 평가하는 것과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관계에서 관리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供給者 측면의 관리운영 평가지표는 객관적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供給者와 受給者간의 關係 측면에서의 관리운영 평가지표는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통하여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供給者 側面에서 관리운영 평가범주는 관리효율성, 업무효과성, 업무체계성으로 크게 구분하여,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먼저, 管理效率性은 관리단위당 비용효율성, 직원 1인당 노동생산성, 관리운영비 비중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평가지표로 만들었다.

관리단위당 비용효과성은 가입자(수급자 혹은 수급건수) 1인당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기준으로 관리효율성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직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직원 1인당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수(가입자, 수급자, 수급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관리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었다. 관리운영비 비중은 전체 관리운영비가 총 사업비 및 급여비, 보험료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와 같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세가지 평가지표는 동일한 측면을 다른 각도에서 평가해 보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실증적인 자료로 상관관계를 구하여 지표를 정리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표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管理效率性 평가지표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관리운영을 수행하였

는가를 평가하는 비용효율성을 강조점을 둔 것이라면, 業務效果性(성과성)은 본래 사회보험 관리운영에 부과된 목적에 따라 얼마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효과성은 관리효율성과 相互補完的인 평가의 측면으로,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관리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때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용을 적게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충실히 징수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안전망 충실화와 재정 건실화에는 더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본래 부과된 일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얼마나 비용효율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보험 관리운영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業務의 效果性은 업무프로세스별로 부과된 업무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잘 수행하였는가의 견지에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먼저, 適用管理의 效果性에서는 법적으로 설정한 적용대상인구를 실제 제도상으로 얼마나 잘 포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회보험의 특성상 법적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법적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종사자와 도시지역 자영자 등의 일부가 실제 적용대상으로 포괄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관리에서 얼마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성과지표로서 적용률은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또한 保險料 賦課管理의 效果性은 관리노력에 의하여 보험료 부과 소득을 얼마나 잘 포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법정 보험료

부과소득과 실제 보험료 부과소득의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그에 대한 관리노력 투입과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장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 부과기준 소득과 실제 부과기준 소득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과약이 용이하지 않은 자영자의 경우이다. 보험료 부과소득의 정확한 파악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제도의 형평적인 건설한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관리비용을 몇 단위 추가투입하더라도 그 이상의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관리 운영 평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徵收管理의 效果性은 보험료 납부자로부터 얼마나 보험료를 잘 걷어 들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사회보험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리비용의 추가투입을 통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전체적 관리의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보험료 체납율은 징수율의 반대지표로서 체납보험료의 크기가 클수록 징수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징표이다.

給與管理의 效果性은 급여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통하여 관리노력을 평가할 수 있다. 즉, 급여신청후 급여지급까지 얼마나 반응성있게 신속하게 처리되었는가 라는 측면과 급여수급 자격과 급여의 산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었는가를 측면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其他 管理의 效果性은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제도의 정착에 얼마나 관리노력이 투입되었으며, 그외에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고객만족도가 어떠한가를 평가하여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효과성은 업무프로세스별로 관리노력의 투입정도에 비례할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적 관리실적에 강조점을 두어 개발한 평가지표였다. 한편, 업무체계성은 관리조직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 지표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業務體系性 평가범주와 관련하여, 의사소통의 원활성, 업무분담의 명확성, 업무연계의 원활성, 업무평가의 체계성, 정보화 등의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세부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意思疏通의 圓滑性은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을 총칭하는 수직적 의사소통의 원활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수평적 의사소통의 원활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業務分擔의 明確性은 직원이 각자의 담당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과, 동료직원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자기와 상대방의 역할분담과 책임소재가 명확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業務連繫의 圓滑性은 업무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연계를 제도적으로 잘 구조화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과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業務評價의 體系性은 업무에 대한 평가체계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업무평가체계의 개발이 되어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과 정기적으로 업무평가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情報化는 업무를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연계할 수 있도록 하부기반을 정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업무가 얼마나 전산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 전산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작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공급자와 수급자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受給者의 主觀的 滿足度를 평가하기 위하여 접근성, 편의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반응성, 형평성, 환류성, 타기관과의 상대적 비교 등 8가지 하부 평가범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달리 실증적인 조사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개발된 주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接近性은 수급자가 공급자와의 관계가 필요할 때 얼마나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관리조직의 위치와 접근절차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便宜性은 얼마나 수급자 중심에서 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행정편의가 아니라 수급자 편의를 위주로 서류·절차의 간소화, 일처리 형태의 다양성 수용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迅速·正確性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직원의 일처리 속도 및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快適性은 기관의 물리적 환경의 청결성, 휴식공간의 마련,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등의 설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對應性은 수급자가 관리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잘 반영하여 대응하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衡平性은 수급자의 관점에서 업무처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還流性은 수급자가 기대하는 업무처리와 관리자측에서 실제로 행한 업무처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급자와 관리자

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상대적 비교는 타기관과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관리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이상과 같은 수급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평가지표와 이미 제시된 공급자 측면의 평가지표를 합하여 종합적 관리운영 평가지표를 구성토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 만족도의 경우 실증 조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 평가지표와의 점수배점 및 가중치 조정 등의 작업을 통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체계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表 6-1〉 綜合的 評價指標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관리효율성	○ 관리단위당 비용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1인당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가입자수 • 수급자 1인당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수급자수 • 수급건수 1건당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수급건수
	○ 직원 1인당 노동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1인당 가입자수 = 가입자수/ 직원수 • 직원 1인당 수급자수 = 수급자수/ 직원수 • 직원 1인당 수급건수 = 수급건수/ 직원수
	○ 관리운영비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총지출 •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급여비 • 보험료 대비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보험료 • 직원 1인당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직원수

〈表 6-1〉 계속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업무효과성 (성과성)	○ 적용관리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율 = 실제적용대상자수/ 법정적용대상
	○ 보험료 부과관리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부과소득 정확율 = 실제 부과소득/ 법정 부과소득 소득과악율 = 신고소득/ 권고소득
	○ 징수관리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징수율 = 보험료납부자수/ 가입자수 보험료 체납율 = 체납보험료/ 보험료
	○ 급여관리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업무의 신속성 = 급여신청후 급여지급까지 평균기간 급여업무의 정확성 = 급여재심결과 변경건수/ 총급여건수
	○ 기타관리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빈도, 방법의 다양성, 내용 고객만족도
업무체계성	○ 의사소통의 원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적 의사소통의 원활성 수평적 의사소통의 원활성
	○ 업무분담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담당역할의 정확한 인지도 동료담당역할의 정확한 인지도
	○ 업무연계의 원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연계의 구조화 수준 업무협조의 중요성 인지도
	○ 업무평가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업무평가체계의 개발 정기적 업무평가의 실행
	○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의 전산화 정도 전산네트워크 구축 수준 정보의 DB구축 수준

〈表 6-1〉 계속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접근성	○ 서비스 절차에 대한 안내	• 좌동
	○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 좌동
	○ 해당사무실 혹은 창구에 대한 안내	• 좌동
	○ 민원인을 대하는 담당직원의 안내태도	• 좌동
	○ 전화문의시 담당직원의 태도	• 좌동
	○ 전화문의시 담당직원과의 통화 편의성	• 좌동
편의성	○ 서비스 신청시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 좌동
	○ 업무처리과정상 관련 창구 및 부서의 수	• 좌동
	○ 구비해야 할 서류의수량	• 좌동
	○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횟수	• 좌동
	○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 좌동
	○ 담당직원의 민원처리 지연성	• 좌동
신속·정확성	○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 좌동
	○ 민원처리의 정확성	• 좌동
	○ 담당직원의 일처리 능숙도	• 좌동
	○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 좌동

〈表 6-1〉 계속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쾌적성	○ 기관내 혹은 근처에 위치한 주차공간	• 좌동
	○ 휴식공간(실외 포함)	• 좌동
	○ 편의시설	• 좌동
	○ 외부와의 연락시설	• 좌동
	○ 공간의 청결도	• 좌동
반응성	○ 민원처리 시간통보 및 준수여부	• 좌동
	○ 요구에 대한 대응태도	• 좌동
	○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	• 좌동
	○ 착오시 시정 혹은 해명 여부 및 신속성	• 좌동
형평성	○ 정보의 공개 여부	• 좌동
	○ 관련규정에 의한 업무 처리의 공정성	• 좌동
	○ 업무처리의 공정성	• 좌동
	○ 담당직원의 부정행위	• 좌동
환류성	○ 예상결과의 예측가능성	• 좌동
	○ 예상결과와 실제결과와의 비교	• 좌동
	○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 좌동
	○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 좌동
상대적 비교	○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와의 비교	• 좌동
	○ 민간기업의 서비스와의 비교	• 좌동
	○ 다른 유사기관과의 비교	• 좌동
	○ 민원인이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따른 만족도	• 좌동

VII. 結 論

公的年金이 民營化되면 비효율적인 공적연금 관리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效率性이 개선되고 경비절감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공적연금 민영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로운 경쟁도입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관리운영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관리운영비가 공적연금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공적연금과 민영연금 중 어느 관리운영체계가 우월한가에 대한 해답은 관리운영체계의 量的 效率性 側面을 평가할 수 있는 客觀的指標體系와 質的 側面인 고객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滿足度를 평가할 수 있는 主觀的指標體系를 구성영역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공적 연금의 總體的 效率性을 민영연금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운영은 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사회적 위험분산에 의한 소득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인 개인연금간의 관리운영 효율성을 計量化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분리계정이 도입되지 않고 있어 투입과 산출에 관한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동일 기준에 의한 객관적지표로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공·사연금간의 관리운영상 상대적 우월성 판단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종사 직원수, 일반관리비 등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와 산출량을 나타내는 징수, 급여, 자격관리, 기금운용 등의 관련지표를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화하고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목표와 성격, 업무프로세스, 성숙도, 당연적용 대상의 포괄범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리운영비용 및 성과측정 지표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상호간 비교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효율적 관리운영의 효율성의 질적 측면인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평가체계와 서비스만족도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효율성지표와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當然適用與否 및 연금의 受給-負擔構造에 따른 수익률차이, 제도의 成熟程度에 따른 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 등이 주관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방안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관리운영체계는 임의로 선택된 특정기간 또는 시점에서 일과성 평가보다는 정례적인 평가를 제도화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계열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평가결과의 시계열분석을 통해서 관리운영기구 효율성의 개선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 게리 헤일, 톰 파커, 릭 테이트 저, 신동설 역, 『고객혁명의 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연도.
_____, 『공무원연금실무요령』, 1999.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연도.
_____, 『국민연금실무편람』, 1997.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_____, 『국민연금제도 개선: 자료집』, 1997.
- 김영한, 『고객만족 리엔지니어링』, 서울: 성림, 1995.
- 김용하·석재은·윤석원,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김원식,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6.
- 김원식·김용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 김진무, 『국민연금관리공단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1998.
- 노동부, 『사업체실태조사보고서』, 각연도.
- 데이비드 오스본, 테드 게이블러 저, 삼성경제연구소 역, 『정부혁신의 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4.

- 마틴 레빈, 메리 생거 저, 삼성경제연구소 역, 『선진행정의 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 武田哲男 저, 한국생산성본부 역, 『고객만족(CS), 이것이 핵심포인트』, 서울: 한국생산성본부, 1992.
- 박명호, 『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조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 1994.
- 박세정·박통희·유홍립, 『고객지향적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1996, pp.45~79.
- 박중훈·김판석,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구상(I):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6.
-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연도.
_____, 『연금업무실무요령』, 1997.
_____, 『연금제도의 위기』, 1998.
- 소영일,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단영사, 1995.
- 윤병식 외, 『사회보험 통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윤병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윤상근·구자룡·최천규, 『고객만족도』, 서울: 한국능률협회, 1996.
- 이용하·김진수, 『국민연금 민영화론의 허상』,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1998.
- 이종범, 『고객지향적 정부의 이념과 가치』,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1996, pp.19~44.
- 정진호 외,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 채서일 외,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연사, 1995.
- 최재식,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요인분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98.
- 허영만, 『SPSS와 통계분석』, 교학사, 1994.
- Dillon, W. and M. Goldstein, *Multivariate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 1984.
- James, Estelle and Robert Palacios, The cost of administering publicly-mandated pensions, *Finance and Development*: 32(2), 1995.
- Mitchell, Olivia. S., *Administrative Costs in Public and Private Retirement System*, NBER Working Paper 5734, 1996.
- Slottje D. et al.,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 The World Bank,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the Crossroads*, 1999.
- _____,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附 表

〈附表 1〉 年間 管理運營費 推移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단위: 백만원)		
	인건비	경비	계	인건비	경비	계	인건비	경비	계
	12,264	6,047	18,311	5,562	7,411	12,973	2,389	3,235	5,624
	13,654	6,252	19,906	6,767	9,194	15,961	2,858	3,444	6,302
1990	15,533	6,979	22,512	8,225	11,473	19,698	3,254	3,896	7,150
1991	18,163	7,890	26,053	10,265	14,016	24,281	5,301	4,496	9,797
1992	20,662	8,423	29,085	12,420	17,022	29,442	5,076	6,544	11,620
1993	21,471	9,284	30,755	13,802	18,438	32,240	6,119	10,358	16,477
1994	36,406	28,238	64,644	14,392	19,536	33,928	7,038	10,685	17,723
1995	43,691	36,528	80,219	15,650	21,445	37,095	7,939	13,111	21,050
1996	49,038	41,918	90,956	18,750	26,302	45,052	7,486	18,673	26,159
1997	81,073	72,478	153,551	18,849	26,061	44,910	7,392	20,170	27,562
1998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2〉 保險料(負擔金)徵收額 推移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685,846	637,478	140,809
1990	843,780	797,351	171,008
1991	1,000,767	984,948	202,708
1992	1,236,414	1,272,773	277,063
1993	2,769,901	1,574,944	312,544
1994	3,344,125	1,751,945	348,066
1995	4,074,267	1,998,811	393,071
1996	4,972,928	2,475,936	512,909
1997	5,708,075	2,731,220	564,827
1998	7,922,543	3,316,353	544,672

註: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는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을 모두 포함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3〉 給與費 推移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6,034	530,631	92,673
1990	42,301	718,264	113,338
1991	110,882	910,965	132,035
1992	216,541	1,201,683	182,091
1993	333,131	1,606,695	211,771
1994	519,074	1,925,708	324,427
1995	755,460	2,627,124	324,637
1996	1,117,645	2,420,561	344,462
1997	1,485,645	2,794,814	399,928
1998	2,439,729	5,033,060	556,572

註: 급여비는 일시금과 연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급여비는 장기급여 및 단기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4〉 基金積立金 推移

(단위: 억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적립금	증가율	적립금	증가율	적립금	증가율
1989	12,402	1,348	31,779	139	9,856	217
1990	22,595	822	35,786	126	11,636	181
1991	35,390	566	40,436	130	13,641	172
1992	52,019	470	44,918	111	16,142	183
1993	84,246	620	49,003	91	19,075	182
1994	127,661	515	52,414	71	21,701	138
1995	181,597	422	51,495	18	23,905	102
1996	250,284	378	56,805	103	27,586	154
1997	331,906	322	62,015	92	31,904	157
1998	448,519	351	47,844	229	34,428	79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5〉 異義申請 處理數 推移

(단위: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5	222	164
1990	17	280	153
1991	19	243	190
1992	19	294	230
1993	54	355	262
1994	76	301	341
1995	46	342	322
1996	58	319	404
1997	79	280	446
1998	107	267	437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6〉 加入者數 推移

(단위: 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4,520,948	810,069	149,542
1990	4,561,678	842,262	153,922
1991	4,768,536	884,648	159,295
1992	5,021,159	922,098	165,334
1993	5,159,868	939,674	171,095
1994	5,444,818	948,151	174,933
1995	7,257,394	957,882	181,128
1996	7,425,700	971,303	191,981
1997	7,356,931	981,759	202,981
1998	6,580,265	952,154	206,278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7〉 事業場 加入者數 推移

(단위: 개, 천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1989	62,952	4,516	1,990	810	2,306	150
1990	72,511	4,640	2,039	842	2,322	154
1991	80,987	4,748	2,093	884	2,349	159
1992	120,374	4,977	2,126	922	2,384	165
1993	129,703	5,109	2,152	939	2,427	171
1994	144,910	5,383	2,176	948	2,462	175
1995	152,463	5,542	2,152	957	2,553	181
1996	164,205	5,678	2,209	971	2,668	182
1997	172,759	5,601	2,249	981	2,863	203
1998	160,027	4,850	2,236	952	3,019	206

註: 공무원연금의 사업장수는 연도말 기준 연금취급기관수를 사용하였음.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8〉 受給件數 推移

(단위: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59,347	74,183	18,832
1990	257,101	83,319	19,504
1991	382,790	91,901	19,941
1992	492,471	123,133	24,780
1993	583,014	135,781	25,426
1994	845,613	147,463	30,813
1995	875,899	165,664	29,393
1996	942,232	143,673	31,257
1997	983,386	151,024	33,916
1998	1,263,593	206,429	38,978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9〉 受給件數 推移(細部)

(단위: 건)

	일시금 건수			연금 건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57,549	52,979	17,763	1,798	21,204	1,069
1990	252,032	57,923	18,159	5,069	25,396	1,345
1991	373,519	62,182	18,236	9,271	29,719	1,705
1992	476,170	88,800	22,677	16,301	34,333	2,103
1993	547,811	94,932	22,752	35,203	40,849	2,674
1994	791,217	99,447	27,443	54,396	48,016	3,370
1995	798,190	109,321	25,443	77,709	56,343	3,950
1996	834,678	83,980	26,639	107,554	59,693	4,618
1997	833,676	78,135	28,459	149,680	72,889	5,457
1998	1,065,725	117,107	32,566	197,868	89,322	6,412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10〉 年金受給者數 推移(一時金 受給者는 除外)

(단위: 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1,853	21,204	1,069
1990	5,234	25,396	1,345
1991	9,672	29,719	1,705
1992	16,972	34,333	2,103
1993	36,524	40,849	2,674
1994	55,707	48,016	3,370
1995	79,259	56,343	3,950
1996	109,449	63,693	4,618
1997	151,975	72,889	5,457
1998	200,525	89,322	6,412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11〉 給與費 對比 管理運營費 推移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인건비	경비	계	인건비	경비	계	인건비	경비	계
1989	203.25	100.22	303.46	1.05	1.40	2.44	2.58	3.49	6.07
1990	32.28	14.78	47.06	0.94	1.28	2.22	2.52	3.04	5.56
1991	14.01	6.29	20.30	0.90	1.26	2.16	2.46	2.95	5.42
1992	8.39	3.64	12.03	0.85	1.17	2.02	2.91	2.47	5.38
1993	6.20	2.53	8.73	0.77	1.06	1.83	2.40	3.09	5.49
1994	4.14	1.79	5.92	0.72	0.96	1.67	1.89	3.19	5.08
1995	4.82	3.74	8.56	0.55	0.74	1.29	2.17	3.29	5.46
1996	3.91	3.27	7.18	0.65	0.89	1.53	2.30	3.81	6.11
1997	3.30	2.82	6.12	0.67	0.94	1.61	1.87	4.67	6.54
1998	3.32	2.97	6.29	0.37	0.52	0.89	1.33	3.62	4.95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12〉 保險料 對比 管理運營費 推移

(단위: 백만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인건비	경비	계	인건비	경비	계	인건비	경비	계
1989	1.79	0.88	2.67	0.87	1.16	2.04	1.70	2.30	3.99
1990	1.62	0.74	2.36	0.85	1.15	2.00	1.67	2.01	3.69
1991	1.55	0.70	2.25	0.84	1.16	2.00	1.61	1.92	3.53
1992	1.47	0.64	2.11	0.81	1.10	1.91	1.91	1.62	3.54
1993	0.75	0.30	1.05	0.79	1.08	1.87	1.62	2.09	3.72
1994	0.64	0.28	0.92	0.79	1.05	1.84	1.76	2.98	4.73
1995	0.89	0.69	1.59	0.72	0.98	1.70	1.79	2.72	4.51
1996	0.88	0.73	1.61	0.63	0.87	1.50	1.55	2.56	4.10
1997	0.86	0.73	1.59	0.69	0.96	1.65	1.33	3.31	4.63
1998	1.02	0.91	1.94	0.57	0.79	1.35	1.36	3.70	5.06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13〉 職員 1人當 管理運營費 推移

(단위: 백만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인건비	일반 경비	계	인건비	일반 경비	계	인건비	일반 경비	계
1989	9.56	4.71	14.27	10.04	13.38	23.42	11.27	15.26	26.53
1990	10.54	4.83	15.37	12.02	16.33	28.35	12.99	15.65	28.65
1991	10.74	4.83	15.57	14.16	19.75	33.90	13.56	16.23	29.79
1992	12.44	5.40	17.84	16.35	22.32	38.66	20.95	17.77	38.72
1993	13.95	5.69	19.64	19.53	26.76	46.29	12.75	16.44	29.20
1994	11.78	5.09	16.87	22.37	29.88	52.25	16.27	27.55	43.82
1995	16.81	13.04	29.84	23.99	32.56	56.55	20.52	31.15	51.67
1996	20.17	16.86	37.04	26.57	36.41	62.98	22.95	37.89	60.84
1997	12.32	10.53	22.85	31.67	44.43	76.10	21.95	54.76	76.71
1998	20.36	18.20	38.56	36.18	50.02	86.20	24.24	66.13	90.37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14〉 職員數 推移

(단위: 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1989	1,283	554	212
1990	1,295	563	220
1991	1,446	581	240
1992	1,460	628	253
1993	1,481	626	398
1994	1,823	617	376
1995	2,166	600	343
1996	2,166	589	346
1997	3,980	592	341
1998	3,982	521	305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연금통계』, 1998;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8.

〈附表 15〉 推定式 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89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277	0.8853	1.2740
수급자수	-0.3468	0.2616	-1.3260
수급건수	0.1404	0.5528	0.254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급여비	-0.0558	0.3933	-0.1420
기금적립금	0.3588	0.4270	0.8400
재심건수	-0.0768	0.2479	-0.3100
직원수	0.4506	0.2306	1.9540
상수	-9.1821	11.2136	-0.8190
국민연금	-2.3786	1.8030	-1.3193
공무원연금	0.6512	0.6159	1.0573
사학연금	1.7274	1.6003	1.0794
1989	-0.5395	0.2941	-1.8345
1990	-0.4097	0.2265	-1.8091
1991	-0.3185	0.1900	-1.6764
1992	-0.1743	0.1421	-1.2263
1993	-0.0826	0.1058	-0.7812
1994	0.0342	0.1135	0.3012
1995	0.1110	0.1804	0.6151
1996	0.3059	0.1861	1.6434
1997	0.3805	0.2023	1.8804
1998	0.6932	0.2439	2.8423

〈附表 16〉 推定式 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73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280	0.8853	1.2740
수급자수	-0.3469	0.2616	-1.3260
수급건수	0.1403	0.5528	0.2540
보험료	-0.8588	0.2921	-2.9400
급여비	-0.0557	0.3933	-0.1420
기금적립금	0.3588	0.4270	0.8400
재심건수	-0.0768	0.2479	-0.3100
직원수	0.4505	0.2306	1.9530
상수	2.3271	11.2139	0.2080
국민연금	-2.3788	1.8030	-1.3194
공무원연금	0.6511	0.6159	1.0573
사학연금	1.7277	1.6004	1.0796
1989	-0.5395	0.2941	-1.8344
1990	-0.4097	0.2265	-1.8090
1991	-0.3185	0.1900	-1.6763
1992	-0.1743	0.1421	-1.2263
1993	-0.0826	0.1058	-0.7811
1994	0.0342	0.1135	0.3012
1995	0.1109	0.1804	0.6149
1996	0.3059	0.1861	1.6434
1997	0.3804	0.2023	1.8802
1998	0.6931	0.2439	2.8421

〈附表 17〉 推定式 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71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277	0.8853	1.2740
수급자수	-0.3468	0.2616	-1.3260
수급건수	0.1404	0.5528	0.254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급여비	-1.0558	0.3933	-2.6840
기금적립금	0.3588	0.4270	0.8400
재심건수	-0.0768	0.2479	-0.3100
직원수	0.4506	0.2306	1.9540
상수	2.3309	11.2136	0.2080
국민연금	-2.3786	1.8029	-1.3193
공무원연금	0.6512	0.6158	1.0574
사학연금	1.7274	1.6003	1.0795
1989	-0.5395	0.2941	-1.8346
1990	-0.4097	0.2265	-1.8092
1991	-0.3185	0.1900	-1.6764
1992	-0.1743	0.1421	-1.2264
1993	-0.0826	0.1058	-0.7813
1994	0.0342	0.1135	0.3012
1995	0.1110	0.1804	0.6152
1996	0.3059	0.1861	1.6435
1997	0.3805	0.2023	1.8805
1998	0.6932	0.2439	2.8424

〈附表 18〉 推定式 4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953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5805	0.8858	0.6550
수급자수	-0.3201	0.2617	-1.2230
수급건수	0.5107	0.5531	0.9230
보험료	-0.7732	0.2922	-2.6460
급여비	-0.4116	0.3935	-1.0460
기금적립금	0.6590	0.4273	1.5420
재심건수	-0.1678	0.2480	-0.6760
직원수	0.4139	0.2307	1.7940
국민연금	-2.1808	1.7084	-1.2766
공무원연금	0.7682	0.5836	1.3164
사학연금	1.4127	1.5164	0.9316
1989	-0.5279	0.2787	-1.8942
1990	-0.3898	0.2146	-1.8166
1991	-0.2888	0.1800	-1.6041
1992	-0.1685	0.1347	-1.2515
1993	-0.0641	0.1002	-0.6396
1994	-0.0209	0.1075	-0.1947
1995	0.0951	0.1709	0.5565
1996	0.3482	0.1763	1.9748
1997	0.4065	0.1917	2.1201
1998	0.6102	0.2311	2.6406

〈附表 19〉 推定式 5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4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1547	0.8828	0.1750
수급자수	-0.3578	0.2608	-1.3720
수급건수	0.1291	0.5512	0.2340
보험료	0.1163	0.2912	0.3990
급여비	-0.0550	0.3922	-0.1400
기금적립금	0.3846	0.4258	0.9030
재심건수	-0.0634	0.2472	-0.2570
직원수	0.4412	0.2300	1.9190
상수	-9.4174	11.1817	-0.8420
국민연금	-2.3545	1.7746	-1.3268
공무원연금	0.6358	0.6062	1.0489
사학연금	1.7187	1.5752	1.0911
1989	-0.5360	0.2895	-1.8518
1990	-0.4066	0.2229	-1.8238
1991	-0.3146	0.1870	-1.6823
1992	-0.1682	0.1399	-1.2024
1993	-0.0776	0.1041	-0.7455
1994	0.0357	0.1117	0.3196
1995	0.1117	0.1776	0.6292
1996	0.3018	0.1832	1.6476
1997	0.3723	0.1992	1.8692
1998	0.6815	0.2400	2.8391

〈附表 20〉 推定式 6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41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1277	0.8853	0.1440
수급자수	-0.3468	0.2616	-1.3260
수급건수	0.1404	0.5528	0.254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급여비	-0.0558	0.3933	-0.1420
기금적립금	0.3588	0.4270	0.8400
재심건수	-0.0768	0.2479	-0.3100
직원수	0.4506	0.2306	1.9540
상수	-9.1821	11.2136	-0.8190
국민연금	-2.3786	1.8030	-1.3193
공무원연금	0.6512	0.6159	1.0573
사학연금	1.7274	1.6004	1.0794
1989	-0.5395	0.2941	-1.8345
1990	-0.4097	0.2265	-1.8091
1991	-0.3185	0.1900	-1.6764
1992	-0.1743	0.1421	-1.2263
1993	-0.0826	0.1058	-0.7812
1994	0.0342	0.1135	0.3012
1995	0.1110	0.1804	0.6151
1996	0.3059	0.1861	1.6434
1997	0.3805	0.2023	1.8804
1998	0.6932	0.2439	2.8423

〈附表 21〉 推定式 7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946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277	0.8853	1.2740
수급자수	-1.3468	0.2616	-5.1490
수급건수	0.1404	0.5528	0.254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급여비	-0.0558	0.3933	-0.1420
기금적립금	0.3588	0.4270	0.8400
재심건수	-0.0768	0.2479	-0.3100
직원수	0.4506	0.2306	1.9540
상수	-9.1821	11.2136	-0.8190
국민연금	-2.3786	1.8029	-1.3193
공무원연금	0.6512	0.6159	1.0574
사학연금	1.7274	1.6003	1.0794
1989	-0.5395	0.2941	-1.8346
1990	-0.4097	0.2265	-1.8091
1991	-0.3185	0.1900	-1.6764
1992	-0.1743	0.1421	-1.2264
1993	-0.0826	0.1058	-0.7813
1994	0.0342	0.1135	0.3012
1995	0.1110	0.1804	0.6151
1996	0.3059	0.1861	1.6435
1997	0.3805	0.2023	1.8805
1998	0.6932	0.2439	2.8424

〈附表 22〉 推定式 8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893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9665	0.9844	0.9820
수급자수	-0.3393	0.2605	-1.3030
일시금건수	0.2203	0.4981	0.4420
보험료	0.1652	0.2975	0.5550
급여비	-0.1077	0.3598	-0.2990
기금적립금	0.4127	0.4393	0.9400
재심건수	-0.1280	0.2787	-0.4590
직원수	0.4499	0.2247	2.0020
상수	-8.3183	11.3319	-0.7340
국민연금	-2.3963	1.5998	-1.4979
공무원연금	0.7663	0.6884	1.1131
사학연금	1.6301	1.5167	1.0748
1989	-0.5619	0.2993	-1.8777
1990	-0.4258	0.2297	-1.8538
1991	-0.3317	0.1923	-1.7248
1992	-0.1963	0.1592	-1.2328
1993	-0.0886	0.1054	-0.8409
1994	0.0285	0.1131	0.2522
1995	0.1194	0.1798	0.6639
1996	0.3260	0.1960	1.6640
1997	0.4141	0.2283	1.8138
1998	0.7163	0.2529	2.8322

〈附表 23〉 推定式 9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719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9668	0.9844	0.9820
수급자수	-0.3394	0.2605	-1.3030
일시금건수	0.2202	0.4981	0.4420
보험료	-0.8348	0.2975	-2.8060
급여비	-0.1077	0.3598	-0.2990
기금적립금	0.4127	0.4393	0.9400
재심건수	-0.1280	0.2787	-0.4590
직원수	0.4498	0.2247	2.0020
상수	3.1907	11.3321	0.2820
국민연금	-2.3966	1.5998	-1.4980
공무원연금	0.7662	0.6884	1.1130
사학연금	1.6304	1.5167	1.0749
1989	-0.5619	0.2993	-1.8775
1990	-0.4258	0.2297	-1.8537
1991	-0.3317	0.1923	-1.7247
1992	-0.1963	0.1592	-1.2327
1993	-0.0886	0.1054	-0.8408
1994	0.0285	0.1131	0.2522
1995	0.1193	0.1798	0.6637
1996	0.3260	0.1960	1.6640
1997	0.4140	0.2283	1.8137
1998	0.7163	0.2529	2.8320

〈附表 24〉 推定式 10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953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9665	0.9844	0.9820
수급자수	-0.3393	0.2605	-1.3030
일시금건수	0.2203	0.4981	0.4420
보험료	0.1652	0.2975	0.5550
급여비	-1.1077	0.3598	-3.0790
기금적립금	0.4127	0.4393	0.9400
재심건수	-0.1280	0.2787	-0.4590
직원수	0.4499	0.2247	2.0020
상수	3.1946	11.3319	0.2820
국민연금	-2.3963	1.5998	-1.4979
공무원연금	0.7663	0.6884	1.1131
사학연금	1.6301	1.5166	1.0748
1989	-0.5619	0.2993	-1.8778
1990	-0.4258	0.2297	-1.8539
1991	-0.3317	0.1923	-1.7249
1992	-0.1963	0.1592	-1.2328
1993	-0.0886	0.1054	-0.8409
1994	0.0285	0.1131	0.2522
1995	0.1194	0.1798	0.6639
1996	0.3260	0.1959	1.6640
1997	0.4141	0.2283	1.8139
1998	0.7163	0.2529	2.8323

〈附表 25〉 推定式 1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73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3850	0.9894	0.3890
수급자수	-0.3151	0.2618	-1.2040
일시금건수	0.4734	0.5007	0.9460
보험료	-0.7439	0.2990	-2.4880
급여비	-0.3866	0.3616	-1.0690
기금적립금	0.6893	0.4415	1.5610
재심건수	-0.2135	0.2801	-0.7620
직원수	0.3921	0.2259	1.7360
상수	1.3414	11.3897	0.1180
국민연금	-1.9184	1.5137	-1.2674
공무원연금	0.8444	0.6514	1.2963
사학연금	1.0740	1.4351	0.7484
1989	-0.5645	0.2832	-1.9937
1990	-0.4116	0.2173	-1.8937
1991	-0.3100	0.1820	-1.7040
1992	-0.1999	0.1507	-1.3268
1993	-0.0771	0.0997	-0.7735
1994	-0.0257	0.1070	-0.2405
1995	0.1048	0.1701	0.6161
1996	0.3784	0.1854	2.0412
1997	0.4656	0.2160	2.1557
1998	0.6400	0.2393	2.6744

〈附表 26〉 推定式 1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4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0051	0.9817	-0.0050
수급자수	-0.3502	0.2598	-1.3480
일시금건수	0.2123	0.4968	0.4270
보험료	0.1401	0.2967	0.4720
급여비	-0.1091	0.3588	-0.3040
기금적립금	0.4391	0.4381	1.0020
재심건수	-0.1147	0.2780	-0.4130
직원수	0.4411	0.2241	1.9680
상수	-8.5825	11.3014	-0.7590
국민연금	-2.3805	1.5769	-1.5096
공무원연금	0.7518	0.6786	1.1079
사학연금	1.6287	1.4950	1.0895
1989	-0.5580	0.2950	-1.8916
1990	-0.4224	0.2264	-1.8659
1991	-0.3275	0.1895	-1.7279
1992	-0.1899	0.1570	-1.2098
1993	-0.0834	0.1039	-0.8027
1994	0.0300	0.1115	0.2693
1995	0.1201	0.1772	0.6775
1996	0.3217	0.1931	1.6654
1997	0.4050	0.2250	1.8000
1998	0.7044	0.2493	2.8255

〈附表 27〉 推定式 1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4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0335	0.9844	-0.0340
수급자수	-0.3393	0.2605	-1.3030
일시금건수	0.2203	0.4981	0.4420
보험료	0.1652	0.2975	0.5550
급여비	-0.1077	0.3598	-0.2990
기금적립금	0.4127	0.4393	0.9400
재심건수	-0.1280	0.2787	-0.4590
직원수	0.4499	0.2247	2.0020
상수	-8.3183	11.3319	-0.7340
국민연금	-2.3963	1.5998	-1.4979
공무원연금	0.7663	0.6884	1.1131
사학연금	1.6301	1.5167	1.0747
1989	-0.5619	0.2993	-1.8777
1990	-0.4258	0.2297	-1.8538
1991	-0.3317	0.1923	-1.7248
1992	-0.1963	0.1592	-1.2327
1993	-0.0886	0.1054	-0.8409
1994	0.0285	0.1131	0.2521
1995	0.1194	0.1798	0.6639
1996	0.3260	0.1960	1.6640
1997	0.4141	0.2283	1.8138
1998	0.7163	0.2529	2.8322

〈附表 28〉 推定式 14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94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9665	0.9844	0.9820
수급자수	-1.3393	0.2605	-5.1420
일시금건수	0.2203	0.4981	0.4420
보험료	0.1652	0.2975	0.5550
급여비	-0.1077	0.3598	-0.2990
기금적립금	0.4127	0.4393	0.9400
재심건수	-0.1280	0.2787	-0.4590
직원수	0.4499	0.2247	2.0020
상수	-8.3183	11.3319	-0.7340
국민연금	-2.3963	1.5998	-1.4979
공무원연금	0.7663	0.6884	1.1131
사학연금	1.6301	1.5167	1.0748
1989	-0.5619	0.2993	-1.8777
1990	-0.4258	0.2297	-1.8539
1991	-0.3317	0.1923	-1.7249
1992	-0.1963	0.1592	-1.2328
1993	-0.0886	0.1054	-0.8409
1994	0.0285	0.1131	0.2521
1995	0.1194	0.1798	0.6639
1996	0.3260	0.1959	1.6640
1997	0.4141	0.2283	1.8139
1998	0.7163	0.2529	2.8322

〈附表 29〉 推定式 15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93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0919	0.6396	1.7070
수급자수	-0.1716	0.2236	-0.7670
연금건수	-0.9530	0.4068	-2.3420
보험료	0.3235	0.2455	1.3180
급여비	0.2881	0.1649	1.7470
기금적립금	0.8360	0.3705	2.2560
재심건수	-0.0028	0.1458	-0.0190
직원수	0.3322	0.1862	1.7840
상수	-20.3714	10.2116	-1.9950
국민연금	-1.6535	1.4502	-1.1402
공무원연금	0.8510	0.2945	2.8902
사학연금	0.8025	1.5451	0.5194
1989	-0.5025	0.2754	-1.8243
1990	-0.4085	0.2096	-1.9483
1991	-0.3285	0.1779	-1.8465
1992	-0.2067	0.1272	-1.6256
1993	-0.0929	0.0999	-0.9297
1994	0.0246	0.1048	0.2346
1995	0.1657	0.1722	0.9622
1996	0.2745	0.1710	1.6050
1997	0.3932	0.1867	2.1060
1998	0.6810	0.2211	3.0803

〈附表 30〉 推定式 16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81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0921	0.6397	1.7070
수급자수	-0.1716	0.2236	-0.7680
연금건수	-0.9529	0.4069	-2.3420
보험료	-0.6765	0.2455	-2.7550
급여비	0.2881	0.1649	1.7470
기금적립금	0.8360	0.3706	2.2560
재심건수	-0.0028	0.1458	-0.0190
직원수	0.3322	0.1862	1.7840
상수	-8.8618	10.2121	-0.8680
국민연금	-1.6538	1.4502	-1.1404
공무원연금	0.8510	0.2945	2.8902
사학연금	0.8028	1.5451	0.5196
1989	-0.5025	0.2754	-1.8242
1990	-0.4084	0.2096	-1.9482
1991	-0.3285	0.1779	-1.8465
1992	-0.2067	0.1272	-1.6256
1993	-0.0928	0.0999	-0.9296
1994	0.0246	0.1048	0.2346
1995	0.1657	0.1722	0.9620
1996	0.2745	0.1710	1.6050
1997	0.3932	0.1867	2.1058
1998	0.6810	0.2211	3.0801

〈附表 31〉 推定式 17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969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0919	0.6396	1.7070
수급자수	-0.1716	0.2236	-0.7670
연금건수	-0.9530	0.4068	-2.3420
보험료	0.3235	0.2455	1.3180
급여비	-0.7119	0.1649	-4.3160
기금적립금	0.8360	0.3705	2.2560
재심건수	-0.0028	0.1458	-0.0190
직원수	0.3322	0.1862	1.7840
상수	-8.8585	10.2116	-0.8670
국민연금	-1.6535	1.4502	-1.1402
공무원연금	0.8510	0.2945	2.8902
사학연금	0.8025	1.5451	0.5194
1989	-0.5025	0.2754	-1.8244
1990	-0.4085	0.2096	-1.9484
1991	-0.3285	0.1779	-1.8466
1992	-0.2067	0.1272	-1.6257
1993	-0.0929	0.0999	-0.9298
1994	0.0246	0.1048	0.2346
1995	0.1657	0.1722	0.9622
1996	0.2745	0.1710	1.6050
1997	0.3932	0.1867	2.1061
1998	0.6810	0.2211	3.0803

〈附表 32〉 推定式 18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813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8087	0.6691	1.2090
수급자수	-0.1599	0.2339	-0.6840
연금건수	-0.9775	0.4256	-2.2970
보험료	-0.6251	0.2568	-2.4340
급여비	0.1809	0.1725	1.0480
기금적립금	0.9983	0.3876	2.5750
재심건수	0.0211	0.1525	0.1380
직원수	0.2568	0.1948	1.3180
상수	-12.0556	10.6829	-1.1280
국민연금	-0.9097	1.3112	-0.6938
공무원연금	0.6728	0.2662	2.5274
사학연금	0.2369	1.3970	0.1696
1989	-0.4697	0.2490	-1.8863
1990	-0.3660	0.1895	-1.9310
1991	-0.2867	0.1609	-1.7821
1992	-0.1739	0.1150	-1.5122
1993	-0.0748	0.0903	-0.8287
1994	-0.0178	0.0948	-0.1878
1995	0.1366	0.1557	0.8774
1996	0.2929	0.1546	1.8944
1997	0.3967	0.1688	2.3498
1998	0.5627	0.1999	2.8150

〈附表 33〉 推定式 19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64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1132	0.6426	0.1760
수급자수	-0.1853	0.2246	-0.8250
연금건수	-0.9358	0.4087	-2.2900
보험료	0.2963	0.2467	1.2010
급여비	0.2769	0.1657	1.6710
기금적립금	0.8569	0.3723	2.3020
재심건수	0.0065	0.1465	0.0450
직원수	0.3258	0.1871	1.7420
상수	-20.4018	10.2590	-1.9890
국민연금	-1.6551	1.4252	-1.1613
공무원연금	0.8392	0.2894	2.9002
사학연금	0.8158	1.5185	0.5373
1989	-0.5002	0.2707	-1.8477
1990	-0.4059	0.2060	-1.9699
1991	-0.3247	0.1748	-1.8573
1992	-0.2007	0.1250	-1.6062
1993	-0.0876	0.0981	-0.8930
1994	0.0260	0.1030	0.2522
1995	0.1658	0.1693	0.9799
1996	0.2715	0.1681	1.6157
1997	0.3853	0.1835	2.0999
1998	0.6704	0.2173	3.0855

〈附表 34〉 推定式 20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6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0919	0.6396	0.1440
수급자수	-0.1716	0.2236	-0.7670
연금건수	-0.9530	0.4068	-2.3420
보험료	0.3235	0.2455	1.3180
급여비	0.2881	0.1649	1.7470
기금적립금	0.8360	0.3705	2.2560
재심건수	-0.0028	0.1458	-0.0190
직원수	0.3322	0.1862	1.7840
상수	-20.3714	10.2116	-1.9950
국민연금	-1.6535	1.4502	-1.1402
공무원연금	0.8510	0.2945	2.8902
사학연금	0.8025	1.5451	0.5194
1989	-0.5025	0.2754	-1.8243
1990	-0.4085	0.2097	-1.9483
1991	-0.3285	0.1779	-1.8465
1992	-0.2067	0.1272	-1.6256
1993	-0.0929	0.0999	-0.9297
1994	0.0246	0.1048	0.2346
1995	0.1657	0.1722	0.9622
1996	0.2745	0.1710	1.6050
1997	0.3932	0.1867	2.1060
1998	0.6810	0.2211	3.0802

〈附表 35〉 推定式 2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96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0919	0.6396	1.7070
수급자수	-1.1716	0.2236	-5.2400
연금건수	-0.9530	0.4068	-2.3420
보험료	0.3235	0.2455	1.3180
급여비	0.2881	0.1649	1.7470
기금적립금	0.8360	0.3705	2.2560
재심건수	-0.0028	0.1458	-0.0190
직원수	0.3322	0.1862	1.7840
상수	-20.3714	10.2116	-1.9950
국민연금	-1.6535	1.4502	-1.1402
공무원연금	0.8510	0.2945	2.8902
사학연금	0.8025	1.5451	0.5194
1989	-0.5025	0.2754	-1.8244
1990	-0.4085	0.2096	-1.9484
1991	-0.3285	0.1779	-1.8466
1992	-0.2067	0.1272	-1.6257
1993	-0.0929	0.0999	-0.9298
1994	0.0246	0.1048	0.2346
1995	0.1657	0.1722	0.9622
1996	0.2745	0.1710	1.6050
1997	0.3932	0.1867	2.1060
1998	0.6810	0.2211	3.0803

〈附表 36〉 推定式 2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89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410	0.8244	1.3840
수급자수	-0.3461	0.2617	-1.3220
연금건수	0.1374	0.5144	0.267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일시금급여	-0.0496	0.3353	-0.1480
기금적립금	0.3486	0.3866	0.9020
재심건수	-0.0742	0.2318	-0.3200
직원수	0.4526	0.2327	1.9450
상수	-9.2679	11.0523	-0.8390
국민연금	-2.3828	1.8287	-1.3030
공무원연금	0.6373	0.5058	1.2601
사학연금	1.7454	1.6411	1.0636
1989	-0.5324	0.2828	-1.8824
1990	-0.4051	0.2191	-1.8493
1991	-0.3155	0.1876	-1.6822
1992	-0.1724	0.1376	-1.2531
1993	-0.0827	0.1071	-0.7724
1994	0.0333	0.1162	0.2866
1995	0.1089	0.1756	0.6197
1996	0.3014	0.1789	1.6849
1997	0.3749	0.1950	1.9221
1998	0.6898	0.2356	2.9284

〈附表 37〉 推定式 2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71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412	0.8244	1.3840
수급자수	-0.3462	0.2617	-1.3230
연금건수	0.1373	0.5144	0.2670
보험료	-0.8588	0.2920	-2.9410
일시금급여	-0.0496	0.3354	-0.1480
기금적립금	0.3486	0.3866	0.9020
재심건수	-0.0742	0.2318	-0.3200
직원수	0.4525	0.2327	1.9450
상수	2.2414	11.0525	0.2030
국민연금	-2.3830	1.8288	-1.3031
공무원연금	0.6373	0.5058	1.2600
사학연금	1.7457	1.6411	1.0637
1989	-0.5324	0.2828	-1.8823
1990	-0.4051	0.2191	-1.8492
1991	-0.3155	0.1876	-1.6821
1992	-0.1724	0.1376	-1.2530
1993	-0.0827	0.1071	-0.7723
1994	0.0333	0.1162	0.2866
1995	0.1088	0.1756	0.6195
1996	0.3014	0.1789	1.6849
1997	0.3748	0.1950	1.9220
1998	0.6898	0.2356	2.9282

〈附表 38〉 推定式 24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95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4344	0.8284	1.7310
수급자수	-0.3474	0.2630	-1.3210
연금건수	0.0192	0.5169	0.0370
보험료	0.1386	0.2934	0.4720
일시금급여	-0.8942	0.3370	-2.6530
기금적립금	0.1435	0.3885	0.3690
재심건수	-0.0082	0.2329	-0.0350
직원수	0.4821	0.2338	2.0620
상수	0.4079	11.1067	0.0370
국민연금	-2.3834	1.7797	-1.3392
공무원연금	0.3466	0.4922	0.7042
사학연금	2.0368	1.5971	1.2753
1989	-0.4008	0.2752	-1.4560
1990	-0.3194	0.2132	-1.4980
1991	-0.2604	0.1825	-1.4268
1992	-0.1349	0.1339	-1.0075
1993	-0.0847	0.1043	-0.8125
1994	0.0200	0.1131	0.1766
1995	0.0656	0.1709	0.3835
1996	0.2197	0.1741	1.2619
1997	0.2727	0.1898	1.4367
1998	0.6223	0.2292	2.7146

〈附表 39〉 推定式 25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739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6815	0.8215	0.8300
수급자수	-0.3158	0.2608	-1.2110
연금건수	0.4845	0.5126	0.9450
보험료	-0.7734	0.2910	-2.6580
일시금급여	-0.3637	0.3342	-1.0880
기금적립금	0.5827	0.3853	1.5120
재심건수	-0.1476	0.2310	-0.6390
직원수	0.4283	0.2319	1.8470
상수	-1.0813	11.0140	-0.0980
국민연금	-2.2073	1.7068	-1.2932
공무원연금	0.6635	0.4721	1.4056
사학연금	1.5437	1.5317	1.0079
1989	-0.4749	0.2640	-1.7993
1990	-0.3558	0.2045	-1.7400
1991	-0.2668	0.1751	-1.5243
1992	-0.1546	0.1284	-1.2036
1993	-0.0650	0.1000	-0.6498
1994	-0.0273	0.1084	-0.2521
1995	0.0791	0.1639	0.4828
1996	0.3155	0.1670	1.8893
1997	0.3649	0.1820	2.0048
1998	0.5849	0.2199	2.6606

〈附表 40〉 推定式 26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46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1681	0.8220	0.2050
수급자수	-0.3572	0.2610	-1.3690
연금건수	0.1257	0.5129	0.2450
보험료	0.1163	0.2911	0.3990
일시금급여	-0.0487	0.3344	-0.1460
기금적립금	0.3744	0.3855	0.9710
재심건수	-0.0608	0.2311	-0.2630
직원수	0.4431	0.2320	1.9100
상수	-9.5041	11.0209	-0.8620
국민연금	-2.3581	1.7995	-1.3104
공무원연금	0.6219	0.4977	1.2495
사학연금	1.7363	1.6149	1.0752
1989	-0.5290	0.2783	-1.9007
1990	-0.4020	0.2156	-1.8648
1991	-0.3116	0.1846	-1.6885
1992	-0.1663	0.1354	-1.2284
1993	-0.0777	0.1054	-0.7373
1994	0.0349	0.1143	0.3048
1995	0.1096	0.1728	0.6341
1996	0.2974	0.1761	1.6895
1997	0.3667	0.1919	1.9108
1998	0.6781	0.2318	2.9256

〈附表 41〉 推定式 27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4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1410	0.8244	0.1710
수급자수	-0.3461	0.2617	-1.3220
연금건수	0.1374	0.5144	0.267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일시금급여	-0.0496	0.3353	-0.1480
기금적립금	0.3486	0.3866	0.9020
재심건수	-0.0742	0.2318	-0.3200
직원수	0.4526	0.2327	1.9450
상수	-9.2679	11.0523	-0.8390
국민연금	-2.3828	1.8287	-1.3030
공무원연금	0.6373	0.5058	1.2601
사학연금	1.7454	1.6411	1.0636
1989	-0.5324	0.2828	-1.8824
1990	-0.4051	0.2191	-1.8493
1991	-0.3155	0.1876	-1.6822
1992	-0.1724	0.1376	-1.2531
1993	-0.0827	0.1071	-0.7724
1994	0.0333	0.1162	0.2866
1995	0.1089	0.1756	0.6197
1996	0.3014	0.1789	1.6849
1997	0.3749	0.1950	1.9221
1998	0.6898	0.2356	2.9284

〈附表 42〉 推定式 28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941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1.1410	0.8244	1.3840
수급자수	-1.3461	0.2617	-5.1430
연금건수	0.1374	0.5144	0.2670
보험료	0.1412	0.2920	0.4840
일시금급여	-0.0496	0.3353	-0.1480
기금적립금	0.3486	0.3866	0.9020
재심건수	-0.0742	0.2318	-0.3200
직원수	0.4526	0.2327	1.9450
상수	-9.2679	11.0523	-0.8390
국민연금	-2.3828	1.8287	-1.3030
공무원연금	0.6373	0.5058	1.2601
사학연금	1.7454	1.6411	1.0636
1989	-0.5324	0.2828	-1.8825
1990	-0.4051	0.2191	-1.8493
1991	-0.3155	0.1876	-1.6822
1992	-0.1724	0.1376	-1.2531
1993	-0.0827	0.1071	-0.7724
1994	0.0333	0.1162	0.2866
1995	0.1089	0.1756	0.6197
1996	0.3014	0.1789	1.6849
1997	0.3749	0.1950	1.9222
1998	0.6898	0.2356	2.9284

〈附表 43〉 推定式 29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90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5294	0.8281	0.6390
수급자수	-0.1884	0.2573	-0.7320
연금건수	0.3490	0.2902	1.2030
보험료	0.1986	0.2723	0.7290
연금급여	-0.6647	0.4961	-1.3400
기금적립금	0.9374	0.5592	1.6760
재심건수	-0.1725	0.1893	-0.9110
직원수	0.4491	0.2102	2.1370
상수	-7.5179	10.1043	-0.7440
국민연금	-2.8789	1.7911	-1.6074
공무원연금	1.5381	1.0261	1.4990
사학연금	1.3408	1.6562	0.8096
1989	-0.9875	0.5505	-1.7937
1990	-0.6858	0.3647	-1.8806
1991	-0.4869	0.2584	-1.8838
1992	-0.2579	0.1612	-1.6001
1993	-0.0718	0.1075	-0.6675
1994	0.0884	0.1256	0.7036
1995	0.3086	0.2708	1.1397
1996	0.5190	0.2882	1.8008
1997	0.6312	0.3295	1.9154
1998	0.9425	0.3510	2.6856

〈附表 44〉 推定式 30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75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5296	0.8281	0.6400
수급자수	-0.1884	0.2573	-0.7320
연금건수	0.3490	0.2902	1.2030
보험료	-0.8014	0.2724	-2.9420
연금급여	-0.6647	0.4961	-1.3400
기금적립금	0.9374	0.5592	1.6760
재심건수	-0.1725	0.1893	-0.9110
직원수	0.4491	0.2102	2.1360
상수	3.9917	10.1047	0.3950
국민연금	-2.8792	1.7911	-1.6075
공무원연금	1.5381	1.0261	1.4989
사학연금	1.3411	1.6562	0.8097
1989	-0.9874	0.5505	-1.7936
1990	-0.6858	0.3647	-1.8804
1991	-0.4868	0.2584	-1.8837
1992	-0.2579	0.1612	-1.6001
1993	-0.0717	0.1075	-0.6674
1994	0.0884	0.1256	0.7036
1995	0.3086	0.2708	1.1395
1996	0.5190	0.2882	1.8008
1997	0.6312	0.3295	1.9153
1998	0.9425	0.3510	2.6854

〈附表 45〉 推定式 3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96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8198	0.7695	1.0650
수급자수	-0.1767	0.2391	-0.7390
연금건수	-0.5093	0.2696	-1.8890
보험료	0.2442	0.2531	0.9650
연금급여	-1.6911	0.4610	-3.6680
기금적립금	1.2561	0.5196	2.4170
재심건수	0.0732	0.1759	0.4160
직원수	0.3673	0.1953	1.8800
상수	-0.1634	9.3891	-0.0170
국민연금	-2.4028	1.8463	-1.3014
공무원연금	1.9257	1.0578	1.8205
사학연금	0.4771	1.7073	0.2795
1989	-1.4983	0.5675	-2.6403
1990	-0.9748	0.3759	-2.5931
1991	-0.6608	0.2664	-2.4802
1992	-0.2823	0.1662	-1.6990
1993	-0.0535	0.1108	-0.4824
1994	0.2036	0.1295	1.5719
1995	0.4860	0.2792	1.7410
1996	0.7325	0.2971	2.4656
1997	0.9013	0.3397	2.6534
1998	1.1461	0.3618	3.1681

〈附表 46〉 推定式 3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776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2483	0.8283	0.3000
수급자수	-0.1993	0.2573	-0.7750
연금건수	0.3460	0.2903	1.1920
보험료	-0.7141	0.2724	-2.6210
연금급여	-0.8690	0.4962	-1.7510
기금적립금	1.2025	0.5594	2.1500
재심건수	-0.1471	0.1893	-0.7770
직원수	0.3825	0.2103	1.8190
상수	-0.7485	10.1066	-0.0740
국민연금	-2.3722	1.6574	-1.4313
공무원연금	1.5638	0.9496	1.6469
사학연금	0.8084	1.5326	0.5275
1989	-1.0465	0.5094	-2.0542
1990	-0.6999	0.3375	-2.0740
1991	-0.4770	0.2392	-1.9944
1992	-0.2391	0.1492	-1.6026
1993	-0.0493	0.0995	-0.4958
1994	0.0616	0.1163	0.5299
1995	0.3062	0.2506	1.2217
1996	0.5841	0.2667	2.1900
1997	0.6909	0.3049	2.2657
1998	0.8690	0.3248	2.6757

〈附表 47〉 推定式 3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54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4349	0.8274	-0.5260
수급자수	-0.2017	0.2571	-0.7850
연금건수	0.3347	0.2900	1.1540
보험료	0.1729	0.2721	0.6350
연금급여	-0.6551	0.4957	-1.3220
기금적립금	0.9549	0.5588	1.7090
재심건수	-0.1578	0.1891	-0.8340
직원수	0.4398	0.2100	2.0940
상수	-7.7777	10.0961	-0.7700
국민연금	-2.8475	1.7606	-1.6174
공무원연금	1.5099	1.0087	1.4970
사학연금	1.3376	1.6280	0.8216
1989	-0.9775	0.5411	-1.8064
1990	-0.6786	0.3585	-1.8932
1991	-0.4805	0.2540	-1.8915
1992	-0.2506	0.1585	-1.5818
1993	-0.0669	0.1057	-0.6330
1994	0.0891	0.1235	0.7218
1995	0.3065	0.2662	1.1515
1996	0.5119	0.2833	1.8068
1997	0.6194	0.3239	1.9120
1998	0.9272	0.3450	2.6878

〈附表 48〉 推定式 34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5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4706	0.8281	-0.5680
수급자수	-0.1884	0.2573	-0.7320
연금건수	0.3490	0.2902	1.2030
보험료	0.1986	0.2723	0.7290
연금급여	-0.6647	0.4961	-1.3400
기금적립금	0.9374	0.5592	1.6760
재심건수	-0.1725	0.1893	-0.9110
직원수	0.4491	0.2102	2.1370
상수	-7.5179	10.1043	-0.7440
국민연금	-2.8789	1.7911	-1.6074
공무원연금	1.5382	1.0261	1.4990
사학연금	1.3408	1.6562	0.8096
1989	-0.9875	0.5505	-1.7937
1990	-0.6858	0.3647	-1.8806
1991	-0.4869	0.2584	-1.8838
1992	-0.2579	0.1612	-1.6001
1993	-0.0718	0.1075	-0.6675
1994	0.0884	0.1256	0.7036
1995	0.3086	0.2708	1.1397
1996	0.5190	0.2882	1.8008
1997	0.6312	0.3295	1.9155
1998	0.9425	0.3510	2.6856

〈附表 49〉 推定式 35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95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수	0.5294	0.8281	0.6390
수급자수	-1.1884	0.2573	-4.6190
연금건수	0.3490	0.2902	1.2030
보험료	0.1986	0.2723	0.7290
연금급여	-0.6647	0.4961	-1.3400
기금적립금	0.9374	0.5592	1.6760
재심건수	-0.1725	0.1893	-0.9110
직원수	0.4491	0.2102	2.1370
상수	-7.5179	10.1043	-0.7440
국민연금	-2.8789	1.7911	-1.6074
공무원연금	1.5382	1.0261	1.4990
사학연금	1.3408	1.6562	0.8096
1989	-0.9875	0.5505	-1.7938
1990	-0.6858	0.3647	-1.8806
1991	-0.4869	0.2584	-1.8839
1992	-0.2579	0.1612	-1.6002
1993	-0.0718	0.1075	-0.6675
1994	0.0884	0.1256	0.7037
1995	0.3086	0.2708	1.1397
1996	0.5190	0.2882	1.8009
1997	0.6312	0.3295	1.9155
1998	0.9425	0.3509	2.6857

〈附表 50〉 推定式 36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851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0.9356	0.8854	1.0570
지역가입자	0.2373	0.0555	4.2740
사업장수	-1.1081	0.3936	-2.8150
상수	13.2583	11.2859	1.1750
국민연금	-0.0201	2.7342	-0.0074
공무원연금	-0.4818	0.7087	-0.6798
사학연금	0.5019	2.7017	0.1858
1989	-0.7124	0.2761	-2.5799
1990	-0.6041	0.2349	-2.5721
1991	-0.4777	0.1972	-2.4227
1992	-0.1947	0.1702	-1.1438
1993	-0.0346	0.1656	-0.2088
1994	0.1395	0.1733	0.8048
1995	0.1708	0.1963	0.8702
1996	0.3517	0.2215	1.5874
1997	0.5654	0.2377	2.3787
1998	0.7961	0.1884	4.2254

〈附表 51〉 推定式 37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289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2.2209	1.1342	1.9580
지역가입자	0.1655	0.0711	2.3270
사업장수	-1.6208	0.5042	-3.2150
상수	-8.7423	14.4578	-0.6050
국민연금	-1.1100	1.6958	-0.6546
공무원연금	-1.8451	0.4396	4.1976
사학연금	2.9551	1.6756	1.7636
1989	0.2238	0.1713	1.3068
1990	0.1308	0.1457	0.8979
1991	0.0676	0.1223	0.5531
1992	0.1269	0.1056	1.2016
1993	-0.1052	0.1027	1.0236
1994	-0.0730	0.1075	-0.6794
1995	-0.1313	0.1218	1.0787
1996	-0.1931	0.1374	1.4051
1997	-0.0889	0.1474	-0.6033
1998	0.0424	0.1169	0.3630

〈附表 52〉 推定式 38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89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4.9164	1.9431	2.5300
지역가입자	0.1675	0.1218	1.3750
사업장수	-4.1123	0.8638	-4.7610
상수	-22.4249	24.7689	-0.9050
국민연금	2.1814	7.3260	0.2978
공무원연금	-6.1068	1.8990	-3.2158
사학연금	3.9254	7.2390	0.5423
1989	0.8979	0.7399	1.2136
1990	0.2536	0.6293	0.4031
1991	-0.0496	0.5283	-0.0939
1992	0.0867	0.4561	0.1901
1993	-0.0392	0.4438	-0.0882
1994	-0.1851	0.4643	-0.3987
1995	-0.3277	0.5260	-0.6229
1996	-0.2525	0.5936	-0.4254
1997	-0.1619	0.6369	-0.2543
1998	-0.2223	0.5048	-0.4403

〈附表 53〉 推定式 39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보험료+급여비	R-square	0.956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2.2964	1.1459	2.0040
지역가입자	0.1588	0.0718	2.2110
사업장수	-1.6352	0.5094	-3.2100
상수	-14.7013	14.6060	-1.0070
국민연금	-0.8210	1.7472	-0.4699
공무원연금	-2.1340	0.4529	-4.7118
사학연금	2.9550	1.7264	1.7116
1989	0.3218	0.1765	1.8238
1990	0.2024	0.1501	1.3488
1991	0.1180	0.1260	0.9368
1992	0.1545	0.1088	1.4203
1993	-0.0796	0.1059	-0.7519
1994	-0.1186	0.1107	-1.0707
1995	-0.1933	0.1255	-1.5409
1996	-0.1858	0.1416	-1.3124
1997	-0.1066	0.1519	-0.7019
1998	-0.1129	0.1204	-0.9379

〈附表 54〉 推定式 40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가입자+수급자	R-square	0.922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0.0628	0.8685	-0.0720
지역가입자	0.1541	0.0545	2.8300
사업장수	-0.8737	0.3861	-2.2630
상수	11.3756	11.0705	1.0280
국민연금	-0.0457	2.5673	-0.0178
공무원연금	-0.4676	0.6655	-0.7027
사학연금	0.5133	2.5368	0.2023
1989	-0.6863	0.2593	-2.6470
1990	-0.5727	0.2205	-2.5972
1991	-0.4437	0.1851	-2.3968
1992	-0.1774	0.1599	-1.1096
1993	-0.0259	0.1555	-0.1664
1994	0.1379	0.1627	0.8476
1995	0.1692	0.1843	0.9179
1996	0.3319	0.2080	1.5957
1997	0.5279	0.2232	2.3652
1998	0.7391	0.1769	4.1782

〈附表 55〉 推定式 4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25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0.1443	0.8391	-0.1720
지역가입자	0.1527	0.0526	2.9020
사업장수	-0.8819	0.3730	-2.3640
상수	12.6009	10.6962	1.1780
국민연금	0.1098	2.6404	0.0416
공무원연금	-0.4617	0.6844	-0.6745
사학연금	0.3519	2.6091	0.1349
1989	-0.7153	0.2667	-2.6825
1990	-0.5963	0.2268	-2.6291
1991	-0.4616	0.1904	-2.4243
1992	-0.1880	0.1644	-1.1438
1993	-0.0299	0.1600	-0.1866
1994	0.1412	0.1673	0.8437
1995	0.1764	0.1896	0.9302
1996	0.3498	0.2140	1.6352
1997	0.5531	0.2295	2.4098
1998	0.7706	0.1819	4.2354

〈附表 56〉 推定式 4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862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사업장가입자	2.0734	1.3838	1.4980
지역가입자	0.0835	0.0868	0.9630
사업장수	-3.2911	0.6151	-5.3500
상수	8.3742	17.6387	0.4750
국민연금	4.2767	5.3310	0.8022
공무원연금	-5.1642	1.3819	-3.7371
사학연금	0.8875	5.2676	0.1685
1989	0.1699	0.5384	0.3155
1990	-0.0758	0.4579	-0.1655
1991	-0.1866	0.3844	-0.4853
1992	0.0904	0.3319	0.2724
1993	-0.0879	0.3230	-0.2721
1994	-0.1079	0.3379	-0.3194
1995	0.1322	0.3828	0.3455
1996	-0.0532	0.4320	-0.1232
1997	0.0320	0.4634	0.0691
1998	0.0868	0.3673	0.2363

〈附表 57〉 推定式 4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68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0.5083	0.2150	-2.3650
연금건수	0.6926	0.2373	2.9180
상수	14.6229	1.2111	12.0740
국민연금	0.9016	0.1497	6.0234
공무원연금	-0.4769	0.2191	-2.1768
사학연금	-0.4247	0.0953	-4.4555
1989	-0.2904	0.2233	-1.3005
1990	-0.2826	0.1796	-1.5739
1991	-0.2535	0.1481	-1.7118
1992	-0.1373	0.1283	-1.0704
1993	-0.1389	0.1169	-1.1877
1994	-0.0492	0.1217	-0.4043
1995	0.1478	0.1341	1.1027
1996	0.1825	0.1595	1.1443
1997	0.2760	0.1817	1.5190
1998	0.5456	0.1695	3.2194

〈附表 58〉 推定式 44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868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0.3029	0.2714	-1.1160
연금건수	0.1775	0.2997	0.5920
상수	10.5863	1.5293	6.9230
국민연금	-0.2915	0.1448	-2.0126
공무원연금	-0.2119	0.2120	-0.9997
사학연금	0.5034	0.0922	5.4585
1989	-0.0256	0.2160	-0.1183
1990	0.0093	0.1737	0.0538
1991	0.0247	0.1433	0.1722
1992	0.0334	0.1241	0.2694
1993	-0.1795	0.1131	-1.5862
1994	-0.1073	0.1178	-0.9106
1995	0.0473	0.1297	0.3649
1996	-0.0307	0.1543	-0.1992
1997	0.0488	0.1758	0.2776
1998	0.1794	0.1640	1.0942

〈附表 59〉 推定式 45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863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1.5083	0.2150	-7.0160
연금건수	0.6926	0.2373	2.9180
상수	26.1358	1.2111	21.5800
국민연금	0.9016	0.1497	6.0234
공무원연금	-0.4769	0.2191	-2.1768
사학연금	-0.4247	0.0953	-4.4554
1989	-0.2904	0.2233	-1.3005
1990	-0.2826	0.1796	-1.5739
1991	-0.2535	0.1481	-1.7118
1992	-0.1373	0.1283	-1.0703
1993	-0.1389	0.1169	-1.1877
1994	-0.0492	0.1217	-0.4043
1995	0.1478	0.1341	1.1027
1996	0.1825	0.1595	1.1443
1997	0.2760	0.1817	1.5190
1998	0.5456	0.1695	3.2194

〈附表 60〉 推定式 46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886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0.4398	0.2619	-1.6800
연금건수	0.3078	0.2891	1.0650
상수	5.8855	1.4753	3.9890
국민연금	0.0856	0.1374	0.6232
공무원연금	-0.5166	0.2011	-2.5688
사학연금	0.4310	0.0875	4.9261
1989	0.0876	0.2049	0.4273
1990	0.1058	0.1648	0.6419
1991	0.0958	0.1359	0.7050
1992	0.0786	0.1177	0.6679
1993	-0.1531	0.1073	-1.4267
1994	-0.1508	0.1117	-1.3495
1995	-0.0263	0.1231	-0.2138
1996	-0.0518	0.1464	-0.3536
1997	-0.0047	0.1668	-0.0280
1998	0.0188	0.1556	0.1209

〈附表 61〉 推定式 47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87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0.3887	0.1940	-2.0030
연금건수	0.4868	0.2142	2.2730
상수	2.1471	1.0932	1.9640
국민연금	-0.9832	0.1373	-7.1610
공무원연금	-0.2315	0.2010	-1.1519
사학연금	1.2147	0.0874	13.8934
1989	-0.3158	0.2048	-1.5418
1990	-0.2788	0.1647	-1.6924
1991	-0.2368	0.1358	-1.7428
1992	-0.1212	0.1177	-1.0296
1993	-0.0972	0.1073	-0.9065
1994	-0.0069	0.1117	-0.0620
1995	0.1138	0.1230	0.9254
1996	0.1499	0.1463	1.0244
1997	0.2502	0.1666	1.5014
1998	0.5427	0.1555	3.4912

〈附表 62〉 推定式 48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87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0.3682	0.1929	-1.9090
연금건수	0.4602	0.2130	2.1610
상수	2.2463	1.0869	2.0670
국민연금	-1.0128	0.1416	-7.1532
공무원연금	-0.1854	0.2072	-0.8945
사학연금	1.1982	0.0902	13.2895
1989	-0.3478	0.2112	-1.6467
1990	-0.3046	0.1699	-1.7932
1991	-0.2562	0.1401	-1.8285
1992	-0.1345	0.1213	-1.1087
1993	-0.1006	0.1106	-0.9091
1994	-0.0031	0.1152	-0.0273
1995	0.1209	0.1268	0.9535
1996	0.1694	0.1509	1.1228
1997	0.2784	0.1719	1.6201
1998	0.5781	0.1603	3.6057

〈附表 63〉 推定式 49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672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일시금건수	-0.5357	0.2975	-1.8010
연금건수	-0.2157	0.3285	-0.6570
상수	21.9829	1.6763	13.1140
국민연금	-0.6660	0.2124	-3.1349
공무원연금	0.0999	0.3109	0.3213
사학연금	0.5661	0.1353	4.1846
1989	-0.8321	0.3169	-2.6260
1990	-0.5734	0.2549	-2.2496
1991	-0.4044	0.2102	-1.9240
1992	-0.1598	0.1821	-0.8776
1993	-0.1440	0.1660	-0.8676
1994	0.0163	0.1728	0.0945
1995	0.5042	0.1903	2.6499
1996	0.3515	0.2264	1.5530
1997	0.4809	0.2578	1.8652
1998	0.7607	0.2405	3.1625

〈附表 64〉 推定式 50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859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1.1282	0.6857	1.6450
보험료	-0.0351	0.2593	-0.1350
적립금	-0.0335	0.2786	-0.1200
심의건수	-0.0581	0.1772	-0.3280
직원수	0.6048	0.1954	3.0940
상수	-0.7418	7.9354	-0.0930
국민연금	-2.1238	1.3416	-1.5830
공무원연금	0.3385	0.1728	1.9587
사학연금	1.7853	1.3656	1.3073
1989	-0.5613	0.2399	-2.3392
1990	-0.4314	0.2001	-2.1565
1991	-0.3472	0.1738	-1.9979
1992	-0.1775	0.1278	-1.3880
1993	-0.0956	0.1035	-0.9236
1994	0.0302	0.1077	0.2802
1995	0.1852	0.1302	1.4220
1996	0.3321	0.1679	1.9779
1997	0.3838	0.1852	2.0724
1998	0.6817	0.2109	3.2326

〈附表 65〉 推定式 5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62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1.1284	0.6857	1.6460
보험료	-1.0351	0.2593	-3.9920
적립금	-0.0335	0.2786	-0.1200
심의건수	-0.0581	0.1772	-0.3280
직원수	0.6047	0.1955	3.0940
상수	10.7692	7.9357	1.3570
국민연금	-2.1240	1.3416	-1.5831
공무원연금	0.3385	0.1728	1.9588
사학연금	1.7855	1.3656	1.3074
1989	-0.5612	0.2399	-2.3391
1990	-0.4314	0.2001	-2.1564
1991	-0.3472	0.1738	-1.9979
1992	-0.1775	0.1278	-1.3880
1993	-0.0956	0.1035	-0.9235
1994	0.0302	0.1077	0.2802
1995	0.1852	0.1302	1.4219
1996	0.3321	0.1679	1.9780
1997	0.3838	0.1852	2.0723
1998	0.6817	0.2109	3.2325

〈附表 66〉 推定式 5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445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3.6359	2.0566	1.7680
보험료	0.0048	0.7776	0.0060
적립금	-2.0503	0.8356	-2.4540
심의건수	0.0865	0.5313	0.1630
직원수	1.5343	0.5862	2.6170
상수	-6.6780	23.8013	-0.2810
국민연금	-5.5195	2.8061	-1.9669
공무원연금	-0.5432	0.3615	-1.5026
사학연금	6.0626	2.8564	2.1225
1989	0.2553	0.5018	0.5088
1990	-0.0290	0.4185	-0.0693
1991	-0.1060	0.3635	-0.2916
1992	-0.1122	0.2674	-0.4196
1993	-0.1271	0.2166	-0.5869
1994	-0.0873	0.2252	-0.3876
1995	-0.1543	0.2724	-0.5665
1996	0.1380	0.3512	0.3930
1997	0.0828	0.3874	0.2138
1998	0.1397	0.4411	0.3167

〈附表 67〉 推定式 5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553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1.1339	0.7821	1.4500
보험료	-0.9812	0.2957	-3.3180
적립금	-0.1063	0.3178	-0.3350
심의건수	-0.0182	0.2021	-0.0900
직원수	0.6338	0.2229	2.8430
상수	5.7229	9.0510	0.6320
국민연금	-1.7781	1.2742	-1.3955
공무원연금	0.0565	0.1641	0.3441
사학연금	1.7216	1.2970	1.3274
1989	-0.4364	0.2279	-1.9152
1990	-0.3427	0.1900	-1.8038
1991	-0.2771	0.1651	-1.6786
1992	-0.1358	0.1214	-1.1187
1993	-0.0806	0.0983	-0.8200
1994	-0.0249	0.1023	-0.2438
1995	0.1146	0.1237	0.9267
1996	0.3285	0.1595	2.0598
1997	0.3525	0.1759	2.0038
1998	0.5021	0.2003	2.5067

〈附表 68〉 推定式 54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2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0.1634	0.6927	0.2360
보험료	-0.0632	0.2619	-0.2410
적립금	-0.0284	0.2815	-0.1010
심의건수	-0.0478	0.1790	-0.2670
직원수	0.6086	0.1975	3.0820
상수	-0.8573	8.0170	-0.1070
국민연금	-2.1404	1.3264	-1.6137
공무원연금	0.3198	0.1709	1.8717
사학연금	1.8206	1.3502	1.3484
1989	-0.5530	0.2372	-2.3311
1990	-0.4268	0.1978	-2.1575
1991	-0.3428	0.1718	-1.9952
1992	-0.1721	0.1264	-1.3618
1993	-0.0912	0.1024	-0.8911
1994	0.0301	0.1065	0.2829
1995	0.1861	0.1287	1.4456
1996	0.3283	0.1660	1.9776
1997	0.3744	0.1831	2.0444
1998	0.6670	0.2085	3.1991

〈附表 69〉 推定式 55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3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0.1282	0.6857	0.1870
보험료	-0.0351	0.2593	-0.1350
적립금	-0.0335	0.2786	-0.1200
심의건수	-0.0581	0.1772	-0.3280
직원수	0.6048	0.1954	3.0940
상수	-0.7418	7.9354	-0.0930
국민연금	-2.1238	1.3416	-1.5830
공무원연금	0.3385	0.1728	1.9587
사학연금	1.7853	1.3656	1.3073
1989	-0.5612	0.2399	-2.3392
1990	-0.4314	0.2001	-2.1565
1991	-0.3472	0.1738	-1.9979
1992	-0.1775	0.1278	-1.3880
1993	-0.0956	0.1035	-0.9236
1994	0.0302	0.1077	0.2802
1995	0.1852	0.1302	1.4220
1996	0.3321	0.1679	1.9779
1997	0.3838	0.1852	2.0724
1998	0.6817	0.2109	3.2326

〈附表 70〉 推定式 56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634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가입자	1.0985	1.4952	0.7350
보험료	-0.4865	0.5653	-0.8610
적립금	-1.1835	0.6075	-1.9480
심의건수	-0.1126	0.3863	-0.2920
직원수	1.1732	0.4262	2.7530
상수	21.4635	17.3035	1.2400
국민연금	-2.3200	2.8404	-0.8168
공무원연금	-0.3090	0.3659	-0.8445
사학연금	2.6290	2.8912	0.9093
1989	-0.5612	0.5080	-1.1048
1990	-0.4762	0.4236	-1.1241
1991	-0.4172	0.3679	-1.1339
1992	-0.2099	0.2707	-0.7756
1993	-0.1353	0.2192	-0.6172
1994	-0.0072	0.2280	-0.0313
1995	0.3759	0.2757	1.3634
1996	0.4115	0.3555	1.1576
1997	0.3874	0.3921	0.9880
1998	0.6321	0.4465	1.4157

〈附表 71〉 推定式 57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R-square	0.982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0.2117	0.1748	1.2110
심의건수	-0.1973	0.1572	-1.2550
직원수	0.5918	0.1948	3.0380
상수	9.4199	2.6012	3.6210
국민연금	-0.4940	0.6328	-0.7806
공무원연금	0.3397	0.2189	1.5521
사학연금	0.1543	0.4367	0.3532
1989	-0.6090	0.2108	-2.8886
1990	-0.4559	0.1878	-2.4278
1991	-0.3847	0.1692	-2.2742
1992	-0.2087	0.1622	-1.2872
1993	-0.1038	0.1733	-0.5990
1994	0.0211	0.1713	0.1230
1995	0.2412	0.1652	1.4600
1996	0.3887	0.1799	2.1604
1997	0.4325	0.1864	2.3198
1998	0.6788	0.1879	3.6115

〈附表 72〉 推定式 58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	R-square	0.9008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0.2779	0.2582	-1.0760
심의건수	-0.1396	0.2323	-0.6010
직원수	0.7675	0.2877	2.6680
상수	9.5827	3.8422	2.4940
국민연금	-1.0962	0.4405	-2.4885
공무원연금	-0.0187	0.1524	-0.1225
사학연금	1.1148	0.3040	3.6669
1989	-0.0141	0.1468	-0.0960
1990	0.0406	0.1307	0.3102
1991	0.0244	0.1178	0.2069
1992	0.0285	0.1129	0.2526
1993	-0.1820	0.1207	-1.5086
1994	-0.1097	0.1193	-0.9194
1995	0.0349	0.1150	0.3031
1996	0.0394	0.1252	0.3147
1997	0.0137	0.1298	0.1058
1998	0.1244	0.1308	0.9505

〈附表 73〉 推定式 59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급여비	R-square	0.930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1.2023	0.5297	-2.2700
심의건수	-0.3690	0.4765	-0.7740
직원수	1.4718	0.5902	2.4940
상수	27.4071	7.8817	3.4770
국민연금	-0.1961	0.8511	-0.2305
공무원연금	-0.4972	0.2944	-1.6891
사학연금	0.6933	0.5874	1.1804
1989	0.0314	0.2836	0.1108
1990	-0.1664	0.2526	-0.6587
1991	-0.2750	0.2275	-1.2087
1992	-0.2410	0.2181	-1.1050
1993	-0.1443	0.2331	-0.6189
1994	-0.1012	0.2304	-0.4392
1995	0.0506	0.2222	0.2276
1996	0.3614	0.2420	1.4935
1997	0.2890	0.2508	1.1524
1998	0.1956	0.2528	0.7736

〈附表 74〉 推定式 60

종속변수	관리운영비/보험료+급여비	R-square	0.902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0.3231	0.2661	-1.2140
심의건수	-0.1035	0.2394	-0.4320
직원수	0.7870	0.2965	2.6540
상수	5.2003	3.9596	1.3130
국민연금	-0.7097	0.4250	-1.6700
공무원연금	-0.2813	0.1470	-1.9139
사학연금	0.9911	0.2933	3.3787
1989	0.0783	0.1416	0.5530
1990	0.1023	0.1261	0.8107
1991	0.0722	0.1136	0.6354
1992	0.0572	0.1089	0.5246
1993	-0.1629	0.1164	-1.3990
1994	-0.1577	0.1151	-1.3708
1995	-0.0242	0.1110	-0.2185
1996	0.0550	0.1208	0.4548
1997	0.0053	0.1252	0.0423
1998	-0.0253	0.1262	-0.2003

〈附表 75〉 推定式 61

종속변수	관리운영비/ 가입자+수급자	R-square	0.9927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0.0213	0.1606	-0.1330
심의건수	-0.0646	0.1444	-0.4470
직원수	0.6169	0.1789	3.4480
상수	-0.0457	2.3890	-0.0190
국민연금	-1.9394	0.6744	-2.8757
공무원연금	0.2992	0.2333	1.2825
사학연금	1.6403	0.4655	3.5240
1989	-0.5253	0.2247	-2.3379
1990	-0.4015	0.2002	-2.0058
1991	-0.3245	0.1803	-1.7997
1992	-0.1629	0.1729	-0.9423
1993	-0.0970	0.1848	-0.5248
1994	0.0212	0.1826	0.1162
1995	0.1822	0.1761	1.0350
1996	0.3162	0.1917	1.6492
1997	0.3571	0.1987	1.7970
1998	0.6344	0.2003	3.1668

〈附表 76〉 推定式 62

종속변수	관리운영비/가입자	R-square	0.993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0.0209	0.1585	-0.1320
심의건수	-0.0721	0.1426	-0.5060
직원수	0.6088	0.1766	3.4480
상수	0.0603	2.3580	0.0260
국민연금	-1.9573	0.7065	-2.7702
공무원연금	0.3275	0.2444	1.3403
사학연금	1.6297	0.4876	3.3422
1989	-0.5482	0.2354	-2.3288
1990	-0.4188	0.2097	-1.9973
1991	-0.3388	0.1889	-1.7935
1992	-0.1736	0.1811	-0.9589
1993	-0.0990	0.1936	-0.5115
1994	0.0251	0.1913	0.1311
1995	0.1851	0.1845	1.0036
1996	0.3277	0.2009	1.6314
1997	0.3763	0.2082	1.8080
1998	0.6641	0.2099	3.1647

〈附表 77〉 推定式 63

종속변수	관리운영비/수급자	R-square	0.9590
설명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ratio
기금적립금	-1.1662	0.3648	-3.1970
심의건수	-0.2221	0.3281	-0.6770
직원수	1.2401	0.4064	3.0510
상수	26.2232	5.4274	4.8320
국민연금	-1.0055	0.6665	-1.5086
공무원연금	-0.4700	0.2305	-2.0387
사학연금	1.4755	0.4600	3.2075
1989	-0.3386	0.2221	-1.5246
1990	-0.2754	0.1978	-1.3922
1991	-0.2686	0.1782	-1.5076
1992	-0.1331	0.1708	-0.7790
1993	-0.1787	0.1826	-0.9785
1994	-0.0751	0.1805	-0.4164
1995	0.3371	0.1740	1.9371
1996	0.3086	0.1895	1.6285
1997	0.2454	0.1964	1.2495
1998	0.3784	0.1980	1.9115